



선 람	기관의 장

제2800호 2021. 7. 9.(금)

www.jeonbuk.go.kr

조 례

○ 전라북도교육청 조례 제4948호 전라북도교육청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1
○ 전라북도교육청 조례 제4949호 전라북도교육청 교육재난 지원 조례	3
○ 전라북도교육청 조례 제4950호 전라북도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5
○ 전라북도교육청 조례 제4951호 전라북도교육청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7
○ 전라북도교육청 조례 제4952호 전라북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	10
○ 전라북도교육청 조례 제4953호 전라북도교육청 교육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13
○ 전라북도교육청 조례 제4954호 전라북도교육청 학생 흡연·음주 등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조례	15
○ 전라북도교육청 조례 제4955호 전라북도교육청 독립운동사교육 강화 조례	17
○ 전라북도교육청 조례 제4956호 전라북도교육청 학부모교육 및 학부모의 학교 참여 지원 조례	18
○ 전라북도 조례 제4957호 전라북도 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20
○ 전라북도 조례 제4958호 전라북도 생태문명 선도에 관한 조례	21
○ 전라북도 조례 제4959호 전라북도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4
○ 전라북도 조례 제4960호 전라북도 소방특별회계 운용에 관한 조례	26
○ 전라북도 조례 제4961호 전라북도 소방기관 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7
○ 전라북도 조례 제4962호 전라북도 녹색생활 실천을 위한 채식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28
○ 전라북도 조례 제4963호 전라북도 악취방지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31
○ 전라북도 조례 제4964호 전라북도 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32
○ 전라북도 조례 제4965호 전라북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	34
○ 전라북도 조례 제4966호 전라북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	41

규 칙

○ 전라북도 규칙 제3169호 전라북도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42
○ 전라북도 규칙 제3170호 전라북도 건축 조례 시행규칙	45
○ 전라북도 규칙 제3171호 전라북도립국악원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69
○ 전라북도 규칙 제3172호 전라북도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75

회람									
----	--	--	--	--	--	--	--	--	--

발행 전 라 북 도 (편집 공보관실 ☎(063)280-2186)

(54968)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고 시

○ 전라북도 고시 제2021-219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접도구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고시	77
○ 전라북도 고시 제2021-227호 전라북도 지적재조사사업 변경고시(고창군)	80
○ 전라북도 고시 제2021-228호 전라북도 지적재조사사업 변경고시(부안군)	81
○ 전라북도 고시 제2021-229호 전라북도 지적재조사사업 변경고시(장수군)	82
○ 전라북도 고시 제2021-231호 김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고시	83
○ 전라북도 고시 제2021-233호 대왕천 하천의 지정(변경) 고시	85
○ 전라북도 고시 제2021-234호 대왕천 하천기본계획(변경) 고시	86
○ 전라북도 고시 제2021-235호 대왕천 하천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89

공 고

○ 전라북도 공고 제2021-1218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	90
○ 전라북도 공고 제2021-1228호 비영리사단법인 정관변경허가 공고	91
○ 전라북도 공고 제2021-1235호 비영리법인 정관 변경 공고	92
○ 전라북도 공고 제2021-1236호 비영리법인 정관 변경 공고	93
○ 전라북도 공고 제2021-1239호 공인 폐기 공고	94
○ 전라북도 공고 제2021-1240호 공인 등록 공고	95
○ 전라북도 공고 제2021-1248호 공인 폐기 공고	96
○ 전라북도 공고 제2021-1249호 공인 등록 공고	97
○ 전라북도 공고 제2021-1251호 비영리법인 정관 변경 공고	98
○ 전라북도 공고 제2021-1256호 고창 상금리 지석묘군 도지정문화재(기념물) 지정 예고	99
○ 전라북도 공고 제2021-1257호 도 등록문화재 등록 예고	102
○ 전라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 공고 제2021-4호 재산등록사항 공고	105

도지사 지시사항

○ 2021. 7. 5.(월) 간부회의 시 도지사 지시사항	107
----------------------------------	-----

시군행정

○ 전주시 고시 제2021-110호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화산공원)사업 실시계획 고시	108
○ 전주시 고시 제2021-111호 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3-1165호선)사업 실시계획 고시	109
○ 전주시 고시 제2021-112호 도시계획시설(전주대학교) 세부시설 조성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15
○ 전주시 고시 제2021-114호 국가하천(만경강·전주천) 낚시·야영·취사 금지지역 지정 고시	119
○ 군산시 고시 제2021-108호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	122
○ 군산시 고시 제2021-109호 도시계획시설(주차장)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123
○ 군산시 공고 제2021-1373호 폐아파트아 공장부지 지구단위계획구역 1단계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전 열람공고	125
○ 군산시 공고 제2021-1377호 폐아파트아 공장부지 지구단위계획구역 2단계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전 열람공고	139
○ 익산시 공고 제2021-1784호 도시계획시설(영등시민공원)사업 공사완료 공고	157
○ 김제시 고시 제2021-81호 금구 도시계획시설 유원지 중로2-1호선중로3-1호선 조성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159
○ 완주군 고시 제2021-67호 군계획시설(체육시설,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 고시	160

기 타

○ 전라북도 부안소방서 공고 제2021-4호 소방관련법 위반 과태료 납부 독촉 통지 공시 송달	162
--	-----

제382회 전라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2021. 6. 23.)에서 의결된 전라북도교육청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를 공포한다.

전라북도교육감

2021년 7월 9일

전라북도교육청 조례 제4948호

전라북도교육청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북도교육감 소관 행정기관과 학교의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오염 및 자원 낭비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회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2. “다회용품”이란 같은 용도로 여러 번 연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말한다.
3. “교육행정기관”이란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직속기관(분원 포함)·교육지원청(소속기관 포함)을 말한다.
4.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전라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육행정기관과 학교에서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기 위한 관련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1회용품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자원 낭비 등에 관하여 교직원 및 학생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교육행정기관과 학교의 장은 1회용품 사용 저감계획을 시행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저감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전라북도교육청 1회용품 사용 저감계획(이하 “저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저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회용품 저감 정책의 기본목표·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홍보와 교육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1회용품 사용 및 구입 제한) ① 교육행정기관과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1회용품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단, 재난상황 등 긴급한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1. 교육행정기관 및 학교가 주최하거나 예산을 지원하는 실내·외 행사 및 회의
2. 그 밖에 다회용품을 사용하여 소모성 물품구입비 등 경상적 성격의 일반수용비를 절감할 수 있는 경우

② 교육감은 교육행정기관 및 학교가 1회용품을 구입할 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교육감은 교육행정기관과 학교의 1회용품 사용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교육·홍보 등) 교육감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을 사용하도록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1회용품 사용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교육사업
2. 1회용품 사용 자제 및 다회용품 사용 관련 홍보사업
3. 그 밖에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82회 전라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2021. 6. 23.)에서 의결된 전라북도교육청 교육재난 지원 조례를 공포한다.

전라북도교육감

2021년 7월 9일

전라북도교육청 조례 제4949호

전라북도교육청 교육재난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북도 내에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하여 교육재난으로 이어질 경우 학생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통해 학생의 교육여건을 개선하여 교육재난을 극복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재난”이란 재난 발생으로 정상적인 등교가 불가능하여 학생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학습권과 여러 교육적 혜택을 받지 못해 발생하는 교육적 피해를 말한다.
2.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3. “학생”이란 전라북도 내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4.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5. “교육재난지원”이란 교육재난이 발생한 경우 전라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학생에게 제공하는 경제적 지원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교육감은 교육재난이 발생한 경우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전라북도지사 및 도내 시장·군수와 협력하여 교육재난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교육재난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 대상) 교육재난지원을 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한다.

1. 「유아교육법」 제3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휴업·휴원한 학교의 학생
2. 「초·중등교육법」 제6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휴업·휴교한 학교의 학생

3. 교육재난으로 정상적인 등교수업을 실시할 수 없어 재택수업·원격수업 등을 실시한 학교의 학생

제6조(지원방법 등) ① 교육감은 교육재난이 발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교육재난지원의 기준, 시기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82회 전라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2021. 6. 23.)에서 의결된 전라북도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를 공포한다.

전라북도교육감

2021년 7월 9일

전라북도교육청 조례 제4950호

전라북도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살위험이 있는 학생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자살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함으로써 학생의 생명을 보호하고 건전한 성장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을 말한다.
2. “자살예방 교육”이란 학생들에게 자살의 위해성을 알리고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우며, 성장하는 학생들의 육체적·정신적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한 교육활동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전라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 자살을 예방하고 생명을 존중하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자살예방 교육을 학교교육과정으로 편성·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 수립 등) ① 교육감은 매년 자살예방 교육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자살예방 교육 계획
2. 생명존중문화 조성 계획
3. 학생 자살예방 체계 구축
4. 사후 대응체계 구축 및 관련자 지원 방안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감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한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등) ① 교육감은 자살예방 교육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정책에 관한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교육감의 자문에 응한다.

1. 자살예방 교육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학생 자살예방 활동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교육감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전라북도의회 의원
2. 그 밖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분야에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도의원인 위원은 의원의 신분을 상실한 경우 해촉된 것으로 본다.
- ⑤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자살예방 교육과 생명존중문화 조성의 추진과 개선을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7조(교직원 역량강화) ① 교육감은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학교장은 교직원을 대상으로 학생 자살예방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② 학교장은 학생 자살예방 교육담당 교사를 지정할 수 있다.
- ③ 교육감은 필요한 경우 학생 자살예방 교육담당 교사를 위한 상담 서비스를 지원하거나 전문가의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사후 지원) ① 교육감은 자해를 하거나 자살을 시도한 고위험 위기학생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심리상담 등 전문적인 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 ② 교육감은 자살 시도학생, 자살학생의 가족, 주위학생, 교직원 등에게 미치는 영향이 완화되도록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상담 및 심리치료 등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관계기관 간 협력) 교육감은 학생 자살징후의 조기발견 및 고위험군 학생 관리를 위하여 전라북도, 자살예방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치료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비밀준수 의무) 학생 자살예방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거나 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82회 전라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2021. 6. 23.)에서 의결된 전라북도교육청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공포한다.

전라북도교육감

2021년 7월 9일

전라북도교육청 조례 제4951호

전라북도교육청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북도 내 학생들이 급변하는 디지털사회에서 다양하게 제공되는 미디어 정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정보에 대한 진위 여부를 판단하여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미디어 리터러시”란 다양한 미디어에 접근하여 필요한 정보와 콘텐츠를 읽고 분석하여 쓸 줄 아는 능력과 소양을 말한다.
2.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전라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을 위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학교의 장은 학교 특성에 맞는 맞춤형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매년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기본목표 및 사업 추진 방향
2.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관련 자료 등의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관한 교원 연수 및 학생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4.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발전을 위한 교육·연구 및 조사 등에 관한 사항
5.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대한 방안
6.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관한 학교와 지역사회 간 협력체제 구축 방안
7. 그 밖에 교육감이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교육감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의 중복 설치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와 유사한 기능의 위원회에서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1.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관련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3.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자문위원회의 구성) ① 제5조제1항의 본문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전라북도교육청 공무원
2. 교육계, 학계, 관련 전문기관, 시민사회단체 인사
3. 그 밖에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업무 담당 주무관 또는 장학사를 간사로 둔다.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롭게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 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3. 위원이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이 위원회의 활동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품위손상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정과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또는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수당) 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연수) ① 교육감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도 내 각급 학교 교원 등을 대상으로 교육 및 연수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의 교육 및 연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재정지원)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1.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발전을 위한 교육·연구 및 조사
2.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관련 교원 연수비용
3.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관련 자료 개발
4. 그 밖에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3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 단체,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82회 전라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2021. 6. 23.)에서 의결된 전라북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를 공포한다.

전라북도교육감

2021년 7월 9일

전라북도교육청 조례 제4952호

전라북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에 따라 전라북도 내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진흥함으로써 학생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문화예술교육”이란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을 말한다.
3. “학교문화예술교육”이란 학교에서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문화예술교육을 말한다.

②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에 따른다.

제3조(기본원칙) 전라북도교육청의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정책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1. 학생 중심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을 통한 학교문화예술교육 활성화
2. 학생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문화예술교육 기회 확대
3. 학교, 지역 문화예술기관, 단체 등과의 공감 및 소통을 통한 협력체계 구축

제4조(교육감의 책무) 전라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진흥함으로써 학생들이 문화예술에 관한 기본소양을 갖추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종합계획 수립 등)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교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학교문화예술교육 중·장기 발전 계획
2. 학교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방안
3. 학교문화예술교육 예산에 관한 사항

4. 학교문화예술교육 평가에 관한 사항
5. 교원을 대상으로 학교문화예술교육 관련 연구 및 연수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 교육감은 제1항의 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학교문화예술교육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학교에 안내하여야 한다.
- ③ 학교의 장은 제2항의 시행계획을 바탕으로 학교 여건에 맞게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위원회 설치)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7조(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사업) 교육감은 학교문화예술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학교문화예술교육 자료 개발과 보급
2. 학교문화예술교육과 관련된 학습·체험 프로그램 지원
3. 학교문화예술교육 관련 교원 연수
4. 학교문화예술교육 관련 교원·학생 동아리 활동 지원
5. 그 밖에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교육주간 운영) 교육감은 학교문화예술교육에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문화예술교육주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교육행사 개최) 교육감은 학교문화예술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1.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에 관한 연구와 발표 등 학술행사
2. 문화예술인 및 문화예술단체 등의 학교 공연·전시·상영 등 행사
3. 그 밖에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을 위한 교육·체험행사

제10조(보조금) 교육감은 「전라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예술 관련 기관 및 단체에 학교문화예술교육의 진흥을 위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1조(예산 지원) 교육감은 학교에 학교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또는 문화예술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3조(표창) 교육감은 학교문화예술교육에 큰 공헌을 한 학교, 단체, 개인 등에 대하여 「전라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82회 전라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2021. 6. 23.)에서 의결된 전라북도교육청 교육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를 공포한다.

전라북도교육감

2021년 7월 9일

전라북도교육청 조례 제4953호

전라북도교육청 교육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북도 내 지역 간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하여 교육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교육을 내실화하고 교육의 균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교육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에 소재하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와 전라북도 내 14개 시·군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전라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지역 간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도내 지역 간 교육균형발전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교육균형발전 기본방향
 2. 맞춤형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3. 교육격차 지표개발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교육균형발전 정책개발 및 사업선정에 관한 사항
 5. 교육균형발전대상학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지역·학교 간 특성을 고려한 교육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③ 교육감은 지역·학교 간 균형발전을 위하여 담당부서를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제5조(예산확보) ① 교육감은 지역 간 교육의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예산을 교육균형발전 사업별로 목적과 조건을 지정

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관계기관과의 협조) 교육감은 교육환경 개선 등 교육균형발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전라북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와 협의하거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82회 전라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2021. 6. 23.)에서 의결된 전라북도교육청 학생 흡연·음주 등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조례를 공포한다.

전라북도교육감

2021년 7월 9일

전라북도교육청 조례 제4954호

전라북도교육청 학생 흡연·음주 등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북도 학생에 대한 흡연·음주 등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2. “흡연·음주 등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이란 성장기의 학생에게 흡연·음주 등 약물 오남용의 위험성을 알리고 지도함으로써 학생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활동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전라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흡연·음주 등 약물 오남용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하여 예방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예방교육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매년 흡연·음주 등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예방교육 목표 및 추진방향
2. 예방교육 추진사업 및 추진방법
3. 흡연·음주 등 약물 오남용 예방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 교육 및 교직원 연수
4.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연구·개발 및 평가·홍보
5. 예방교육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6. 예방교육 사업 관련 기관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교육감이 예방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수립·시행을 위하여 전라북도지사와의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 교육감은 제4조의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학생을 대상으로 흡연·음주 등 약물 오남용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예방교육) ① 교육감은 학생들의 흡연·음주 등 약물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예방교육을 보건교육 등 관련 교육과정에 포함하고, 학교급별 학생의 발달단계에 맞게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연수) ① 교육감은 학교장 및 담당교사를 대상으로 흡연·음주 등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연수를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소속 교직원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흡연·음주 등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연수를 매년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수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연수를 실시하거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프로그램 개발) 교육감은 효율적인 예방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학생 지도 등) ① 학교장은 「초·중등교육법」 제8조에 따른 학교규칙이나 학교규정 등에 흡연·음주 등 약물 오남용 예방 지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학교 내외에서 흡연·음주 등 약물 오남용 학생을 발견 또는 인지한 경우에는 학생이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해당 학생의 학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여 가정과 연계 지도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가정에 통보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않을 수 있다.

제10조(홍보 및 캠페인) 교육감은 학생의 흡연예방과 금연 지원 등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언론, 소식지, 홈페이지 등 각종 매체를 활용한 홍보 및 캠페인 활동을 할 수 있다.

제11조(사무의 위탁) 교육감은 학생의 흡연·음주 등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이 조례에 따른 사무의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금연 지원 사업과 흡연 예방교육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82회 전라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2021. 6. 23.)에서 의결된 전라북도교육청 독립운동사교육 강화 조례를 공포한다.

전라북도교육감

2021년 7월 9일

전라북도교육청 조례 제4955호

전라북도교육청 독립운동사교육 강화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북도 내 학생들이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을 지킨 독립운동의 역사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애국정신을 길러 민족정기를 선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독립운동사교육”이란 일제로부터 민족의 수난기를 극복하고 자주독립을 위하여 국내외에서 행해졌던 여러 가지 민족 운동에 관한 역사와 독립운동의 의의, 독립운동가의 활동 등에 관한 모든 형태의 교육을 말한다.

제3조(책무) 전라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올바른 역사의식 제고를 위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독립운동사교육 강화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추진) 교육감은 독립운동사교육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독립운동사 특강, 공연·전시 및 학생 사생대회
2. 독립운동 사적지 답사 등 학생 현장체험활동
3. 독립운동사교육 자료·프로그램 개발
4. 독립운동사 관련 토론회, 학술대회 등 연구사업
5. 독립운동사 관련 학생 및 교직원 연수
6. 그 밖에 독립운동사교육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 교육감은 독립운동사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독립운동사교육 강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82회 전라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2021. 6. 23.)에서 의결된 전라북도교육청 학부모교육 및 학부모의 학교 참여 지원 조례를 공포한다.

전라북도교육감

2021년 7월 9일

전라북도교육청 조례 제4956호

전라북도교육청 학부모교육 및 학부모의 학교 참여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북도 내 학부모의 자녀교육에 관한 역할 강화와 올바른 자녀교육관 형성을 도모하고, 교육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학부모의 학교 참여를 지원하여 학교교육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부모”란 부모, 후견인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보호·감독자 등의 지위에서 학교의 학생에 대하여 실질적인 교육의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학부모교육”이란 학생 성장을 지원하는 교육의 주체로서 학부모의 역할 수행과 교육 활동 참여에 필요한 지식이나 정보 등을 제공하고 지원하는 활동을 말한다.
3. “학부모의 학교 참여”란 학부모가 학교교육 운영에 관한 제반활동에 참여하는 것으로 학부모회, 학교교육 모니터링, 학부모 교육, 자원봉사 및 동아리 활동 등을 포함한다.
4.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전라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부모교육 및 학부모의 학교 참여 지원을 위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학부모교육 및 학부모의 학교 참여의 효율적 추진 및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학부모교육 및 학부모의 학교 참여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부모교육 및 학부모의 학교 참여 지원사업의 추진 목표 및 계획
2. 학부모교육 및 학부모의 학교 참여 지원사업의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
3. 학부모교육 및 학부모의 학교 참여 지원사업의 기반구축

4. 학부모교육 및 학부모의 학교 참여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5. 학부모교육 및 학부모의 학교 참여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6. 그 밖에 학부모교육 및 학부모의 학교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학부모교육) ① 교육감은 학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 내용을 제공할 수 있다.
1. 부모와 자녀 간의 이해와 소통 증진 및 건강한 관계 형성
 2. 올바른 부모의 역할 및 그 수행 방법
 3. 자녀의 올바른 인성 형성, 공동체 의식 함양 및 민주적이고 양성 평등한 가족관계의 증진
 4. 학부모 자신의 삶의 성장과 민주시민 의식 함양 등에 관한 교육
 5. 그 밖에 학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육
- ② 교육감은 학부모교육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학부모교육 전문 강사를 양성 및 지원할 수 있다.
- ③ 교육감은 학부모교육을 관련 전문기관과 연계하거나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학부모의 학교참여 지원) 교육감은 학부모의 학교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학부모의 학교 교육활동 참여 지원
 2. 각급학교 학부모회 활동 지원
 3. 학부모 동아리 및 모니터링 등 활동 지원
 4. 그 밖에 학부모 학교 참여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업
- 제7조(학부모지원센터) 교육감은 학부모교육 및 학부모의 학교 참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학부모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학부모교육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북도의회에서 의결된 전라북도 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1년 7월 9일
전라북도지사

전라북도 조례 제4957호

전라북도 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전라북도 의회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제2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전라북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북도의회에서 의결된 전라북도 생태문명 선도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1년 7월 9일

전라북도지사

전라북도 조례 제4958호

전라북도 생태문명 선도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북도 정책 및 행정 전반에 생태문명을 선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라북도가 지속가능하고 회복력 있는 지역으로 전환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태문명”이란 기후 위기, 생태계 파괴 등을 극복하고, 사람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면서 지속가능한 지역으로 도약하기 위한 삶의 방식을 말한다.
2. “생태문명 실천”이란 전라북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들이 일상 생활에서 기후 위기 대응과 생태가치 제고 등 생태문명을 확산·이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라북도(이하 “도”라 한다)의 주요 정책과 계획 등에 생태문명 가치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도지사는 생태문명에 대한 도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도민들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종합계획) ① 도지사는 생태문명 선도를 위하여 전라북도 생태문명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태문명 비전과 전략
2. 생태문명 분야별 추진방향 및 과제별 이행 전략
3. 도민의 생태문명 실천·인식확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생태문명 선도와 관련된 사항

제5조(생태문명 지원) 도지사는 생태문명 선도를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

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조사 및 연구) 도지사는 생태문명 선도와 관련된 조사 및 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포상) 도지사는 생태문명 선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기업·단체 등에 「전라북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8조(자문위원회 설치 및 기능) 도지사는 생태문명 선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전라북도 생태문명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생태문명 선도 추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자문
2. 생태문명 실천·확산에 관한 사항
3. 생태문명 선도를 위한 민·관협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생태문명 선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행정부지사와 제3항제2호의 사람 중에서 호선(互選)된 위원 1명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도 생태문명 관련 업무 실·국장
2. 도지사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전라북도의회의 의원

나. 자연환경, 산업 에너지, 생활 기반, 도시와 농촌 상생 등 생태문명 관련 분야의 전문가

다. 그 밖에 도지사가 생태문명 선도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추진 역량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희망한 경우
2.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

으로 이용한 경우

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행정부지사인 위원장이 미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분과위원회) 위원회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4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생태문명 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북도의회에서 의결된 전라북도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1년 7월 9일
전라북도지사

전라북도 조례 제4959호

전라북도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전라북도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도민”을 “전라북도민”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文字解得)능력”을 “(文字解得) 능력”으로 한다.

제3조 중 “(이하“도”라 한다)내”를 “(이하 “도”라 한다) 내”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도민”을 “전라북도민”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이하“도지사”라 한다)”를 “(이하 “도지사”라 한다)”로, “보장할 의무를 갖는다”를 “보장한다”로 한다.

제5조제6호 중 “전라북도평생교육진흥원에 성인문해교육”을 “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 문해교육”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밖의”를 “밖에”로 한다.

제6조 중 “시·군 및 교육청, 평생교육기관, 문해교육단체 등”을 “전라북도교육청, 도내 시·군 및 평생교육기관, 문해교육단체 등”으로 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전라북도문해교육센터 설치 등) ① 도지사는 「평생교육법」 제39조의2 제2항에 따라 문해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라북도문해교육센터(이하 “문해교육센터”라 한다)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문해교육센터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전라북도교육감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문해교육센터에는 센터장과 제6항에 따른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전담인력을 둔다.

④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문해교육센터는 사업 수행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문해교육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문해교육센터 규정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⑥ 문해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지원

2. 문해교육 대상자 발굴 및 상담 지원
 3. 도내 문해교육 관련 기관 간 연계체제 구축
 4. 문해교육 교원 양성 및 연수 등
 5. 그 밖에 문해교육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⑦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문해교육센터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중 “시·군 및 교육청, 평생교육기관, 문해교육단체”를 “전라북도교육청, 도내 시·군 및 평생교육기관, 문해교육단체 등”로 한다.

제8조 중 “없는 한”을 “없으면”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북도의회에서 의결된 전라북도 소방특별회계 운용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1년 7월 9일
전라북도지사

전라북도 조례 제4960호

전라북도 소방특별회계 운용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설치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입금액)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설치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전라북도 일반회계에서 소방정책사업비계정으로 전입하는 금액은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보통세의 1천분의 5이상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방특별회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제7조에 따라 소방특별회계로 전입하는 금액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전라북도의회에서 의결된 전라북도 소방기관 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1년 7월 9일
전라북도지사

전라북도 조례 제4961호

전라북도 소방기관 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북도 소방기관의 안정적인 급식환경 조성과 양질의 급식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라북도 소방기관 근무자의 육체적·정신적 건강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방기관”이란 「소방기본법」 제3조제4항에 따른 소방본부와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에 따른 소방서, 119안전센터, 119구조대, 119지역대 등을 말한다.
2. “근무자”란 소방기관에서 근무하는 소방공무원, 공무원직 근로자, 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 등을 말한다.
3. “급식환경”이란 소방기관에서 급식을 제공하기에 적합한 공간과 시설 및 급식장비 등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소방기관 근무자에게 양질의 급식을 제공할 수 있는 급식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도지사는 소방기관 근무자 수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구내식당 운영에 필요한 급식환경 조성
2. 그 밖에 소방기관의 급식에 필요한 사항

제5조(예산지원)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북도의회에서 의결된 전라북도 녹색생활 실천을 위한 채식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1년 7월 9일
전라북도지사

전라북도 조례 제4962호

전라북도 녹색생활 실천을 위한 채식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녹색생활 실천을 위한 채식환경 조성을 통해 전라북도민의 식생활을 개선하여 기후변화 대응 실천 능력을 함양하고, 건강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녹색생활”이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일상생활에서 에너지를 절약하여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생활을 말한다.
2. “채식”이란 녹색생활 실천을 위해 식물성 식품을 중심으로 하는 식사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5조에 따라 전라북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채식환경 조성 지원을 통해 녹색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국가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② 도지사는 채식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을 통해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식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채식환경 조성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도민의 식생활 개선을 위해 채식환경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채식환경 조성 기본방향

2. 채식환경 조성의 목표 및 시행 전략

3. 채식환경 실태조사 및 현황 분석

4. 채식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5. 효율적인 정책 추진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 방안

6. 그 밖에 도지사가 채식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제5조의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제4조의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채식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련 전문연구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채식 교육·홍보 등) ① 도지사는 도민 및 급식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채식환경 조성에 대한 인식 전환 및 확산을 위한 교육·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채식을 장려하기 위하여 채식에 관한 정보 및 기후변화와의 관계 등을 담은 관련 매뉴얼 또는 홍보책자 등을 제작하여 보급할 수 있다.

제7조(채식의 날 운영) ① 도지사는 채식생활 실천을 위하여 공공기관, 기업체 급식소 및 교육기관 등에서 채식의 날을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채식의 날의 자율적 참여를 높이기 위한 장려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8조(채식모범음식점 인증) ① 도지사는 매년 채식 음식점을 조사하고,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적극 참여한 채식 음식점(이하 “채식모범음식점”이라 한다)을 선정하여 도민에게 홍보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선정한 채식모범음식점에 예산의 범위에서 저탄소 녹색성장 채식모범음식점 표지판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채식모범음식점의 정의, 선정 기준·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9조(채식생활 실천 지원) ① 도지사는 어린이 및 학생들에게 채식 식단 등에 대해 교육하고 실천하도록 교육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채식생활을 권장하기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북도의회에서 의결된 전라북도 악취방지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1년 7월 9일
전라북도지사

전라북도 조례 제4963호

전라북도 악취방지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전라북도 악취방지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에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악취배출시설에 대한 행정조치 등) ① 도지사는 악취배출시설에 대해서 악취와 관련된 민원이 제기되면 시장·군수와 합동으로 지도·점검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악취로 인하여 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에 피해가 우려되고, 악취와 관련된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는 악취배출시설에 대해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해당 시설을 매입할 수 있다. 다만, 최근 3년간 보조금을 지원받은 시설은 제외한다.

제6조제2항 중 “관계관”을 “관계 기관”으로 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제11조제2항 중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4항에 따른”으로, “준수 하여야”를 “준수하여야”로 한다.

제17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전라북도의회에서 의결된 전라북도 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1년 7월 9일
전라북도지사

전라북도 조례 제4964호

전라북도 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인력개발을 위하여 전라북도가 설치·지정한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지정) ①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른 여성인력개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설치·지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필요성이 큰 지역부터 우선 설치·지정한다.

1. 여성인구 다수 거주 지역
2. 사업체 등 여성인력 수요가 많은 지역
3. 유사기능을 가진 시설의 유무를 고려하여 그 기능이 충분히 발휘 될 수 있는 지역

③ 도지사 외의 자가 센터를 설치·운영하려면 도지사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④ 센터의 지정기준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법 시행령 제28조의2에 따른다.

제3조(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여성의 능력개발과 사회적·경제적 지위향상에 필요한 직업교육과정 개설·운영
2. 여성의 취·창업과 관련된 상담·알선 및 정보의 제공
3.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4. 그 밖에 여성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4조(이용대상) 센터는 전라북도 거주 여성이 이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운영에 지장이 없는 한 그 외의 자도 이용할 수 있다.

제5조 (이용료의 수납 및 감면) ① 센터의 장은 시행하는 교육·훈련에 참여하는 자로부터 수강료, 재료비 등 교육·훈련에 따른 비용(이하 “이용료”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납한 이용료는 센터의 수입예산에 편입시켜 목적사업에 적

합하게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센터의 장은 이용료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센터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제6조(운영비 등의 지원) ① 도지사는 센터에 대해 다음 각 호의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1. 시설비, 임차보증금 등의 설립경비
2. 인건비
3. 시설기자재 설치비
4. 교육훈련경비
5. 관리비
6. 그 밖에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

② 그 밖에 보조금의 교부, 정산, 취소 등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라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지도·감독) ① 도지사는 센터의 사업수행 및 운영상황에 관하여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센터의 운영실태 전반에 관하여 지도·감독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법 제48조에 따라 시정명령, 지정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지정·운영 중인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전라북도의회에서 의결된 전라북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1년 7월 9일
전라북도지사

전라북도 조례 제4965호

전라북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

전라북도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건축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조례”로 정하는 지역”을 “조례로 정하는 지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외”를 “밖에”로, “전통한옥을 대상으로 한다.”를 “전통한옥”으로 한다.

제1장에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건축허가 사전승인) 법 제11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허가 사전승인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주택법」 제15조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조사·심의·조정(調停) 또는 재정(裁定)한다”를 “조사·심의·조정 또는 재정(이하 “심의등”이라 한다)한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영 제5조의5제1항제4호의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은 시·군 건축위원회에서 심의등을 한다.

제5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건축물”을 “법 제4조의4에 따른 건축물”로, “질의민원”을 “질의민원(이하 “질의민원”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또는 영에 따라 도지사가 발의하는 조례의 제정·개정 및 시행에 관한

중요 사항

3. 영 제5조의5제1항제8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이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은 시·군의 건축조례로 정한다.

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나. 「주택법」 제15조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중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 다만, 설계공모 또는 설계·시공을 일괄입찰한 경우를 제외한다.

다.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 중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증축 또는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이 3만 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인 다중이용 건축물. 다만, 공동주택(동일 건축물로서 다른 용도와 복합되어 건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과 21층 미만이거나 연면적 3만제곱미터 미만인 다중이용 건축물인 경우에는 시·군 건축위원회에서 심의등을 한다.

4.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경우 해당 법령에서 규정한 심의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건축행정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심의를 신청할 때는 간략설계도서(배치도·평면도·입면도·주단면도 및 “전라북도 건축위원회 운영 및 심의기준”에서 정하는 도서를 말하며, 전자문서로 된 도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해야 한다.

제6조제1항 중 “25명이상”을 “25명 이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원장과 부위원장은”을 “도지사는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제3항에 따른”으로, “도지사가 임명하거”를 “임명하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위원은 전라북도의 관계공무원, 전라북도의회 의원과”를 “위원은”으로, “임명 또는”을 “임명하거나”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위촉의 경우에는 특성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제6조제3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도시계획 및 건축 등의 관계 공무원(도의 건설교통 관련 국장 및 건축·소방 관련 부서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3. 전라북도의회 의원

④ 당연직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

간으로 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 위원의 임명·위촉에 관한 사항은 영 제5조의5제6항제1호를 따른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회 제척·기피·회피는 영 제5조의2를 준용한다.

제7조제6호 중 “제6조의 1 제1항”을 “영 제5조의2제1항”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위원회의 회의는”을 “위원장은”으로, “때에 위원장이”를 “때 위원회의 회의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하고 자 할 때에는 위원회 개최 10일전까지 회의안건”을 “위원장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안건”으로, “알려야”를 “서면으로 알려야”로 하며, 같은 항 본문의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위원회의 회의는”을 “위원장은”으로, “심의 등을 의결하며, 심의 등”을 “심의등을 의결하며, 심의등”으로, “심의 등의”를 “심의등의”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위원은”을 “회의는 위원회”로 한다.

제9조제6항 중 “위원회 개최”를 “회의 개최”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심의 등”을 “심의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법 제11조”를 “위원장은 법 제11조”로, “사항은 심의”를 “사항에 대하여 심의등이 신청된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위원장은 건축주·설계자 및 심의를”을 “건축주·설계자 및 심의등을”로, “해야”를 “하여야”로 한다.

제10조의2를 삭제한다.

제11조 중 “위원회의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때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해”를 “위원장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로 한다.

제14조제1항 단서 중 “전라북도”를 “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제11조까지의 규정”을 “제11조”로, “사람에 대해”를 “사람에게”로 한다.

제3장의 제목 “건축민원전문위원회”를 “전문위원회”로 한다.

제16조의 제목 “(설치)”를 “(전문위원회 설치 및 구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도지사는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전문위원회를 두어 운영할 수 있다.

1. 법 제4조의4에 따른 건축민원전문위원회
2. 법 제4조제2항제3호에 따른 분야별 전문위원회

② 전문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도지사는 전문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그 전문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위원은 건축이나 법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도 건설교통국장, 주택건축과장 및 도 소속 5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건축이나 법률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3.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는 사람
4.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하고 건축사로 종사 중인 사람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 기술사로 종사 중인 사람
6. 건설공사나 건설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그 분야에 7년 이상 종사한 사람

제17조를 삭제한다.

제18조의 제목 “(회의)”를 “(건축민원전문위원회 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법 제4조의5제1항”을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4조의5제1항”으로, “따른 신청인의”를 “따라”로,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를 “있는 경우 회의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회의 소집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 신청인이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인인 경우 당사자 중에서 대표자 선정을 권고할 수 있다.

제19조 중 “법 제4조의5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등과 관련된 질의민원의 심의 신청”을 “질의민원의 심의를 신청”으로, “제출하여야 한다”를 “신청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준용) 전문위원회의 구성·회의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6조부터 제9조까지,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각각 “전문위원회”로 본다.

제4장(제21조 및 제22조)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장 공사감리자들의 모집 및 지정 등

제21조(공사감리자들의 모집 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자(이하 “공사감리자등”이라 한다)를 모집하려는 경우 모집공고를 거쳐 명부를 작성하고 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미리 관할 시장·군수와 협의해야 한다.

1.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공사감리자
2.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하는 건축사
3. 「건축물관리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관리점검기관
4. 「건축물관리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② 도지사는 공사감리자등의 등록명부를 도 및 시·군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22조(공사감리자등의 지정 등) ①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등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등록명부에 등록된 자 중에서 무작위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공사감리자등의 등록·변경·취소, 모집공고, 명부작성 및 지정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3조 중 “도지사, 시장·군수는 공사감리자 등록명부 관리 업무와 공사감리자”를 “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제2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등록명부 관리업무와”로 한다.

제5장(제24조)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 지역건축안전센터

제24조(전라북도건축안전센터의 설치·운영) ① 도지사는 법 제87조의2에 따라 건축물의 안전관리 및 건축공사장의 안전사고 예방 등 지역 내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전라북도건축안전센터(이하 “건축안전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건축안전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87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업무
2. 건축물의 안전에 관한 조사연구 및 안전관리에 대한 정책개발과 안전에 관련된 제도개선
3. 건축물의 안전관리계획, 안전점검계획 및 재난대비 안전대책의 수립과 점검 및 지원(다른 법령에서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안전점검 등을 받도록 규정한 건축물은 해당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르도록 한다)
4. 건축물의 안전에 관한 조사 연구와 분석 및 안전관리에 대한 정책개발
5. 건축물 생애 전반의 안전 확보 및 체계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
6. 건축공사장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 수립
7. 건축허가 사전승인에 필요한 건축물과 관련된 모든 계획 및 구조안전 등 검토

8. 도민의 건축물 안전문화 정착과 의식제고를 위한 교육·홍보 및 프로그램 개발

9. 시·군 지역건축안전센터 기술 및 제도 지원

10. 그 밖에 도지사가 건축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건축물 등의 안전점검은 육안점검을 원칙으로 하며 안전점검이 완료된 때는 그 결과를 통보하고 관련정보는 전자적으로 관리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다음 별지와 같이 하며,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까지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전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건축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제3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건축위원회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신규로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전라북도의회에서 의결된 전라북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1년 7월 9일
전라북도지사

전라북도 조례 제4966호

전라북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

전라북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 제3조, 제8조에”를 “에”로, “도민”을 “전라북도민”으로 한다.

제2조제8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제9호부터 제12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노인체육”이란 노인의 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한 신체적 체육활동을 말한다.

제3조 중 “전문체육·생활체육·학교체육”을 “전문체육·생활체육·노인체육·학교체육”으로 한다.

제4조제10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제13호부터 제15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노인체육 활성화를 위한 노인체육 지도자 육성 및 지원
11. 노인체육시설의 확충 및 이용 지원
12. 노인체육 활동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북도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전라북도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21년 7월 9일
전라북도지사

전라북도 규칙 제3169호

전라북도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전라북도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정수관리대상물품) 전라북도 정수관리대상물품은 별표와 같다.
별표를 다음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전라북도 정수관리대상물품

연번	물품분류번호	품 명	정수책정기준
1	25101501	미니버스	정원 및 단위조직 수, 업무량
2	25101502	버스	정원 및 단위조직 수, 업무량
3	25101503	일반승용차	정원 및 단위조직 수, 업무량
4	25101505	미니밴또는밴	정원 및 단위조직 수, 업무량
5	25101507	스포츠유틸리티차량	정원 및 단위조직 수, 업무량
6	25101509	승용전자동차	정원 및 단위조직 수, 업무량
7	25101601	덤프트럭	정원 및 단위조직 수, 업무량
8	25101611	화물트럭	정원 및 단위조직 수, 업무량
9	25101698	화물전자동차	정원 및 단위조직 수, 업무량
10	25101703	구급차	정원 및 단위조직 수, 업무량
11	25101789	소방펌프차	정원 및 단위조직 수, 업무량
12	25101790	소방물탱크차	정원 및 단위조직 수, 업무량
13	25101791	소방화학차	정원 및 단위조직 수, 업무량
14	25101792	소방사다리차	정원 및 단위조직 수, 업무량
15	25101793	구조공작차	정원 및 단위조직 수, 업무량
16	25101794	배연차	정원 및 단위조직 수, 업무량
17	25101795	조연차	정원 및 단위조직 수, 업무량
18	25101796	무인방수탐차	정원 및 단위조직 수, 업무량
19	25101797	화재조사차	정원 및 단위조직 수, 업무량
20	25101798	지휘차	정원 및 단위조직 수, 업무량
21	25101799	제독차	정원 및 단위조직 수, 업무량
22	25101910	살수차	정원 및 단위조직 수, 업무량
23	25101918	저속전자동차	정원 및 단위조직 수, 업무량
24	25101924	가드레일청소차	정원 및 단위조직 수, 업무량
25	25101926	제설차	정원 및 단위조직 수, 업무량
26	25101927	칼슘살포차	정원 및 단위조직 수, 업무량
27	25101930	조명차	정원 및 단위조직 수, 업무량
28	25101959	도로보수차	정원 및 단위조직 수, 업무량
29	25101963	노면청소차	정원 및 단위조직 수, 업무량
30	25101969	고소작업차	정원 및 단위조직 수, 업무량
31	25101981	분무기탐재차	정원 및 단위조직 수, 업무량
32	25101986	견인트럭	정원 및 단위조직 수, 업무량
33	25101990	쓰레기수거용트럭	정원 및 단위조직 수, 업무량
34	25101991	유개트럭	정원 및 단위조직 수, 업무량

연번	물품분류번호	품 명	정수책정기준
35	25101994	탱크트럭	정원 및 단위조직 수, 업무량
36	25101998	발전차	정원 및 단위조직 수, 업무량
37	25131899	무인비행기	정원 및 단위조직 수, 업무량
38	39121011	무정전전원장치	관리공간의 면적 및 위치 개소
39	40101701	냉방기	관리공간의 면적 및 위치 개소
40	40101715	향온향습기	관리공간의 면적 및 위치 개소
41	40101787	냉난방기	관리공간의 면적 및 위치 개소
42	41103202	실험용세척기	정원 및 단위조직 수
43	41103901	미량원심분리기	정원 및 단위조직 수
44	41104510	건조캐비닛 또는 오븐	정원 및 단위조직 수
45	41111703	실체현미경	정원 및 단위조직 수
46	41111711	전자현미경	정원 및 단위조직 수
47	41115320	신호발생기	정원 및 단위조직 수
48	41115406	분광광도계	정원 및 단위조직 수
49	41115703	기체크로마토그래프	정원 및 단위조직 수
50	41115705	액체크로마토그래프	정원 및 단위조직 수
51	42281508	고압증기멸균기 또는 소독기	정원 및 단위조직 수
52	43211503	노트북컴퓨터	정원 및 단위조직 수, 업무량
53	43222805	구내교환장비	정원 및 단위조직 수
54	45111616	비디오프로젝터	정원 및 단위조직 수, 업무량
55	45111705	구내방송장치	정원 및 단위조직 수
56	45111805	비디오편집기	정원 및 단위조직 수
57	45111893	영상정보디스플레이장치	정원 및 단위조직 수
58	45121516	디지털캠코더 또는 비디오카메라	정원 및 단위조직 수
59	52161545	디지털비디오레코더	정원 및 단위조직 수

전라북도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전라북도 건축 조례 시행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21년 7월 9일
전라북도지사

전라북도 규칙 제3170호

전라북도 건축 조례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라북도 건축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공사감리자

제2조(공사감리자의 모집공고)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의2제2항에 따라 공사감리자의 모집공고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공개모집할 것
2. 전라북도(이하 “도”라 한다) 및 시·군의 인터넷 홈페이지,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건축사협회 등 모집대상자들이 널리 볼 수 있는 곳에 20일 이상 공고할 것
3. 모집대상은 도에 개설신고 또는 등록한 자를 대상으로 할 것

제3조(공사감리자의 등록 신청) ① 공사감리자로 등록 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사감리자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영 제19조의2제2항에 따른 감리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그 밖에 자격기준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증빙자료
- ② 제1항 각 호의 서류는 등재 신청 전 1개월 이내에 발행되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건축사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자(이

하 “건축사등”이라 한다)가 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공사감리자 등록명부에 작성·관리하고 이를 도 및 시·군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공사감리 업무량 및 건축사 분포 등을 고려하여 권역을 설정한 후 공사감리자 등록명부를 작성·활용·관리·공개할 수 있다. 다만, 모집공고에 응한 건축사등은 1개 권역의 명부에만 등록될 수 있다.

1. 공사감리업무와 관련하여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건축사법」 및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업무정지(영업정지 및 이에 따른 과징금을 포함한 다) 처분 이상의 행정처분 기한이 1년 이상 경과 한 자

2. 공사감리자 등록신청일을 기준으로 휴업 중이 아닌 자

3. 다른 건축공사장의 상주 감리원으로 선임되지 아니한 자

4. 제4조제1항제2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여 공사감리자 등록 취소된 날부터 2년 이상 경과 한 자

④ 제3항에 따라 등록명부에 등재된 공사감리자(이하 “공사감리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7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공사감리자 지정 변경 요청을 하여야 한다.

1. 16일 이상 지병으로 인한 치료 또는 입원 시

2. 16일 이상 국내외 장기 출장 시

3. 등록명부에 등록된 자가 상주감리원으로 감리업무를 수행중인 경우

4.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감리업무 수행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

⑤ 허가권자는 제4항에 따라 변경요청서에 대한 사항을 확인하고 공사감리자 등록명부를 관리하는 도지사에게 변경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⑥ 공사감리자의 사무소 개설 및 등록변경이 생겼을 경우 또는 공사감리자가 법, 「건축사법」 및 「건설기술 진흥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제4조(공사감리자의 지정 등) ① 영 제19조의2제4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4항에 따라 작성된 공사감리자 등록명부에 등록된 자 중에서 무작위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이 경우 감리 업무량 등을 고려하고 균형있게 배정하기 위하여 「건축사법」 제31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건축사협회 전라북도건축사회(이하 “협회”라 한다)와 협의할 수 있다.

1. 업무정지나 휴업 기간 중에 있는 자

2. 특별한 사유 없이 연 2회 이상 공사감리자 지정을 거부한 자

3. 사무소를 폐업하거나 자격을 반납한 자

4. 특별한 사유로 감리업무 진행이 어려워 지정제외를 요청한 기간 중에 있는 자
 5. 공사감리와 관련하여 건축주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을 요구 또는 수수한 자
 6. 다른 건축공사장의 상주 감리원으로 선임된 자
- ② 허가권자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신청을 받은 후 7일 이내에 지정된 공사감리자를 해당 건축주, 공사감리자 및 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지정내역을 별지 제4호서식의 공사감리자 지정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③ 공사감리자 지정을 통보받은 건축주는 원활한 감리업무 수행을 위하여 7일 이내에 「건축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의 착공신고에 필요한 설계도서를 지정된 공사감리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④ 공사감리자 지정을 통보받은 건축주와 공사감리자는 지정을 통보 받은 후 14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사감리자의 귀책사유로 감리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정된 공사감리자를 변경할 수 없다.

제5조(공사감리자의 지정 및 등록 취소) ① 허가권자는 지정한 공사감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다만,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 공사감리자의 신체상태, 감리능력 등 공사감리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공사감리자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등록취소를 요청하여야 한다.
- ③ 도지사는 공사감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명부를 변경하거나, 그 사유 및 기간 등을 고려하여 감리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공사감리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3조제6항에 따라 변경사항이 통보된 경우
 2. 제4조제1항에 따라 공사감리자를 지정할 수 없는 경우
 3.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 등록 취소를 요청한 경우

제3장 업무대행건축사

제6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건축사의 모집 등) ① 도지사는 영 제20

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건축사(이하 “업무대행건축사”라 한다)의 명부를 모집공고를 거쳐 작성·관리하고, 허가권자는 명부에서 업무대행건축사를 지정해야 한다.

- ② 업무대행건축사 모집공고, 명부작성·관리 및 지정에 관하여는 제2조부터 제5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공사감리자”는 “업무대행건축사”로, “건축사 등”은 “건축사”로,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을 각각 별지 제5호서식부터 별지 제8호서식으로 본다.

제4장 건축물관리점검기관

제7조(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모집 등) 도지사는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모집공고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공개모집 할 것
2. 도 및 시·군의 홈페이지, 「건축물관리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이하 “생애이력 정보체계”라 한다) 등에 20일 이상 공고할 것
3. 모집대상은 도에 개설신고 또는 등록을 한 자와 소재지를 둔 기관으로 할 것 (「건축물관리법」 제18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는 제외한다)

제8조(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등록 신청) ① 건축물관리점검기관으로 등재 신청하려는 자는 생애이력 정보체계를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전자적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재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1.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별표 1에 따른 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2. 「건축물관리법」 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사업자등록증명서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4. 그 밖에 자격기준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증빙자료

② 제1항 각 호의 서류는 등재 신청 전 1개월 이내에 발행되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자가 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의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재 통보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등재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1.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별표 1에 따른 요건에 적합할 것

2. 건축물관리점검기관 업무와 관련하여 법, 「건축사법」, 「건축물관리법」 및 「건설기술 진흥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 이상의 행정처분 기간이 1년 이상 경과할 것
3.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재신청일을 기준으로 휴업 중이 아닐 것
4. 제10조제1항제2호, 제5호 및 제11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여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재 취소된 날부터 2년 이상 경과 한 자
-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등재 또는 변경등재 통보서를 발급한 경우 생애이력 정보체계를 통해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명부를 작성 또는 변경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제3항에 따라 등재를 취소한 경우에도 이와 같다.

제9조(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등록 변경·휴업·재개업 및 폐업 신고 등) ①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은 제8조제4항에 따른 등재사항 중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요건이 변경되거나 사무소 개설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생애이력 정보체계를 통해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전자적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재사항 변경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②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은 계속하여 1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재개업 또는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을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변경사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휴업·재개업·폐업 사항이 발생한 경우 제8조제4항을 준용한다.

제10조(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지정 등) ① 시장·군수가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4항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8조제4항에 따른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명부에 등재된 자 중에서 무작위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제외한다.

1. 업무정지나 휴업 기간 중에 있는 자
2. 특별한 사유 없이 연 2회 이상 건축물관리점검기관 지정을 거부한 자
3. 사무소를 폐업하거나 자격을 반납한 자
4. 특별한 사유로 감리업무 진행이 어려워 지정제외를 요청한 기간 중에 있는 자
5. 건축물관리점검과 관련하여 관리자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을 요구 또는 수수한 자

② 시장·군수는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을 우선하여 지정할 수 있다.

1.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에 따라 우수 건축물관리 사업자로 지정

받은 경우

2. 기술인력으로 건축사와 건축분야 기술사를 모두 갖춘 건축물관리점검기관
3. 건축물관리점검대상 건축물의 대지위치와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록 신청할 때 작성·제출한 선호지역이 일치하는 경우
- ③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을 지정한 경우, 건축물관리점검기관과 관리자에게 별지 제13호서식의 건축물관리점검 및 점검기관 지정 통보서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건축물관리점검기관 지정 및 등재 취소) ① 시장·군수는 지정한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건축물관리점검기관 점검자의 신체상태, 점검능력 등이 건축물관리점검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 ②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기관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등재취소를 요청하여야 한다.
- ③ 도지사는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재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제10조제1항제2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재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건축물관리법」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2. 사무소를 폐업하거나 자격을 반납한 경우
3.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별표 1에 따른 요건이 미달하게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보완하지 않은 경우
4. 제10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을 지정할 수 없는 경우
5. 시장·군수가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재 취소를 요청한 경우

제5장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제12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모집 공고) 도지사는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이하 “해체공사감리자”)의 모집공고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공개모집 할 것
2. 도 및 시·군의 홈페이지, 생애이력 정보체계 등 모집대상자들이 확인할 수 있는 곳에 20일 이상 공고할 것

3. 모집대상은 도에 개설신고 또는 등록을 한 건축사등으로 할 것

제13조(해체공사감리자의 등록 신청) ① 해체공사감리자로 등록 신청을 하려는 자는 생애이력 정보체계를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전자적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별지 제14호 서식의 해체공사감리자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1. 「건축물관리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감리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그 밖에 자격기준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증빙자료

② 제1항 각 호의 서류는 등재 신청 전 1개월 이내에 발행되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자가 모집공고일 현재 제3조제3항 각 호에(이 경우 “공사감리자”를 “해체공사감리자”로 본다) 모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지 제15호서식의 해체공사감리자 등록명부에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해체공사감리 업무량 및 해체공사감리자 분포 등을 고려한 권역을 설정하여 해체공사감리자 등록명부를 작성·관리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생애이력 정보체계를 통해 해체공사감리자 등록 명부를 작성하고, 도 및 시·군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5조제3항에 따라 등록명부를 변경하거나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⑤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변경 및 통보에 관한 사항은 제3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준용한다. 이 경우 “공사감리자”는 “해체공사감리자”로, “별지 제3호서식”은 “별지 제16호서식”으로 본다.

제14조(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 등) ① 허가권자는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에 따라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13조제4항에 따른 해체공사감리자 등록명부에 등록된 자 중에서 무작위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건축물관리법」 제31조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2.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23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3.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이 경우 “공사감리자”를 “해체공사감리자”로 본다)

②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5항에 따른 건축물 또는 구조가 복잡하고 위험성이 높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해체공사감리자를 등록명부에서 따로 지정할 수 있다.

③ 도지사, 시장·군수는 건축물의 안전한 해체공사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체공사감리자 등록명부 관리 업무와 해체공사감리자 지정대장 관리 업

무에 대해 해체공사감리 관련 전문성을 갖춘 협회 등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해체공사감리자 지정 및 등록 취소) ① 허가권자는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해체공사감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제13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3조제4항에 따라 해체공사감리업무 수행이 어려워 지정제외를 요청한 기간 중에 있는 자는 그렇지 않다.
2. 공사감리자의 신체상태, 감리능력 등이 공사감리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해체공사감리자 지정을 취소하거나 「건축물관리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해체공사감리자를 교체하거나 지정을 제한한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등록취소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그 밖의 해체공사감리자의 등록변경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은 제5조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사감리자”는 “해체공사감리자”로 본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 규정은 2021년 7월 9일부터 시행한다.

■ 전라북도 건축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신설 2021. 7. 9. >

공사감리자 등록 신청서

•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	------

신청구분	다중이용건축물 감리 []			기타건축물 감리 []		
	신규 []	재신청 []	중도사퇴 후재신청 []	신규 []	재신청 []	중도사퇴 후재신청 []

• 분류는 1. 「건축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 2.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건설엔지니어링업자 중 해당되는 번호를 적습니다.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개설신고번호/등록번호
	사무소명	분류 []
	전화번호	팩스번호
	사무소주소	

「건축법」 제21조제2항 및 「전라북도 건축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공사감리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라북도지사 귀하

첨부 서류

-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확인증, 건축사 행정처분조회서

210mm×297mm [보존용지(2중) 70g/㎡]

■ 전라북도 건축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신 설 2021. . .>

공사감리자 지정 변경요청서

•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	------

• 분류는 1. 「건축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 2.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건설엔지니어링업 중 해당되는 번호를 적습니다.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개설신고번호/등록번호
	사무소명	분류 []
	전화번호	팩스번호
	사무소주소	

신청구분: 지정제외 [] 또는 명부 삭제 [], 사무소 개설 및 등록변경 [], 행정처분 []

지정제외 및 등록명부 삭제	[] 16일 이상 지병으로 인한 치료 또는 입원
	[] 16일 이상 국내외 장기출장
	[] 등록명부에 등록된 건축사가 상주 감리원으로 감리업무를 수행 중
	[] 그 밖의 사유 ()
제외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사무소 개설 및 등록변경	(※ 공사감리자 등록신청과 관련한 변동사항 기재합니다.)
행정처분	(※ 행정처분 일자, 내용 등 기재합니다.)

「전라북도 건축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4항에 따라 공사감리자 지정사항 변경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〇〇시장·군수 귀하

첨부 서류

- 지정제외(연기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 전라북도 건축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신청서> (2021. 7. 9.)

업무대행건축사 등록 신청서

•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신청구분	신규 []	재신청 []	중도사퇴 후 재신청 []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개설신고번호	
	사무소명	자격번호	
	전화번호	팩스번호	
	사무소주소		

「건축법」 제27조제1항 및 「전라북도 건축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업무대행건축사 등록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라북도지사 귀하

첨부 서류

-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확인증, 건축사 행정처분조회서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 전라북도 건축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신 설 2021. . .>

업무대행건축사 지정 변경요청서

•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개설신고번호
	사무소명	자격번호
	전화번호	팩스번호
	사무소주소	
신청구분: 지정연기 [] 또는 명부 삭제 [], 사무소 개설 및 등록변경 [], 행정처분 []		
지정제외 및 등록명부 삭제	[] 16일 이상 지병으로 인한 치료 또는 입원	
	[] 16일 이상 국내외 장기출장	
	[] 등록명부에 등록된 건축사가 상주 감리원으로 감리업무를 수행 중	
	[] 그 밖의 사유 ()	
제외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사무소 개설 및 등록변경	(※ 공사감리자 등록신청과 관련한 변동사항 기재합니다.)	
행정처분	(※ 행정처분 일자, 내용 등 기재합니다.)	

「전라북도 건축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업무대행건축사 지정사항 변경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〇〇시장·군수 귀하

첨부 서류

- 연기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10mm×297mm[표준용지(2종) 70g/㎡]

■ 전라북도 건축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신 설 2021. . .>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재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신청기관	기관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점검분야(중복 가능)	
신청기관	① 정기점검, 긴급점검,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	
	* 점검대상 규모별 구분	
	연면적 3천제곱미터 미만 [] ,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부터 1만제곱미터 미만 [] ,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	
신청기관	② 안전진단: []	
	• 등재요건은 해당사항만 작성합니다. • 분류는 1. 「건축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 2.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건설엔지니어링업자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안전진단전문기관 4.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건축분야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한 자 5. 한국시설안전공단 6. 한국감정원 7. 한국토지주택공사 중 해당되는 번호를 적습니다.	
	기술인력	총 명 (건축사: 명, 특급: 명, 고급: 명, 중급: 명, 초급: 명, 건축사보: 명)
등재요건	분류	자본금 원
	장비	
선호지역	전체 []	
	전주시 [] , 군산시 [] , 익산시 [] , 정읍시 [] , 남원시 [] , 김제시 [] , 완주군 [] , 진안군 [] , 무주군 [] , 장수군 [] , 임실군 [] , 순창군 [] , 고창군 [] , 부안군 [] ,	

「건축물관리법」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전라북도 건축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등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전라북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1.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2. 「건축물관리법」 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사업자등록증명서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4. 교육이수확인서(해당하는 경우)
------	--

210mm×297mm [백상지 80g/㎡]

■ 전라북도 건축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신 설 2021. . . >

제 호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변경)등재 통보서

1. 기관명:
2.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3. 소재지:
4. 전화번호:
5. 점검분야: ① 정기점검, 긴급점검,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
(점검대상 규모) 연면적 3천㎡ 미만 []
연면적 3천㎡ 이상부터 1만㎡ 미만 []
연면적 1만㎡ 이상 []
② 안전진단: []
6. 분 류:

위 기관을 「건축물관리법」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전라북도 건축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3항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기관으로 (변경)등재 합니
다.

년 월 일

전라북도지사

직인

최초 등재일 :

210mm×297mm [백상지 120g/㎡]

■ 전라북도 건축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신 설 2021. . .>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재사항 변경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신고인	기관명	등재번호 및 등재일		
	대표자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점검분야	안전진단기관: [], 점검기관: []			
변경사항	구분	변경 연월일	변경 전	변경 후

「전라북도 건축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전라북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작성방법	신고인 및 점검분야 란은 변경 전의 사항을 적습니다.

210mm × 297mm [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전라북도 건축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신 설 2021. . .>

[] 휴업
건축물관리점검기관 [] 재개업 신고서
 [] 폐업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신고인	기관명	등재번호 및 등재일
	대표자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점검분야	안전진단기관: [] , 점검기관: []	
신고내용	휴업예정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재개업일	년 월 일
	폐업일	년 월 일
	휴업·폐업 사유	

「전라북도 건축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전라북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1. 휴업·재개업 또는 폐업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재통보서 원본(폐업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

210mm×297mm [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전라북도 건축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신 설 2021. . . >

건축물관리점검 및 점검기관 지정 통보서

(정기점검 [], 긴급점검 [],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 _____

통보번호 _____

관리자 성명(법인 또는 사업자명) _____

(전화번호: _____)

대지 위치 _____

용도 _____

구조 _____

건축물 수 _____

세대 수 _____

연면적 _____

m²

점검대상 건축물

순번	명 칭	사용 승인일	연면적	세대 수	점검 근거	점검기한
1			m ²			
2			m ²			
3			m ²			

지정된

기관명

건축물

대표자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관리점검

소재지

기관

(전화번호: _____)

상기 건축물이 「건축물관리법」 제19조 및 「전라북도 건축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점검 대상 건축물임을 통보합니다. 관리자는 점검기한 내에 지정된 건축물관리점검기관에 점검을 의뢰하고,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은 「건축물관리법」 제17조에 따른 「건축물관리점검지침」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00시장 · 군수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m²]

■ 전라북도 건축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신 설 2021. 7. 9. >

해체공사감리자 등록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신청구분	신규 []	재신청 []	중도사퇴 후 재신청 []
• 분류는 1. 「건축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 2.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건설엔지니어링업자 중 해당되는 번호를 적습니다.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남 [] 여 []
	전화번호	팩스번호	
	사무소명	분류	
	대표자	개설신고/등록번호	
	사무소 주소		

「전라북도 건축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해체공사감리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전라북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 개설신고 및 등록 확인증, 행정처분조회서, 재직증명서(소속 건축사 및 기술인의 경우)

210mm×297mm[백상지 80g/m²]

■ 전라북도 건축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신 설 2021. . .>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변경요청서

※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남[] 여[]
	전화번호	팩스번호	
	사무소명	분류	
	대표자	개설신고/등록번호	
	사무소 주소		
신청구분: 지정연기 [] 또는 명부 삭제 [], 사무소 개설 및 등록변경 [], 행정처분 []			
지정제외 및 등록명부 삭제	[] 16일 이상 지병으로 인한 치료 또는 입원		
	[] 16일 이상 국내외 장기출장		
	[] 「건축사법」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감리자격에 변경이 생겼을 경우		
	[] 등록명부에 등록된 건축사가 상주 감리원으로 감리업무를 수행 중		
	[] 그 밖의 사유 ()		
제외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사무소 개설 및 등록변경	(※ 공사감리자 등록신청과 관련한 변동사항 기재합니다.)		
행정처분	(※ 행정처분 일자, 내용 등 기재합니다.)		

「전라북도 건축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5항에 따라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변경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라북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 변경사항이 기재된 신고확인증 사본, 행정처분서 사본 또는 그 밖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10mm×297mm[백상지 80g/㎡]

전라북도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전라북도립국악원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21년 7월 9일
전라북도지사

전라북도 규칙 제3171호

전라북도립국악원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전라북도립국악원 운영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전라북도립국악원운영조례”를 “「전라북도립국악원 운영조례」”로 한다.

제2조제2항제1호 중 “사무국장”을 “총무팀장”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공연팀장”을 “운영팀장”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사무국장”을 “총무팀장, 운영팀장”으로 한다.

제4조제2항 후단 중 “다만, 긴급을 요하는”을 “다만, 긴급한”으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라북도립국악원 운영조례(이하“조례”라 한다)제2조”를 “「전라북도립국악원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2조”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1년이내”를 “1년 이내”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해외동포”를 “재외동포”로 한다.

제1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다만, 원장은 각 실·단의 특성을 고려 탄력근로제를 적용 조정 할 수 있다.”를 “다만, 예술단장은 공연 또는 연습 등 예술단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원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다.”로 한다.

② 단원 중 예술단원(창극단, 관현악단, 무용단)의 근무시간 중 09:30부터 15:00까지는 집중근무시간(소속 단원이 전체연습 및 파트별 연습을 하기 위해 도립국악원 근무지에 상주하는 시간)으로 운영하고, 15:00 이후 근무종료시간 전까지는 개인연습 및 교육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예술단별 업무일지를 작성하고 관리한다.

제18조제1항 중 “따른근로시간”을 “따른 근로시간”으로 한다.

제19조제1항제2호 중 “초·중고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을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후단 중 “「초·중등 교육법」”을 “「초·중등교육법」”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후단 중 “「초·중등 교육법」”을 “「초·중등교육법」”으로 한다.

제21조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30조제1항제1호 중 “「전시동원법」 또는 기타”를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기타”를 “그 밖”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해외연수 :”를 “해외연수:”로 한다.

제3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및 같은 조 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무국장”을 각각 “원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국악경연대회 입상자 :”를 “국악경연대회에 단원이 직접 출전하여 입상한 자:”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 중 “자 :”를 각각 “자:”로 하며, 같은 조 제15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신규 채용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직급조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승급한 후 해당연도에 받은 실기평가 결과는 직급 조정에 반영하지 않는다.

제33조제16항을 삭제한다.

제35조제2항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36조제2호 중 “국악연수생중”을 “국악연수생 중”으로 한다.

제37조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38조 중 “사무국장”을 “총무팀장”으로 한다.

제39조제1항제1호 중 “중징계 :”를 “중징계:”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경징계 :”를 “경징계:”로 한다.

제4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공연팀장”을 “운영팀장”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원장은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성희롱·성폭력·갑질 등 특별한 사안으로 징계위원회가 소집된 경우 관련분야 전문가를 2명 이내로 추가 위촉한다.

1. 총무팀장
2. 각 실·단장 중에서 원장이 지명하는 3명
3. 변호사, 문화예술 관련 전문가 중 원장이 위촉하는 4명

⑥ 위원은 그 직무에 관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의2(징계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징계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심의사항의 당사자이거나 그 심의사항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사항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심의사항에 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등이 해당 심의사항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징계위원회의 심의사항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징계위원회는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의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징계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위원장은 해당 위원을 해촉하거나 해임할 수 있다.

제41조제6항제1호 중 “견책 :”을 “견책:”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감봉 :”을 “감봉:”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정직 :”을 “정직:”으로 한다.

제42조제2항 후단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4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물품관리 책임자 :”를 “물품관리책임자:”로 한다.

1. 물품관리관: 원장
2. 물품출납원: 총무팀장

제45조제1항 중 “관리·청구·검수·수리 기타”를 “관리·청구·검수·수리 및 그 밖의”로 한다.

제48조 중 “조례시행규칙”을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별표 1,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을 다음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단원의 종류 및 정원

구 분	정 원	종류 및 정원		비고
계	140인			
교육 학예실	29인	가. 실 장 나. 주간교육주임 다. 야간교육주임 라. 교 육 수 마. 학예연구팀장 바. 연 구 사 사. 연 구 원	1인 1인 1인 22인 1인 2인 1인	실장:계약직 (연봉제 적용)
공연기획실	11인	가. 실 장 나. 공연기획팀장 다. 공연지원팀장 라. 단 원	1인 1인 1인 8인	실장:계약직 (연봉제 적용)
창극단	27인	가. 단 장 나. 지 도 위 원 다. 수 석 라. 부 수 석 마. 단 무 장 바. 의상(소품)·악기 사. 단 원	1인 1인 4인 5인 1인 1인 14인	단장:계약직 (연봉제 적용)
관현악단	45인	가. 단 장 나. 지 도 위 원 다. 수 석 라. 부 수 석 마. 단 무 장 바. 의상 · 악기 사. 악 보 아. 단 원	1인 1인 7인 7인 1인 1인 1인 26인	단장:계약직 (연봉제 적용)
무용단	28인	가. 단 장 나. 지 도 위 원 다. 수 석 라. 부 수 석 마. 단 무 장 바. 의상(소품)·악기 사. 단 원	1인 1인 4인 5인 1인 1인 15인	단장:계약직 (연봉제 적용)

위 사람은 아래와 같이 (출강, 대회출전, 대회심사)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생하는 모든 사고는 본인이 전적으로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행사명 :

출 연 일 시	주 최	장 소	출연내용	근무상황
. . . ~ . . . (: ~ :)				연 차 조 퇴
조퇴시간 :				

※ 조퇴는 출발시간을 정확히 기재 바람.

(첨부 : 증빙서류)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실단장

담 당 자	운영팀장	원 장	결 재

전라북도립국악원장 귀하

[별지 제9호서식]

업 무 일 지

_____ 단

년 월 일 요일

	단무장	지도위원	단 장
결 재			

연 습 내 용	오 전		특이사항
	오 후		특이사항
공 연 및 행 사	공 연		특이사항
	교 육		
	기 타		

전라북도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전라북도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21년 7월 9일
전라북도지사

전라북도 규칙 제3172호

전라북도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전라북도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본문 중 “등에 의거”를 “등을 바탕으로”로, “ 〃 조례 〃 라 한다) 제4조(금고지정 평가기준)”를 ““조례”라 한다) 제4조”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주요 경영지표 현황은”을 “중 주요 경영지표 현황이”로, “인정되는 경우 만점 처리할 수 있다”를 “인정되거나 지역채투자 실적이 금융위원회 평가결과 우수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세부항목을 각각 만점 처리한다.”로 한다.

제3조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조례 제4조 별표 중 각 세부항목에 대한 순위 간 점수 편차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제3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항목 1·3·4·6번: 배점한도의 10퍼센트
2. 항목 2·5번: 배점한도의 5퍼센트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조례 제4조 별표 중 세부항목별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조제1호 단서 중 “제2조제1항 제1호”를 “제2조제1항제1호”로, “(10점)”을 “(8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예금금리”를 “예금금리, 정기예금 만기이후 적용금리”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본문 중 ““도내지점 수 및 지역주민 이용 편리성”은”을 ““관내지점의 수,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 ATM 설치대수”는”으로, “있는 도내 영업망 점포수”를 “있도록 관내 영업점, 관내 무인점포 및 관내 ATM 설치대수”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전자금융에 의한 지방세입금 납부방안, 무인공과금수납기 운영”을 “정보기술을 활용한 납부편의(전자납부 등) 증진방안, 파업 등 사고 등에 대비한 운영계획”으로 하며, 같은 조 제10호 중 ““지역사회기여실적””을 ““지역사회 기여 실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1호 중 “협력사업추진계획”을 ““도와 협력사업 계획””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지역 채투자 실적”은 지역 채투자 현황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평가결과를

기준으로 배점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세부항목별 평가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발표되는 금융위원회의 평가결과를 적용한다.

전라북도 고시 제2021-219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접도구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고시

지방도 745호선, 남원 월탄 소규모 구조개선사업 구간에 대하여 「도로법」 제25조에 의한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같은 법 제40조에 의한 접도구역 지정(변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변경)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7월 9일

전라북도지사

1.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항

가.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 번호	노선명	위 치	면적 (㎡)	기점	종점	주 요 통과지	총연장 (m)
기정	지방도	745	순창~진안	남원시 대강면 월탄리 일원	3,862	남원시 대강면 월탄리 398-1	남원시 대강면 월탄리 724	-	175
변경	지방도	745	순창~진안	남원시 대강면 월탄리 일원	3,030	남원시 대강면 월탄리 398-1	남원시 대강면 월탄리 724	-	154

나.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도로선형 불량구간 정비를 위한 도로구역 변경

다.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20. 1. 1. ~ 2021. 12. 31.

라.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붙임

마.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열람기간 : 시행기간 내
- 열람장소 : 전라북도 도로교통과(063-280-3621)

2. 접도구역 지정(변경) 사항

도로의 종류	지방도	노선번호	745	노선명	순창~진안
접도구역의 지정구간 및 범위	- 지정구간 : 남원시 대강면 월탄리 398-1 ~ 남원시 대강면 월탄리 724 - 범 위 :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접도구역 지정목적	- 도로 구조의 파손 방지 - 미관(美觀)의 훼손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 방지				
비 고					

3.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내용

가.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 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2	945	9	주간선 도로	4,410	소로2-927 대강면 사석리 711-1도	월탄리경계 대강면 월탄리 736천	일반 도로	대강중 교북측	전라북도 고시 제2232호 (2010.8.13.)	
변경	소로	2	945	8.5~9	주간선 도로	4,389	소로2-927 대강면 사석리 711-1도	월탄리경계 대강면 월탄리 736천	일반 도로	대강중 교북측	전라북도 고시 제2232호 (2010.8.13.)	

나.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소로2-945	소로2-945	• 연장변경 $L=4,410m \rightarrow 4,389m$ • 폭원변경 $B=9m \rightarrow 8.5 \sim 9m$	• 남원 월탄지구 소규모 구조개선(지방도745호선)으로 인해 선형개량 및 급경사 완화

4. 도로구역(변경) 및 접도구역(변경)과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 : 실음생략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 및 제16조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및 전라북도(도로교통과)에서 열람 가능

【붙임】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연번	토지 소재지					지적 면적 (㎡)	도로구역 (㎡)			소유자	
	시	면	리	지번	지목		기정	변경	증감	주 소	성 명
합계						11,297	3,862	3,030	감)832		
1	남원	대강	월탄	398-1	도	625	128	128	-		남원시
2	남원	대강	월탄	373-1	도	165	165	143	감)22		남원시
3	남원	대강	월탄	373-2	도	26	26	-	감)26		남원시
4	남원	대강	월탄	373-4	도	182	182	182	-		남원시
5	남원	대강	월탄	373-5	도	14	14	14	-		남원시
6	남원	대강	월탄	379-10	도	225	225	204	감)21		남원시
7	남원	대강	월탄	379-11	도	19	19	-	감)19		남원시
8	남원	대강	월탄	379-12	도	68	68	68	-		남원시
9	남원	대강	월탄	379-13	도	285	285	42	감)243		남원시
10	남원	대강	월탄	379-16	임	1,317	-	1,317	증)1,317		전라북도
11	남원	대강	월탄	379-3	도	255	255	217	감)38	남원시 대강면 월탄리	류**
12	남원	대강	월탄	379-4	도	294	294	207	감)87		남원시
13	남원	대강	월탄	380-3	도	1,295	1,295	149	감)1,146		남원시
14	남원	대강	월탄	397-3	도	10	10	-	감)10		남원시
15	남원	대강	월탄	397-4	도	12	12	-	감)12		남원시
16	남원	대강	월탄	398-2	도	40	40	33	감)7		남원시
17	남원	대강	월탄	398-4	도	7	7	7	-		남원시
18	남원	대강	월탄	398-5	도	838	55	40	감)15		남원시
19	남원	대강	월탄	399-8	도	4	4	-	감)4		남원시
20	남원	대강	월탄	399-9	도	4	4	-	감)4		남원시
21	남원	대강	월탄	413-1	도	7	6	6	-		남원시
22	남원	대강	월탄	413-5	도	1,082	264	82	감)182		남원시
23	남원	대강	월탄	724	도	4,523	504	192	감)312		국(건설부)

전라북도 고시 제2021-227호

전라북도 지적재조사사업 변경고시(고창군)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2020년 전라북도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사항에 관하여 같은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합니다.

전라북도지사
2021년 7월 9일

■ 고 시 사 항

- ① 사 업 명 : 전라북도 지적재조사사업
- ② 사업시행자 : 지적소관청(고창군청)
- ③ 사 업 위 치

연도	시군	지구명	위치	비고
2020	고창군	성두지구	고창군 고창읍 성두리 1번지 일원	

④ 필지 및 면적

시군	지구명	당초		변경		증감내역		비고
		필지수	면적(m ²)	필지수	면적(m ²)	필지수	면적(m ²)	
고창군	성두지구	593	504,415	601	496,717	8 (1.3%)	△7,698 (1.5%)	

- ⑤ 변경사유 : 필지 분할(지구계측량)에 따른 사업대상 필지수 및 면적변경
- ⑥ 지번별조서 : 도보게재 생략
 - 기타 관계서류는 해당 지적소관청에 비치
 - 연 락 처 : 고창군청 강명훈(063-560-2412)
- ⑦ 기 타 : 이 고시는 고시일로부터 시행합니다.

전라북도 고시 제2021-228호

전라북도 지적재조사사업 변경고시(부안군)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2020년 전라북도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사항에 관하여 같은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합니다.

전라북도지사
2021년 7월 9일

■ 고 시 사 항

- ① 사 업 명 : 전라북도 지적재조사사업
- ② 사업시행자 : 지적소관청(부안군청)
- ③ 사 업 위 치

연도	시군	지구명	위치	비고
2020	부안군	매화풍류지구	부안군 부안읍 동중리 132-45번지 일원	

④ 필지 및 면적

시군	지구명	당초		변경		증감내역		비고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부안군	매화풍류지구	943	178,170	960	153,680.6	+17 (1.8%)	△24,489.4 (13.7%)	

⑤ 변경사유 : 필지 분할(지구계측량)에 따른 사업대상 필지수 및 면적변경

⑥ 지번별조서 : 도보게재 생략

- 기타 관계서류는 해당 지적소관청에 비치
- 연 락 처 : 부안군청 송민섭(063-580-4234)

⑦ 기 타 : 이 고시는 고시일로부터 시행합니다.

전라북도 고시 제2021-229호

전라북도 지적재조사사업 변경고시(장수군)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2021년 전라북도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사항에 관하여 같은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합니다.

전라북도지사
2021년 7월 9일

■ 고 시 사 항

- ① 사 업 명 : 전라북도 지적재조사사업
- ② 사업시행자 : 지적소관청(장수군청)
- ③ 사 업 위 치

연도	시군	지구명	위치	비고
2021	장수군	산서동화1지구	장수군 산서면 동화리 55번지 일원	
		산서동화2지구	장수군 산서면 동화리 608번지 일원	
		학선지구	장수군 산서면 학선리 12-1번지 일원	

④ 필지 및 면적

시군	지구명	당초		변경		증감내역		비고
		필지수	면적(m ²)	필지수	면적(m ²)	필지수	면적(m ²)	
장수군	산서동화1지구	944	376,386	978	369,955	34 (3.6%)	△6,431 (1.7%)	
	산서동화2지구	183	58,470	183	57,182	0	△1,288 (2.2%)	
	학선지구	606	317,549	610	308,721	4 (0.7%)	△8,828 (2.8%)	

⑤ 변경사유 : 필지 분할(지구계측량)에 따른 사업대상 필지수 및 면적변경

⑥ 지번별조서 : 도보게재 생략

- 기타 관계서류는 해당 지적소관청에 비치
- 연 락 처 : 장수군청 김 현(063-350-2292)

⑦ 기 타 : 이 고시는 고시일로부터 시행합니다

전라북도 고시 제2021-231호

김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고시

김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 동 변경결정(변경)도서 사본을 전라북도 지역정책과 및 김제시 도시재생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전라북도지사

2021년 7월 9일

1. 김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m ²)			구성비(%)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545,023,733	-	545,023,733	100.0	
주거 지역	소 계	7,929,314	-	7,929,314	1.45	
	제1종전용주거지역	28,598	-	28,598	0.01	
	제1종일반주거지역	3,625,975	-	3,625,975	0.66	
	제2종일반주거지역	3,699,049	-	3,699,049	0.68	
	제3종일반주거지역	142,690	-	142,690	0.02	
	준주거지역	433,002	-	433,002	0.08	
상업 지역	소 계	1,024,300	-	1,024,300	0.19	
	일반상업지역	974,300	-	974,300	0.18	
	근린상업지역	50,000	-	50,000	0.01	
공업 지역	소 계	3,159,041	-	3,159,041	0.58	
	일반공업지역	3,159,041	-	3,159,041	0.58	
녹지 지역	소 계	31,692,318	-	31,692,318	5.82	
	보전녹지지역	8,814,907	-	8,814,907	1.62	
	생산녹지지역	2,926,944	-	2,926,944	0.54	
	자연녹지지역	19,950,467	-	19,950,467	3.66	
관리 지역	소 계	233,233,490	증) 22,243	233,255,733	42.79	
	보전관리지역	76,520,160	감) 29,697	76,490,463	14.03	
	생산관리지역	71,768,588	감) 23,726	71,744,862	13.16	
	계획관리지역	84,944,742	증) 75,666	85,020,408	15.60	
농 립 지 역		239,765,270	감) 22,243	239,743,027	43.99	
자연환경보전지역		28,220,000	-	28,220,000	5.18	

※ 기정 : 김제시 고시 제2021-45호(2021.04.30.) 적용

나.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위치	용도지역		면적 (㎡)	용적률	결정(변경)사유
		기 정	변 경			
1	김제시 백산면 하정리 43-19번지 일원, 김제시 홍사동 499-43번지 일원	보전관리 지역	계획관리 지역	29,697	100% 이하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의 도로구역 내 김제휴게소(상하행 2개소)를 설치하기 위하여 용도지역 변경(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 계획관리지역)하고자 함
		생산관리 지역	계획관리 지역	23,726		
		농림지역	계획관리 지역	22,243		

2. 관계도서 : 실음 생략

전라북도 고시 제2021-233호

대왕천 하천의 지정(변경) 고시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전라북도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하천법」 제7조제3항에 의거 대왕천의 하천구간을 지정(변경)하고 「하천법」 제7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전라북도지사

2021년 7월 9일

1. 하천의 지정(변경) 내역

구분	하천명	하천 등급	하천의 구간									결정 (변경)일
			기 점				종 점				하천 연장 (km)	
			시도	시군구	읍면동	경계	시도	시군구	읍면동	경계		
당초	대왕천	지방	전북	무주	무주	오산리 690번지선	전북	무주	무주	무주남대천(지방) 합류점	4.00	1982.10.11. (전북260호)
변경			전북	무주	무주	오산리 697번지선	전북	무주	무주	오산리 262-3번지선 무주남대천(지방) 합류점	4.28	2021.07.09.

2. 지정(변경) 사유

하천의 이용과 보전을 위하여 하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하천구간의 조사 및 측량 결과에 따른 지정(변경)

전라북도 고시 제2021-234호

대왕천 하천기본계획(변경) 고시

「하천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규정에 따라 전라북도 무주군에서 수립한 「대왕천 하천기본계획(변경)」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전라북도지사

2021년 7월 9일

1. 수립목적

그 간의 하천개수사업, 도시화, 기상 변화, 주변지역의 개발 등으로 변화되는 하도 및 수리·수문 특성을 하천기본계획에 반영하고 미비점을 보완하여 수자원 종합지침 확립에 기여하고자 함.

2. 금회수립 대상범위

수계명	하천명	하천 등급	하 천 의 구 간		연장 (km)	비고
			기 점	종 점		
금강	대왕천	지방	전라북도 무주군 무주읍 오산리 690번지선	전라북도 무주군 무주읍 무주남대천(지방) 합류점	4.00	1982.10.11. (전북260호)
			전라북도 무주군 무주읍 오산리 697번지선	전라북도 무주군 무주읍 무주남대천(지방) 합류점	4.28	2011.06.10. (전북 제2011-164호)
			전라북도 무주군 무주읍 오산리 639번지선	전라북도 무주군 무주읍 오산리 262-3번지선 무주남대천(지방) 합류점	2.60	2021.07.09. (전체 4.28km중 2.60km 제수립)

3. 연평균 강우량과 하천 수자원의 부존량에 관한 사항

하천명	유역 면적 (km ²)	수자원 총량 (백만 m ³)	기 준 감수량 (m ³ /s)	저수량 (m ³ /s)	유출량(백만 m ³)			손실량 (백만 m ³)
					홍수기	평상시	계	
대왕천	8.42	9.08	0.0487	0.0590	3.29	2.13	5.42	3.66

4. 정비계획

하천명	하천연장 (km)	하천기본계획(km)		하천정비(km)				비 고
		수립	미수립	합계	완료 구간	필요 구간	기타안전도 확보구간	
대왕천	4.28	4.28	-	8.56	-	4.42	4.14	

주) 하천정비현황 연장은 금회 하천기본계획수립 하천연장의 양안 연장임.

5. 하천유역의 지역별 및 홍수방어시설별 홍수배분계획

하천명	주요지점명	유역 면적 (km ²)	계획 규모 (년)	기 본 홍수량 (m ³ /s)	계획홍수량 (m ³ /s)		유역 및 홍수방어 시설별 홍수량 (m ³ /s)
					하도분담	유역분담	
대왕천	과업종점 (남대천(지방) 합류점)	8.42	50	105	105	-	-
	원이골천 합류 후	7.18	50	97	97	-	-
	원이골천 합류 전	6.64	50	89	89	-	-
	과업시점 (물림교 지점)	5.27	50	78	78	-	-
	턱골천 합류 후	4.82	50	75	75	-	-
	턱골천 합류 전	3.18	50	47	47	-	-
	오산사방댐 지점	1.69	50	30	30	-	-

6. 하천의 주요지점별 기본홍수량·계획홍수량·계획홍수위 및 계획하폭에 관한 사항

하천명	측점 (No.)	누가 거리 (m)	계 획 홍수량 (m ³ /s)	계 획 홍수위 (EL.m)	계 획 규모 (년)	하폭 (m)		시설제방고 (EL.m)		비 고
						현재	계획	좌안	우안	
대왕천	0+000	0	105	198.41	50	48	48	201.97	200.38	
	1+300	1,300	105	216.11	50	16	20	216.76	217.75	
	1+350	1,350	89	216.77	50	15	18	218.19	217.48	
	2+600	2,600	89	235.82	50	15	15	236.42	236.69	

주) 대왕천 하천기본계획(변경)(2021.07.09, 무주군)의 과업구간 2.60km에 대한 계획임

7. 하천법 제44조 제1항에 따른 보전지구·복원지구 또는 친수지구에 관한 사항

하천명	구 간(No.)	좌·우안구분	지구 구분	연장(m)	면적(m ²)
대왕천	0+000 ~ 1+300	좌안1	복원지구	1,300	24,632
	1+300 ~ 1+350	좌안2	복원지구	50	977
	1+350 ~ 2+600	좌안3	복원지구	1,250	21,683
	좌안부 (No.0+000~No.2+600)			2,600	47,292
	0+000 ~ 1+300	우안1	복원지구	1,300	24,622
	1+300 ~ 1+350	우안2	복원지구	50	745
	1+350 ~ 2+600	우안3	복원지구	1,250	26,280
	우안부 (No.0+000~No.2+600)			2,600	51,647
	합계			5,200	98,939

주) 대왕천 하천기본계획(변경)(2021.07.09, 무주군)의 과업구간 2.60km에 대한 계획임

8. 하천기본계획의 열람에 관한 사항

하천기본계획에 대한 도서 및 관계서류는 전라북도 공항하천과 또는 무주군청 안전재난과에 비치하고 있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습니다.

전라북도 고시 제2021-235호

대왕천 하천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하천법」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하천구역을 다음과 같이 결정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전라북도(공항하천과), 무주군청(안전재난과)에 비치된 관계서류(토지세목, 지형도면)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지사

2021년 7월 9일

1. 하천의 명칭 및 종류 : 대왕천
2. 하천구역 지정일 : 2021. 7. 9.
3. 지정 사유 : 하천기본계획 수립(변경)에 따른 하천구역의 지정
4. 하천 구간

하천명	하 천 구 간			면적 (m ²)	결정 사유
	기 점	종 점	거리(km)		
대왕천	8개지구 (좌안 - 4개 지구, 우안 - 4개 지구)		8.56	140,243	기본계획 채 수 립
	무주군 무주읍 오산리 21 (No.1+300)	무주군 무주읍 오산리 274-3 (No.0+000)	1.30	24,632	
	무주군 무주읍 오산리 1088 (No.1+350)	무주군 무주읍 오산리 21 (No.1+300)	0.05	977	
	무주군 무주읍 오산리 648 (No.2+600)	무주군 무주읍 오산리 1088 (No.1+350)	1.25	21,683	
	무주군 무주읍 오산리 696 (No.4+280)	무주군 무주읍 오산리 648 (No.2+600)	1.68	17,614	
	좌안부 소계		4.28	64,906	4지구
	무주군 무주읍 오산리 21-1 (No.1+300)	무주군 무주읍 오산리 262-3 (No.0+000)	1.30	24,622	
	무주군 무주읍 오산리 20-1 (No.1+350)	무주군 무주읍 오산리 21-1 (No.1+300)	0.05	745	
	무주군 무주읍 오산리 639 (No.2+600)	무주군 무주읍 오산리 20-1 (No.1+350)	1.25	26,280	
	무주군 무주읍 오산리 697 (No.4+280)	무주군 무주읍 오산리 639 (No.2+600)	1.68	23,690	
	우안부 소계		4.28	75,337	4지구

첨부 열람서류 : 1.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의 세목을 기재한 서류

2. 하천구역의 지형도면(축적 5,000분의 1 이상의 지형도)

열람장소 : 전라북도 공항하천과, 무주군 안전재난과

전라북도 공고 제2021-1218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

지방도 745호선 “남원 월탄 위험도로 개선사업”을 위해 「도로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변경)에 관한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7월 9일

전라북도지사

1. 사업의 개요

- 사업기간 : 2021. 10. 1. ~ 2022. 10. 31.

사업의 종류 및 명칭(사업명)	도로 명칭	사업예정지 (위치)	사업내용	사업시행자의 명칭(성명) 및 주소
도로사업 (남원 월탄 위험도로 개선사업)	지방도 745호선	남원시 대강면 월탄리 산66-1 ~ 남원시 대강면 월탄리 산68-7	○ 연장 : 400m ○ 폭원 : 9m	전라북도(도로관리사업소)/ 순창군 적성면 적성로 128-13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및 면적

- 도로 이용 편의 제공을 위한 선형 개량 / 8,194m²

3.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사업명	열람장소	열람기간
남원 월탄 위험도로 개선사업	전라북도(도로관리사업소) 남원시 건설과	2021. 7. 9. ~ 2021. 7. 24.

4. 주민의견 제출기간 및 방법

- 제출기간 : 2021. 7. 9. ~ 2021. 7. 24.
- 제출방법 : 열람장소에 비치된 양식에 따라 의견서 제출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라북도 도로교통과(전화번호 : 063-280-3621), 전라북도 도로관리사업소(전화번호 : 063-290-673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 공고 제2021-1228호

비영리사단법인 정관변경허가 공고

「민법」 제42조 및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정관변경을 허가하였음을 공고합니다.

전라북도지사

2021년 7월 9일

1. 법인의 명칭 : 사단법인 전북 화장품 협회
2. 대 표 자 : 변 현 성
3. 주된 사무소 : 전라북도 완주군 이서면 안전로 139, 301호
4. 주된 사업
 - 전라북도 화장품 뷰티 제품 개발 관련 컨설팅
 - 전라북도 화장품 뷰티 산업 기술 직무분석 및 수요조사
 - 전라북도 화장품 뷰티 업체 판매촉진 및 공동 브랜드화
 - 전라북도 화장품 뷰티 제품 온라인 쇼핑몰 구축
 - 전라북도 화장품 뷰티 제품 해외 마케팅 활동
5. 최초허가연월일 : 2020. 5. 22.
6. 허가구분 : 정관 변경(제2조 사무소 소재지)
7. 변경허가연월일 : 2021. 7. 1.
8. 변경사항(정관 신·구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사무소 소재지) 법인의 사무소는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로 80, 4층(중화산동 2가)에 둔다.	제2조(사무소 소재지) 법인의 사무소는 전라북도 완주군 이서면 안전로 139, 301호에 둔다.

전라북도 공고 제2021-1235호

비영리법인 정관 변경 공고

「민법」 제45조 및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에 의하여 정관 변경을 허가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전라북도지사
2021년 7월 9일

1. 법 인 명 : 재단법인 디어스기독교연합총회
2. 소 재 지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전주천동로 473
3. 대 표 자 : 이형춘
4. 설립목적 : 기독교 종교법인으로서 복음선교, 신학훈련, 학술진흥, 교류협력 등의 사업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성취함에 그 목적을 둔다.
5. 허가구분 : 정관변경(제5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9조)
6. 변경허가연월일 : 2021. 7. 5.

전라북도 공고 제2021-1236호

비영리법인 정관 변경 공고

「민법」 제45조 및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에 의하여 정관 변경을 허가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전라북도지사
2021년 7월 9일

1. 법 인 명 : 재단법인 원불교전북교구
2. 소 재 지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팔달로 192-4
3. 대 표 자 : 한정순
4. 설립목적 : 대한민국 법률의 정한 바에 의하여 교화 및 교육, 자선복지 등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한다.
5. 허가구분 : 정관변경(기본재산 변경)
6. 변경허가연월일 : 2021. 7. 5.

전라북도 공고 제2021-1239호

공인 폐기 공고

전라북도 공인 조례 제8조(공고)에 의거 폐기한 공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전라북도지사

2021년 7월 9일

□ 공인의 등록

1. 공인폐기 사유 : 부서명 변경
2. 공인의 폐기일 : 2021년 7월 6일
3. 폐기 공인명 및 인영

폐 기 공 인		
공 인 명		인 영
탄소융복합과	전라북도탄소융복합과일상경비출납원인	
	전라북도탄소융복합과수입금출납원인	
	전라북도탄소융복합과분임물품출납원인	

전라북도 공고 제2021-1240호

공인 등록 공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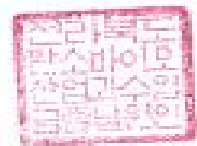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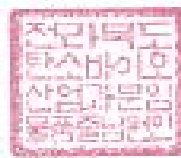
전라북도 공인 조례 제8조(공고)에 의거 등록한 공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전라북도지사

2021년 7월 9일

□ 공인의 등록

1. 공인등록 사유 : 부서명 변경
2. 공인의 개시일 : 2021년 7월 6일
3. 등록 공인명 및 인영

등 록 공 인		
공 인 명		인 영
탄소바이오산업과	전라북도탄소바이오산업과일상경비출납원인	
	전라북도탄소바이오산업과수입금출납원인	
	전라북도탄소바이오산업과분임물품출납원인	

전라북도 공고 제2021-1248호

공인 폐기 공고

전라북도 공인 조례 제8조(공고)에 의거 폐기한 공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전라북도지사

2021년 7월 9일

☐ 공인의 등록

1. 공인폐기 사유 : 부서명 변경
2. 공인의 폐기일 : 2021년 7월 7일
3. 폐기 공인명 및 인영

폐 기 공 인		
공 인 명		인 영
잼버리지원단	전라북도기획조정실잼버리추진단일상경비출납원인	
대도약청년과	전라북도기획조정실대도약기획단일상경비출납원인	
	전라북도기획조정실대도약기획단분임정수관인	

전라북도 공고 제2021-1249호

공인 등록 공고

전라북도 공인 조례 제8조(공고)에 의거 등록한 공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전라북도지사

2021년 7월 9일

□ 공인의 등록

1. 공인등록 사유 : 부서명 변경
2. 공인의 개시일 : 2021년 7월 7일
3. 등록 공인명 및 인영

등 록 공 인		
공 인 명		인 영
잼버리지원단	전라북도기획조정실잼버리지원단일상경비출납원인	
대도약청년과	전라북도기획조정실대도약청년과일상경비출납원인	
	전라북도기획조정실대도약청년과분임정수관인	

전라북도 공고 제2021-1251호

비영리법인 정관 변경 공고

「민법」 제42조 및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정관 변경을 허가하였기에 공고합니다.

전라북도지사
2021년 7월 9일

1. 법 인 명 : 사단법인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조직위원회
2. 소 재 지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752, 401호
3. 대 표 자 : 이선희
4. 설 립 목 적 :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를 효율적으로 준비 운영하여 우리 한국서예의 전통과 우수성을 세계에 널리 알리고 국제적인 문화교류를 통한 상호 이해와 협력으로 전북을 세계 서예문화의 중심으로 부상시키고자 함
5. 허가구분 : 정관 변경(제35조의1, 제43조)
6. 변경허가연월일 : 2021. 7. 7.

전라북도 공고 제2021-1256호

고창 상금리 지석묘군 도지정문화재(기념물) 지정 예고

「전라북도 문화재보호조례」 제9조, 제11조, 제19조에 따라 도지정문화재(기념물) 및 보호구역 지정, 관리단체 지정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전라북도지사

2021년 7월 9일

1. 공 고 명 : 고창 상금리 지석묘군 도지정문화재(기념물) 지정 예고

2. 예고내용

- 문화재 명칭 : 고창 상금리 지석묘군(高敞 上金里 支石墓群)
- 지정종별 : 기념물
- 소재지 : 전라북도 고창군 대산면 상금리 산 17번지 외
- 지정예고 면적 : 문화재구역 14필지 441.8㎡, 보호구역 ㎡
*지번별 면적조서 : “붙임 1” 참조
- 관리단체 : 고창군
- 예고 사유

고창 상금리 지석묘군은 가릿재부터 상금리 입구까지 2.7km 구간에 열상으로 9개 군집이 확인되며, 이 중 이번 지정대상인 상금리 일원의 3개 군집에는 87기가 분포하여 지석묘의 밀집도가 높고 유적의 보존상태가 양호하다. 고인돌의 구조는 기반식(基盤式)이 다수를 차지하고 개석식(蓋石式)도 확인되며, 덮개돌[上石]은 방형, 장방형, 제형, 타원형 등 다양한 형태이다. 고임돌[支石]은 지상 석곽형, 주형, 괴석형, 위석형 등 다양하며, 특히 지상 석곽과 주형 지석 등 기반식을 중심으로 하는 고창 고인돌의 전형적인 특징을 잘 보여준다. 지정대상 구역 주변에는 채석장도 분포하여 지석묘의 채석, 운반, 축조 등 일련의 축조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유적으로 학술적 가치가 높다.

3. 지정 예고일 : 도보 공고일

4. 지정예고기간 : 도보 공고일부터 30일

5. 의견제출

위 지정 예고 사항에 대하여 이견(異見)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일부터 30일 이내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북도청이나 해당 시·군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기재사항

- 문화재 지정 예고 사항에 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 방법 : 우편·팩스 등을 통해 제출

6. 연 락 처

가. 전북도청 문화유산과

- 주소 : (우)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 전화 : 063-281-5358 / 전송 : 063-279-4598

나. 고창군청 문화유산관광과

- 주소: (우)56442 고창군 고창읍 중앙로 245
- 전화 : 063-560-2943 / 전송 : 063-560-2449

붙임 1. “고창 상금리 지석묘군” 문화재구역 지번별 면적조사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지정면적 (㎡)	소유자	
						성명	주소
문화재 구역	고창군 대산면 상금리	산 6-1	임	15,469	42.5	경주** 중증	전라북도 고창군 대산면
		산 16	임	12,198	83	정** 외 1인	서울특별시 성북구
		산 17-1	임	16,663	40.6	신**	전라북도 고창군 성송면
		산 18-1	임	1,943	3.0	오**	서울특별시 강서구
		산 22	임	4,264	17.2	장**	전라남도 해남군 문내면
		산 23임	임	6,446	5.5	권**	서울특별시 마포구
		산 26-4임	임	14,855	165.5	정** 외 3인	서울특별시 중랑구
		산 35	임	1,686	6.8	이**	전라북도 고창군 대산면
		3임	임	179	6.0	가**	서울특별시 노원구
		38임	임	212	5.0	오**	부산광역시 북구
		40-1전	전	462	17.2	정**	전라북도 고창군 대산면
		41전	전	1,243	11.0	유**	서울특별시 광진구
		42전	전	896	4.5	정**	전라북도 고창군 대산면
		43전	전	1,755	24.8	김**	전라북도 고창군 대산면
		48-1전	전	1,438	4.5	최**	전라북도 고창군 대산면
		520	도로	694	4.7	국(건설부)	세종특별시 동무6로 11
	계			80,403	441.8		

전라북도 공고 제2021-1257호

도 등록문화재 등록 예고

「전라북도 문화재보호조례」 제35조에 따라 ‘전주고등학교 소강당’, ‘전주 풍남초등학교 강당’, ‘김제 중앙초등학교 강당’ 등 3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문화재 등록을 예고합니다.

전라북도지사
2021년 7월 9일

1. 공 고 명 : 도 등록문화재 등록 예고

2. 예고내용

가. 대상문화재

번호	명칭	수량	규격·면적	제작(건립) 연대	소유자 및 소재지
1	전주고등학교 소강당	1동	672.06㎡	1940년	전라북도 교육감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중노송동 449-1번지
2	전주 풍남초등학교 강당	1동	677.90㎡	1936년	전라북도 교육감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남노송동 507-1번지
3	김제 중앙초등학교 강당	1동	546.0㎡	1938년	전라북도 교육감 전라북도 김제시 동서로 193

나. 등록예고 사유

○ 전주고등학교 소강당

- 전주고등학교는 1919년 전주고등보통학교로 개교하였으며 1951년 전주고등학교로 변경되어 지역 인재의 요람으로서 지역교육사의 생생한 현장을 간직하고 있다. 소강당은 1940년에 건립되었으며 조적과 철근콘크리트조 1층 규모로 내부에 기둥없이 확 트인 개방공간 내에 무대, 중2층부, 북측 아케이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조적 벽체 및 개구부의 구성, 지붕 구조, 무대부의 의장적 처리 등이 잘 보존되어 있다. 근대 학교 건축의 건축적 양식을 잘 보여주고 있어 역사적·건축학적 가치가 있다.

○ 전주 풍남초등학교 강당

- 전주 풍남초등학교는 1919년 전주여자공립보통학교로 개교 후 1938년 풍남공립소학교로 변경, 1996년에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되었다. 80년 이상 보존된 지역의 초등교육시설로서 지역교육사의 생생한 현장을 간직하고 있다. 강당은 1936년에 건립되었으며 벽돌 조적조 1층 규모로 내부 기둥없이 확 트인 개방공간 내에 무대가 있다. 현재 3칸 정도가 덧대어 확장되었으며, 화장 실 보수 등 재건축이 이루어져 지금도 강당으로 활용되고 있다. 조적 벽체 구조 및 개구부의 구성, 지붕 구조, 무대부의 의장적 처리 등이 잘 보존되어 있다. 근대 학교 건축의 건축적 양식을 잘 보여주고 있어 역사적·건축학적 가치가 있다.

○ 김제 중앙초등학교 강당

- 김제 중앙초등학교는 1911년 김제공립보통학교로 개교 후 1938년 김제중앙공립심상소학교로 변경, 1996년에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되었다. 80년 이상 보존된 지역의 초등교육시설로서 지역교육사의 생생한 현장을 간직하고 있다. 강당은 1938년에 건립되었으며 벽돌 조적조 1층 규모로 기둥이 없는 개방 공간으로 구성되었다. 조적 벽체 구조 및 개구부의 구성, 지붕 구조 등이 잘 보존되어 있다. 현재 당초 건축물의 동측에 덧대어 공간 확장을 하였으며 2018년에 내부를 대폭 재건축하여 학교의 역사관 및 다용도실로 활용하고 있다. 근대 학교의 건축적 양식을 잘 보여주고 있어 역사적·건축학적 가치가 있다.

3. 등록 예고일 : 도보 공고일

4. 등록예고기간 : 도보 공고일부터 30일

5. 의견제출

위 등록 예고 사항에 대하여 이견(異見)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일부터 30일 이내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북도청이나 해당 시·군에 제출하여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기재사항

- 문화재 등록 예고 사항에 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 방법 : 우편·팩스 등을 통해 제출

6. 연 락 처

가. 전북도청 문화유산과

- 주소 : (우)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 전화 : 063-281-5358 / 전송 : 063-279-4598

나. 전주시청 전통문화유산과

- 주소: (우)55000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로 10
- 전화 : 063-281-5356 / 전송 : 063-279-4598

다. 김제시청 문화축제홍보실

- 주소: (우)54386 김제시 중앙로 40
- 전화 : 063-540-3882 / 전송 : 063-540-3454

전라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 공고 제2021-4호

재산등록사항 공고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1항에 규정에 의하여 전라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퇴직자의 재산변동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전라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

2021년 7월 9일

■ 공 고 사 항

① 등록번호 : 제 00 호

② 소 속 : 김제시

③ 직 위 : 기초의원

○ 성 명 : 김 승 일

○ 생 년 월 일 : 83. 02. 03

소 속	소재지	성명	공개구분	의무자상태	비고
김제시	김제시 요촌동길 (검산동)	김승일	공개	신규('21. 4. 8.자)	

재 산 변 동 사 항 공 개 목 록

소속		전라북도 김제시		직위	기초의원	성명	김승일
(단위 : 천원)							
본인과의 관계		재산의 종류		소재지 면적 등 권리의 명세		가액 (실거래가격)	비고
▶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소계)						62,997	
본인	자동차	2017년식 그랜즈스타렉스 배기량(2,497cc)				9,989 (9,989)	2017년 신규차량매수
본인	자동차	2019년식 카니발리무진 배기량(2,199cc)				22,595 (22,595)	2019년 신규차량매수
본인	자동차	2019년식 C220d4Matic 배기량(1,950cc)				30,413 (30,413)	2019년 신규차량매수
▶ 예금(소계)						51,353	
본인		(주)KB손해보험 761, KB생명보험 1,385, 교보생명보험 2,100, 우체국 22,224, 현대해상화재보험 940, 흥국화재해상보험(주) 3,031				30,441	본인 보험 등
모		삼성생명보험 10,842, 수협중앙회 10, 우체국 5,912, 전북은행 148, 현대해상화재보험 4,000				20,912	모친 보험 등
▶ 채무(소계)						134,338	
본인	금융채무	KB캐피탈 9,183, 농협은행 28,788, 메르세데스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주) 40,201, 전북은행 10,000, 하나카드 1,826				89,998	대출금
모	금융채무	삼성생명보험 6,340, 우체국 3,000, 전북은행 35,000				44,340	대출금
총 계						-19,988	

도 지 사 지 시 사 항

◇ 2021. 7. 5.(월) 간부회의 시

관리 번호	지시 제목	지시 내용
2021-75	섬진강 하류 수해피해 대응 철저	○ 지난해 8월 섬진강 하류지역 홍수 피해와 관련하여 댐 하류 수해원인 조사협의회에서 ‘섬진강댐 하류 수해 원인 조사 용역’ 중간 결과를 발표(7.2.)하였으니 구체적인 내용과 추후 동향을 파악하고 책임 소재, 피해 주민 보상 등 대응책을 마련하기 바람. (주관 : 공항하천과 / 협조 :)
2021-76	새로운 청년정책 발굴	○ 최근 대두하고 있는 청년문제는 현실적으로 인구·출산 문제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으므로 타 시도 청년·인구 정책 사례를 참고하여 우리 도에 맞는 정책연계성 높고, 효과성 있는 청년정책을 발굴·시행하기 바람. (주관 : 대도약청년과 / 협조 : 건강증진과)
	당면·현안업무	○ (하반기 도정 운영 내실화) - 신속한 코로나19 백신접종, 재난지원금 지급, SOC 대응, 국가예산 확보, 중앙공모사업 대응, 대산공약 발굴·구체화, 국정감사,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홍보 등 하반기 주요 현안을 철저히 추진하기 바람. (주관 : 전 실국 / 협조 :) ○ (민선7기 4년차 7대 정책과제 이행 철저) - ① 안전한 일상 조성, ② 새로운 산업지도, ③ SOC구축 및 광역화 모색, ④지방분권·지방자치·균형발전, ⑤ 전북 문 확보를 위한 대산공약 발굴, ⑥ 자존의식 고취, ⑦ 촘촘한 맞춤형 복지 등 분야별 실행력을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후속 조치를 마련하여 추진하기 바람. (주관 : 전 실국 / 협조 :)
	당면·현안업무	○ (자치경찰제 시행 철저) - 7월부터 전국적으로 자치경찰제가 시행되었으나, 처음 시행하는 만큼 도민·언론의 관심과 우려도 있으므로 위원회의 역할 정립과 예산 확보, 세부운영 기준 마련 등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타 시·도와 협력하여 공동 대응하기 바람. (주관 : 자치경찰행정과 / 협조 :)

전주시 고시 제2021-110호

전주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화산공원)사업 실시계획 고시

전라북도 고시 제1970-178(1970. 4. 14.)호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된 전주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화산공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라 작성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을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7월 9일
전 주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2가 산73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
 - 명 칭 : 공공체육시설(화산체육관) 주차장 확충사업
3. 면적 또는 규모 : 사업면적 1,270㎡
4.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전주시장
 - 주 소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로 10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착수예정일 : 2021년 7월 9일
 - 준공예정일 : 2022년 12월 31일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유권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자 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 권리자			비고
	구	동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의종류 및 내용	
총 계					9,204	1,270						
1	완산	중화산동 2가	산73	임	8,926	1,090	전주시					
2	완산	중화산동 2가	254-10	전	278	278	전주시					

- 수용 또는 사용할 지장물의 소유권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자 조서 : 해당 사항 없음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게재 생략

전주시 고시 제2021-111호

전주 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3-1165호선)사업 실시계획 고시

전주시 고시 제2015-112(2015. 8. 28.)호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된 전주 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3-1165호선)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라 작성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을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7월 9일
전 주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전주시 완산구 중앙동3가 97-2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3-1165호선)
 - 명 칭 : 중앙동 전라감영 뒷길 도로개설공사
3. 면적 또는 규모 : 면적 862㎡, 폭원 6m, 연장 144m
4.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전주시장
 - 주 소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로 10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착수예정일 : 2021년 7월 9일
 - 준공예정일 : 2023년 12월 31일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 조서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유권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자 조서 : 붙임과 같음
 - 수용 또는 사용할 지장물의 소유권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자 조서 : 붙임과 같음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게재 생략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유권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자 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자			비고
	구	동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종류 및 내용	
총 계					18,455.7	862.0						
1	완산	중앙동4가	6-1	대	13.2	2.4	장○홍	전주시 중앙동 ○○○-○				
2	완산	중앙동3가	103-2	대	304.1	26.2	김○덕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여울로 161, ○○○동 ○○○호				
3	완산	중앙동4가	1-1	대	8,194.9	55.7	전라북도	-				
4	완산	중앙동3가	104-3	대	19.8	19.8	전라북도	-				
5	완산	중앙동3가	104-4	대	135.5	55.1	이○재	전주시 완산구 전라감영4길 ○○-○○	남부 새마을 금고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풍남문2길 75(전동3가)	근저당권 자	
							박○순	전주시 완산구 경원동2가 ○○-○				
6	완산	중앙동3가	105-2	도	132.2	62.3	국 (건설부)	-	-	-	-	
7	완산	중앙동3가	97-2	대	342.1	124.1	전라북도	-	-	-	-	
8	완산	중앙동3가	105-3	대	8.2	5.6	최○일	전주시 완산구 중앙동3가 ○○	주식회 사 제일은 행	서울 종로구 공평동 100(전주지점)	근저당권 자	
							서○진	서울 종로구 평창동 145-5 일성빌라트 ○동 ○○○호				
							서○선	고양시 일산구 장항동 875 호수마을 ○○○동 ○○○○호				
							서○미	전주시 완산구 중앙동3가 ○○-○				
							서○실	대전 동구 자양동 201 동아아파트 ○○○동 ○○○호				
							서○훈	전주시 완산구 중앙동3가 ○○				
9	완산	중앙동3가	97	대	1,183.3	184.0	최○일	전주시 완산구 중앙동3가 ○○	주식회 사 전북은 행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669-2(영업부)	근저당권 자	
							서○진	서울 종로구 평창동 145-5 일성빌라트 ○동 ○○○호				
							서○선	고양시 일산구 장항동 875 호수마을 ○○○동 ○○○○호				
							서○미	전주시 완산구 중앙동3가 ○○-○				
							서○실	대전 동구 자양동 201 동아아파트 ○○○동 ○○○호				
							서○훈	전주시 완산구 중앙동3가 ○○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유권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자 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자			비고
	구	동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0	완산	중앙동4가	1-6	대	7,371.9	131.0	전라북도		농업협동 조합중앙회	서울중구충정로1 가75(전북완주시 군지부)		
11	완산	중앙동3가	91	대	155.4	52.7	최○희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여울로 161, ○○○동 ○○○호	주식회사 제일은행	서울종로구공평동 100(전주지점)		
12	완산	중앙동3가	88-3	대	228.1	72.4	박○안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1가 523-6 신우아파트 ○동 ○○○호				
13	완산	중앙동3가	88-1	대	231.4	16.2	박○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288 현대아파트 ○○○동 ○○○호	-	-	-	
							이○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288 현대아파트 ○○○동 ○○○호				
							이○유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288 현대아파트 ○○○동 ○○○호				
							이○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288 현대아파트 ○○○동 ○○○호				
							박○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 86 아시아 선수촌아파트 ○동 ○○○호				
							김○윤	서울 송파구 잠실동 86 아시아 선수촌아파트 ○동 ○○○호				
							김○면	서울 송파구 잠실동 86 아시아 선수촌아파트 ○동 ○○○호				
14	완산	중앙동3가	88-2	대	49.6	25.0	이○경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봉곡로 ○○○(효자동2가)	노송신용협 동조합 이○순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1가 783-6 전주시 완산구 중앙동3가 ○○-○	근저당 권자 전세권 자	
15	완산	중앙동3가	87	대	86.0	29.5	이○경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봉곡로 ○○○(효자동2가)	-	-	-	

☐ 수용 또는 사용할 지장물의 소유권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자 조서

구분	소재지	지번	물건명	규격	단위	수량	실측 면적	소유자			권리명세서				
								성명	주소	지분율	성명	주소	권리		
1	중앙동3가	103-2	담장		m	34		김○덕	전주시 완산구 여울로, ○○○동 ○○○호	-	-	-	-		
			수목	벗나무	주	7									
2	중앙동4가	1-1	전기시설		EA	3		전라북도	-	-	-	-	-		
3	중앙동3가	104-4	사무실	연와, 슬라브	m ²	49.25	57.4	이○재	전주시 완산구 전라감영4길 ○○-○○	10분의8	남부새마을금고	전라북도전주시 완산구풍남문 2길75 (전동3가)	근저당 권자		
			주택	목조, 기와	m ²	35.7	40.2								
			사무실	연와, 슬라브	m ²	49.25	22.7								
			물치	연와, 슬라브	m ²	6.61	18.9								
			소나무		주	1		박○순	전주시 완산구 경원동2가 ○○-○	10분의2					
			담장		m	15									
			보조기둥	0.6×0.6, h=2.5	EA	1									
			대문		m	1.5									
4	중앙동3가	104-3	담장		m	6		국 (건설부)	-	-	-	-	-		
4	중앙동3가	104-3	보조기둥		EA	2		국 (건설부)	-	-	-	-	-		
			담장		m	15									
			전기시설		EA	2									
			블라드		EA	2									
5	중앙동3가	97-2	창고	콘크리트, 슬레이트	m ²	15.9	15.9	전라북도							
			수도계량기		EA	1									
			정화조		EA	1									

구분	소재지	지번	물건명	규격	단위	수량	실측면적	소유자			권리명세서					
								성명	주소	지분율	성명	주소	권리			
6	중앙동3가	105-3	창고	콘크리트	㎡	12.3	12.3	최○일	전주시 완산구 중앙동3가 ○○	13분의3	주식회사 제일은행	서울 종로구 공평동 100 (전주지점)	근저당권자			
		서○진						서울 종로구 평창동 145-5 일성빌라트 ○동 ○○○호	13분의2							
6	중앙동3가	105-3						서○선	고양시 일산구 장항동 875 호수마을 ○○○동 ○○○호	13분의2						
								서○미	전주시 완산구 중앙동3가 ○○-○	13분의2						
								서○실	대전 동구 자양동 201 동아아파트 ○○○동 ○○○호	13분의2						
								서○훈	전주시 완산구 중앙동3가 ○○	13분의2						
7	중앙동3가	97	담장		m	1		최○일	전주시 완산구 중앙동3가 ○○	13분의3	주식회사 전북은행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669-2(영업부)	근저당권자			
			주차장	철골조	㎡	241.6		서○진	서울 종로구 평창동 145-5 일성빌라트 ○동 ○○○호	13분의2						
			수목	소나무	주	1		서○선	고양시 일산구 장항동 875 호수마을 ○○○동 ○○○호	13분의2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서울 중구 충정로 1가 75(전북완주시군지부)				
								서○미	전주시 완산구 중앙동3가 ○○-○	13분의2						
			수목	모과나무	주	1		서○실	대전 동구 자양동 201 동아아파트 ○○○동 ○○○호	13분의2	주식회사 제일은행	서울 종로구 공평동 100 (전주지점)				
								서○훈	전주시 완산구 중앙동3가 ○○	13분의2						
		8	중앙동3가	91	창고	목조	㎡	60.16	25	최○희	전주시 완산구 여울로 161, ○○○동 ○○○호	-		-	-	-
					담장		m	14								
웬스					m	19										
담장					m	14										
9	중앙동3가	88-3	주택	목조, 기와	㎡	78.01	77.8	박○안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1가 523-6 신우아파트 ○동 ○○○호	-	노송신용협동조합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1가 783-6	근저당권자			
			창고	목조, 아연	㎡	7.26					이○순	전주시 완산구 중앙동3가 ○○-○	전세권자			
			담장		m	16										

구분	소재지	지번	물건명	규격	단위	수량	실측면적	소유자			권리명세서		
								성명	주소	지분율	성명	주소	권리
10	중앙동3가	88-1	점포	연와, 슬레이트	㎡	31.68	31.3	박○경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동 288 현대아파트 ○○○동 ○○○호	7분의1	-	-	-
								이○혼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동 288 현대아파트 ○○○동 ○○○호	7분의1			
			담장		m	12		이○유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동 288 현대아파트 ○○○동 ○○○호	7분의1			
								이○수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동 288 현대아파트 ○○○동 ○○○호	7분의1			
								박○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 86 아시아 선수촌아파트 ○동 ○○○호	7분의1			
								김○윤	서울 송파구 잠실동 86 아시아 선수촌아파트 ○동 ○○○호	7분의1			
								김○면	서울 송파구 잠실동 86 아시아 선수촌아파트 ○동 ○○○호	7분의1			
11	중앙동3가	87	점포	목조, 슬레이트	㎡	55.7	61.9	이○경	전주시 완산구 봉곡로 ○○○	-	농협은행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120 (충정로1가) (무주군지부)	근저당 권자
			주택	목조, 슬라브	㎡	7.69	13.2						
			주택	목조, 슬레이트	㎡	55.7	43.7						
			담장		m	12							
12	중앙동3가	104-4	통신주		주	1		KT	-	-	-	-	-

전주시 고시 제2021-112호

전주 도시계획시설(학교:전주대학교) 세부시설 조성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전라북도 고시 제1980-81(1980. 5. 28.)호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된 전주 도시계획시설(학교:전주대학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세부시설에 대한 조성계획을 변경 결정(경미한 사항)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

2021년 7월 9일
전 주 시 장

□ 전주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 내용

1.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 조서 : 변경 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 종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2	학교	전주 대학교	완산구 효자동3가 1203번지 일원	591,087.3	-	591,087.3	전북81 (1980. 5. 28.)	

2. 토지이용계획 총괄조서 : 변경

구 분	부지면적(㎡)			비율 (%)	비 고
	당초	증/감	변경		
합 계	591,087.3	증·감)3,260	591,087.3	100.0	
교사시설지	304,762.3	증)1,630	306,392.3	51.8	교육기본시설/지원시설/기타시설
운동시설지	62,596.0	-	62,596.0	10.6	체육장
교통시설지	73,450.0	-	73,450.0	12.4	도로 및 주차장
기타시설지	39,009.0	감)1,630	37,379.0	6.3	유보지/조경휴게지/실습장
녹 지	111,270.0	-	111,270.0	18.8	

3. 금회 세부시설 조성계획 변경 결정 조서

구 분	건축면적(㎡)			건축 연면적(㎡)			비고
	기 정	증·감	변 경	기 정	증·감	변 경	
합 계	76,160.99	증)468.96	76,629.95	208,338.09	증)521.56	208,859.65	
교사 시설	계	75,198.80	증)468.96	75,667.76	207,143.02	증)521.56	207,664.58
	진리관	2,175.94	증)13.64	2,189.58	8,633.00	증)47.00	8,680.00
	자유관	1,404.60	증)11.32	1,415.92	5,761.00	증)30.56	5,791.56
	혁신공유대학	-	증)384.00	384.00	-	증)384.00	384.00
	휴게시설	-	증)60.00	60.00	-	증)60.00	60.00

4. 세부시설 조성계획 변경 결정 조서

구 분		번호		세부시설명	부지면적(㎡)			건축규모(㎡)						비고
								건축면적			연면적			
		기정변경			당초	증/감	변경	당초	증/감	변경	당초	증/감	변경	
총 계					591,087.3	-	591,087.3	76,160.99	468.96	76,160.99	208,338.09	521.56	208,859.65	
교사 시설지	교육 기본 시설	1-1	1-1	(구 대학본관 중앙도서관)	23,573.0	-	23,573.0	4,593.70	-	4,593.70	18,116.80	-	18,116.80	
		1-2	1-2	진리관 (인문/사 법)	10,689.0	-	10,689.0	2,175.94	증)13.64	2,189.58	8,633.00	증)47.00	8,680.00	
		1-3	1-3	자유관 (경영)	13,874.0	-	13,874.0	1,404.60	증)11.32	1,415.92	5,761.00	증)30.56	5,791.56	
		1-4	1-4	교수연구동	9,148.0	-	9,148.0	803.60	-	803.60	6,904.17	-	6,904.17	
		1-5	1-5	공학1관	12,690.0	-	12,690.0	2,597.40	-	2,597.40	13,601.70	-	13,601.70	
		1-6	1-6	공학2관	4,444.0	-	4,444.0	2,179.48	-	2,179.48	6,985.13	-	6,985.13	
		1-7	1-7	공과대학 실습 동	1,244.0	-	1,244.0	1,440.00	-	1,440.00	1,440.00	-	1,440.00	
		1-8	1-8	평화관 (사회과 학)	12,041.0	-	12,041.0	1,463.48	-	1,463.48	6,350.19	-	6,350.19	
		1-9	1-9	예술관(예체능)	11,073.0	-	11,073.0	3,268.65	-	3,268.65	10,198.00	-	10,198.00	
		1-10	1-10	예술관 별관	6,313.0	-	6,313.0	2,046.12	-	2,046.12	5,518.82	-	5,518.82	
		1-11	1-11	공예관	4,120.0	-	4,120.0	682.40	-	682.40	675.00	-	675.00	
		1-12	1-12	천장관(이공)	14,267.0	-	14,267.0	2,346.05	-	2,346.05	10,671.90	-	10,671.90	
		1-13	1-13	이공대학 실습 동(A동)	2,326.0	-	2,326.0	394.00	-	394.00	1,182.00	-	1,182.00	
		1-14	1-14	이공대학 실습 동(B동)	180.0	-	180.0	27.00	-	27.00	27.00	-	27.00	
		1-15	1-15	이공대학 실습 동(C동)	120.0	-	120.0	18.00	-	18.00	18.00	-	18.00	
		1-16	1-16	창조관 (구 문화관광대 실습동)	2,342.0	-	2,342.0	878.00	-	878.00	2,284.49	-	2,284.49	
		1-17	1-17	지역혁신관 (문화관광대강의 동)	9,725.0	-	9,725.0	1,159.00	-	1,159.00	6,852.29	-	6,852.29	
		1-18	1-18	EM생활관	3,005.0	-	3,005.0	893.34	-	893.34	2,117.49	-	2,117.49	
		1-19	1-19	대학교회	3,256.0	-	3,256.0	772.70	-	772.70	1,194.38	-	1,194.38	
		1-20	1-20	학생회관	14,751.0	-	14,751.0	2,521.43	-	2,521.43	10,767.00	-	10,767.00	
		1-21	1-21	스타센터	23,275.0	-	23,275.0	16,168.61	-	16,168.61	24,976.01	-	24,976.01	
		1-22	1-22	국제교육관 (스타센터부지포 함)	-	-	-	531.92	-	531.92	1,032.60	-	1,032.60	
		소 계					182,456.0	-	182,456.0	48,365.42	증)24.96	48,390.38	145,306.97	증)77.56
지원 시설		2-1	2-1	체육관	8,828.0	-	8,828.0	2,589.68	-	2,589.68	2,439.95	-	2,439.95	
		2-2	2-2	수영관 (구 체육관별관)	5,215.0	-	5,215.0	1,507.89	-	1,507.89	2,286.40	-	2,286.40	
		2-3	2-3	스타드립관 (구 유인택체육 관)	3,256.0	-	3,256.0	572.76	-	572.76	572.76	-	572.76	
		2-4	2-4	믿음관 (구 영상관)	2,929.0	-	2,929.0	562.80	-	562.80	1,267.20	-	1,267.20	
		2-5	2-5	스타홀 (구 학생기숙사 B)	6,532.6	-	6,532.6	1,246.26	-	1,246.26	4,482.46	-	4,482.46	
		2-6	2-6	스타빌 (구 제2기숙사(3 동))	16,877.8	-	16,877.8	2,803.00	-	2,803.00	11,502.53	-	11,502.53	
		2-7	2-7	스타타워	14,019.0	-	14,019.0	2,777.24	-	2,777.24	19,078.81	-	19,078.81	

구 분		번호		세부시설명	부지면적(㎡)			건축규모(㎡)						비고
								건축면적			연면적			
		기정변경			당초	증/감	변경	당초	증/감	변경	당초	증/감	변경	
		2-8	2-8	유학생 전용 기숙사	3,684.9	-	3,684.9	897.25	-	897.25	2,368.54	-	2,368.54	
		2-9	2-9	노천극장	14,340.0	-	14,340.0	221.40	-	221.40	231.48	-	231.48	
		2-10	2-10	희망홀	13,956.0	-	13,956.0	3,322.00	-	3,322.00	2,175.60	-	2,175.60	
		소 계			89,638.3	-	89,638.3	16,500.28	-	16,500.28	46,405.73	-	46,405.73	
연구 시설		3-1	3-1	EM연구실습동	2,292.0	-	2,292.0	1,092.56	-	1,092.56	1,971.70	-	1,971.70	
		3-2	3-2	음식물발효실	-	-	-	30.00	-	30.00	30.00	-	30.00	
		3-3	3-3	온실	474.0	-	474.0	334.56	-	334.56	334.56	-	334.56	
		소 계			2,766.0	-	2,766.0	1,457.12	-	1,457.12	2,336.26	-	2,336.26	
부속 시설		4-1	4-1	군사교육관	3,267.0	-	3,267.0	830.58	-	830.58	2,168.73	-	2,168.73	
		4-2	4-2	야외매장	-	-	-	29.23	-	29.23	29.23	-	29.23	
		4-3	4-3	야외매장2	640.0	-	640.0	144.09	-	144.09	144.09	-	144.09	
		4-4	4-4	야외매장3	600.0	-	600.0	144.09	-	144.09	144.09	-	144.09	
		4-5	4-5	야외매장4	-	-	-	88.20	-	88.20	102.64	-	102.64	
		4-6	4-6	한지산업관 (구 탁목지 사업장)	544.0	-	544.0	379.77	-	379.77	715.83	-	715.83	
		4-7	4-7	조경창고	-	-	-	18.00	-	18.00	18.00	-	18.00	
		4-8	4-8	벤처창업관 (구 창업보육센터)	7,786.0	-	7,786.0	2,901.69	-	2,901.69	5,259.31	-	5,259.31	
		4-9	4-9	소설벤처 실습	960.0	-	960.0	280.00	-	280.00	280.00	-	280.00	
		4-10	4-10	통학버스지원 시설	338.0	-	338.0	115.21	-	115.21	115.21	-	115.21	
		4-11	4-11	통학버스 승강	100.0	-	100.0	65.35	-	65.35	65.35	-	65.35	
		4-12	4-12	공동직장어린이 집	7,170.0	-	7,170.0	1,153.66	-	1,153.66	1,153.66	-	1,153.66	
		4-13	4-13	실감기반 훈련 센터	965.0	감80.0	885.0	200.00	-	200.00	300.00	-	300.00	
		-	4-14	혁신공유대학 (실감미디어)	-	증1,630	1,630.0	-	증384.0	384.0	-	증384.0	384.0	
		-	4-15	휴게시설	-	증80.0	80.0	-	증60.0	60.0	-	증60.0	60.0	
		소 계			22,370.0	증1,630	24,000.0	6,349.87	증444.0	6,793.87	10,496.14	증444.0	10,940.14	
		기타 시설		5-1	5-1	공예관부속동	100.0	-	100.0	38.10	-	38.10	38.10	-
5-2	5-2			평안의 집	1,053.0	-	1,053.0	111.00	-	111.00	111.00	-	111.00	
5-3	5-3			경비실(정문)	336.0	-	336.0	263.22	-	263.22	95.11	-	95.11	
5-4	5-4			창고 및 화장실 동	4,332.0	-	4,332.0	1,008.83	-	1,008.83	1,120.05	-	1,120.05	
5-5-1	5-5-1			기자재창고	110.0	-	110.0	86.40	-	86.40	86.40	-	86.40	
5-5-2	5-5-2			기자재창고	237.0	-	237.0	193.50	-	193.50	193.50	-	193.50	
5-6	5-6			창고	-	-	-	43.00	-	43.00	43.00	-	43.00	
5-7	5-7			변전실	1,264.0	-	1,264.0	268.05	-	268.05	396.75	-	396.75	
5-8	5-8			펌프실(급수실)	100.0	-	100.0	54.12	-	54.12	54.12	-	54.12	
5-9	5-9			전기실(진리관 인근)	-	-	-	100.00	-	100.00	100.00	-	100.00	
5-10	5-10			전기실(공학1관 인근)	-	-	-	100.00	-	100.00	100.00	-	100.00	
5-11	5-11			전기실(천관 인근)	-	-	-	96.39	-	96.39	96.39	-	96.39	
5-12	5-12			전기실(예술관 인근)	-	-	-	90.42	-	90.42	90.42	-	90.42	
5-13	5-13			전기실(희망홀 인근)	-	-	-	39.69	-	39.69	39.69	-	39.69	
5-14	5-14			전기실(체육관 인근)	-	-	-	33.39	-	33.39	33.39	-	33.39	
소 계				7,532.0	-	7,532.0	2,526.11	-	2,526.11	2,597.92	-	2,597.92		

구 분		번호		세 부 시 설 명	부 지 면 적 (㎡)			건 축 규 모 (㎡)						비 고
								건 축 면 적			연 면 적			
		기 정 변 경			당 초	증 / 감	변 경	당 초	증 / 감	변 경	당 초	증 / 감	변 경	
		계			304,762.3	증1,630	306,392.3	75,198.80	증1468.96	75,667.76	207,143.02	증1521.56	207,664.58	
운 동 시 설 지	6-1	6-1	골프연습장	4,790	-	4,790.0	320.92	-	320.92	517.00	-	517.00		
	6-2	6-2	심판휴게실	-	-	-	130.92	-	130.92	167.72	-	167.72		
	6-3	6-3	테니스장 대기실	-	-	-	150.00	-	150.00	150.00	-	150.00		
	6-4	6-4	운동시설창고	-	-	-	18.00	-	18.00	18.00	-	18.00		
	6-5	6-5	골프연습장 휴게음식점	-	-	-	73.35	-	73.35	73.35	-	73.35		
	체육장			57,806.0	-	57,806.0	0.00	-	0.00	0.00	-	0.00		
	소 계			62,596	-	62,596.0	693.19	-	693.19	926.07	-	926.07		
교 통 시 설 지	도로			73,450	-	73,450.0	-	-	-	-	-	-		
	소 계			73,450	-	73,450.0	0.00	0.00	0.00	0.00	0.00	0.00		
기 타 시 설 지	7-1	7-1	유물발굴실습장	267	-	267.0	27.00	-	27.00	27.00	-	27.00		
	7-2	7-2	유물발굴실습장	268	-	268.0	27.00	-	27.00	27.00	-	27.00		
	7-3	7-3	유물발굴실습장 부속물	230	-	230.0	125.00	-	97.93	125.00	-	97.93		
	7-4	7-4	파쇄기보관고	1,000	-	1,000.0	80.00	-	80.00	80.00	-	80.00		
	7-5	7-5	폐시약보관창고	-	-	-	10.00	-	10.00	10.00	-	10.00		
	-	-	조경휴게지1	4,000	-	4,000	-	-	-	-	-	-		
	-	-	조경휴게지2	5,500	-	5,500	-	-	-	-	-	-		
	-	-	조경휴게지3	9,380	-	9,380	-	-	-	-	-	-		
	-	7-6	조경휴게지4-초막셋	14,914.0	-	14,914.0	27.07	-	27.07	27.07	-	27.07		
	유보지			3,450	감1,630	1,820	-	-	-	-	-	-		
	소 계			39,009.0	감1,630	37,379.0	269.00	-	269.00	269.00	-	269.00		
녹 지	녹지			111,270.0	-	111,270.0	-	-	-	-	-	-		
	소 계			111,270.0	-	111,270.0	0.00	0.00	0.00	0.00	0.00	0.00		

※ 변경사유

- 교육연구시설지(진리관, 자유관, 혁신공유대학, 휴게시설) 증축

5. 전주 도시계획시설 세부시설 조성계획 변경 결정 도면 : 실음생략

전주시 고시 제2021-114호

전주시 국가하천(만경강·전주천) 낚시·야영·취사 금지지역 지정 고시

전라북도 전주시 국가하천(만경강·전주천)에 대하여 「하천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낚시·야영·취사 금지지역”으로 지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7월 9일

전 주 시 장

1. 지정목적

- 국가하천(만경강·전주천)의 하천시설물의 보호 및 낚시객의 쓰레기 투기, 취사·야영·낚시 행위로 인한 하천오염을 예방하고 깨끗한 수질과 친환경적인 생태하천으로 가꾸어 깨끗한 하천으로 보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낚시 등의 금지지역 하천 및 위치

하천명	등 급	위 치	연 장
만경강	국가하천	회포대교 ~ 화진보 (좌안) (덕진구 전미동1가 173-1 ~ 덕진구 화전동 969)	6.5km
전주천	국가하천	삼천 합류부 ~ 만경강 합류부 (좌우안) (완산구 서신동 737-1 ~ 덕진구 고량동 1150)	7.0km

나. 낚시 등 금지기간 및 금지행위

1) 금지기간 : 연중

2) 금지행위

- 야영행위 또는 취사행위
- 떡밥·어분 등 미끼를 사용하여 하천을 오염시키는 행위
- 그 밖의 하천 오염행위, 하천시설물 훼손 행위 등

※ 적용예외 : 학술조사·어종조사 등 부득이한 경우 및 「내수면어업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내수면 어업 면허를 받은 자의 어업행위

3. 금지행위 위반자에 대한 처분

근거법령	처분내용
「하천법」 제46조 제6호	「하천법」 제9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7조의 규정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 1차 위반 100만원 2) 2차 위반 200만원 3) 3차 위반 300만원

4. 금지지역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의 처리방법

- 금지지역에서의 쓰레기는 이용자 스스로 수거하여야 하며, 방치할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68조의 규정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

5. 계도기간 및 단속 개시일

- 계도기간 : 2021. 07. 05. ~ 2021. 08. 31.
- 단속 개시일 : 2021. 09. 01. 이후
- 단속대상 : 금지지역 내 금지행위 위반자

6. 기타 문의사항 : 전라북도 전주시 걷고싶은도시과 하천관리팀(063-281-2876)

붙임 낚시 등 금지지역 지정 위치도 1부. 끝.

□ 위 치 도



군산시 고시 제2021-108호

군산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

군산시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군산세무서(기숙사))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제88조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군 산 시 장

2021년 7월 9일

1. 사업시행지 : 군산시 미장동 525번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가. 종 류 :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군산세무서(기숙사))사업
 - 나. 명 칭 : 군산세무서 기숙사 증축공사
3. 금회 사업의 면적 및 규모

구분	층별	당초		변경		비고
		면적(㎡)	용도	면적(㎡)	용도	
주1동 (본관)	지하1층	1,199.12	업무시설	1,199.12	업무시설	기정
	1층	1,286.50	업무시설	1,286.50	업무시설	
	2층	1,119.46	업무시설	1,119.46	업무시설	
	3층	742.28	업무시설	742.28	업무시설	
	4층	842.46	업무시설	842.46	업무시설	
부1동 (기숙사)	1층	-	-	123.09	업무시설	신축
	2층	-	-	105.86	업무시설	
	3층	-	-	84.09	업무시설	
합계		5,189.82		5,502.86		

4. 사업시행자
 - 가. 주 소 : 전라북도 군산시 미장동 525
 - 나. 성 명 : 군산세무서장
5.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고시일 ~ 2022. 06. 30.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위치	지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자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내용	
미장동	525	대	7,029.4	7,029.4	국세청	-	-	-	-	

7.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8. 관계도서 : 게재실임 생략

군산시 고시 제2021-109호

군산 도시계획시설(주차장)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군산시 옥산면 옥산리 681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주차장:제119호)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제8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군 산 시 장
2021년 7월 9일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군산시 옥산면 옥산리 681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가. 종 류 : 도시계획시설(주차장)사업
 - 나. 명 칭 : 옥산면 옥산리 청암산 주차장(119호) 조성사업
3. 사업의 규모 및 면적 : 주차장 조성 3,790㎡
4.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가. 사업시행자 주소 : 군산시 시청로 17(조촌동, 군산시청)
 - 나. 사업시행자 성명 : 군산시장(환경정책과)
5.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고시일 ~ 2021. 12. 31.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 붙임참고
7.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실음생략
8. 관계도서 : 실음생략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연번	토지소재지				지목	공부 면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이해관계인		비고
	시도	읍면동	리	지번				성명	주 소	성명	주 소	
1	군산	옥산	옥산	681	답	4,262	2,074	군산시	군산시 시청로 17	-	-	
2	군산	옥산	옥산	682	전	635	155	군산시	군산시 시청로 17	-	-	
3	군산	옥산	옥산	683	답	2,371	1,278	군산시	군산시 시청로 17	-	-	
4	군산	옥산	옥산	683-1	잡	743	283	군산시	군산시 시청로 17			
계	4필지					8,011	3,790					

군산시 공고 제2021-1373호

군산 페이퍼코리아 공장부지 지구단위계획구역 1단계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전 열람공고

군산시 고시 제2015-111호(2015.8.21.) 및 제2016-66호(2016.5.27.), 제2017-76호(2017.6.16.), 제2018-15호(2018.2.2.), 제2018-43호(2018.3.30.), 제2018-126호(2018.10.26.), 제2019-29호(2019.3.22.), 제2020-39호(2020.03.06.)와 관련하여 우리시로부터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시행중인 군산시 조촌동 2-6번지 일원 “군산 페이퍼코리아 공장부지 지구단위계획구역 1단계 도시계획시설(도로, 녹지, 광장) 조성공사”와 관련하여시행중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 변경인가 신청이 있어 변경인가 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 산 시 장
2021년 7월 9일

※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5일간 / 열람장소 : 군산시청 도시계획과

1. 사업시행지의 위치(변경없음) : 군산시 조촌동 2-6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가. 종 류 : 군산 도시계획시설(도로, 녹지, 광장) 사업
 - 나. 명 칭 : 군산 페이퍼코리아 공장부지 지구단위계획구역 1단계 도시계획시설
(도로, 녹지, 광장) 조성공사
3. 사업의 면적 및 규모(변경) : 69,548㎡ → **68,769.5㎡**
 - 가. 도 로(12개 노선)(변경) : 51,048㎡ → **50,305.3㎡**

구 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결정	대로	1	4	35~ 41	주간선 도로	6,314 (164)	조촌동 대1-1	광2-2 유원지 구역계	일반 도로	-	건 고228 (‘86.5.23)	-
	시행	대로	1	4	35~ 41	주간선 도로	6,314 (164)	조촌동 대1-1	광2-2 유원지 구역계	일 반 도로	-	-	-

구 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결정	대로	2	4	30~33	보조간선도로	7,790 (249)	경암동 3호광장	여방리 10호광장	일반 도로	6광장	건고228 (’86.5.23)	-
	시행	대로	2	4	30~33	보조간선도로	7,790 (249)	경암동 3호광장	여방리 10호광장	일반 도로	6광장	-	-
기정	결정	대로	3	6	25~31	보조간선도로	2,915 (894)	경장동 대1-3	구암동 대2-4	일반 도로	6토지 구획	건고525 (’67.7.25)	-
	시행	대로	3	6	25~31	보조간선도로	2,915 (894)	경장동 대1-3	구암동 대2-4	일반 도로	6토지 구획	-	-
기정	결정	대로	3	47	25~31	보조간선도로	714 (714)	대로3-6	대로2-4	일반 도로	-	군산고2014-141 (2014.12.26)	-
	시행	대로	3	47	25~31	보조간선도로	714 (714)	대로3-6	대로2-4	일반 도로	-	-	-
기정	결정	대로	3	48	25~31	보조간선도로	811 (483)	중로2-65	조촌동 664번지	일반 도로	-	군산고2014-141 (2014.12.26)	-
	시행	대로	3	48	25~31	보조간선도로	811 (483)	중로2-65	조촌동 664번지	일반 도로	-	-	-
기정	결정	중로	2	142	15	집산도로	290 (170)	중로1-120	대로3-47	일반 도로	-	군산고2014-141 (2014.12.26)	-
	시행	중로	2	142	15	집산도로	290 (170)	중로1-120	대로3-47	일반 도로	-	-	-
기정	결정	중로	2	143	15~21.5	집산도로	848 (311)	중로2-65	대로1-4	일반 도로	-	군산고2014-141 (2014.12.26)	-
	시행	중로	2	143	15~21.5	집산도로	848 (311)	중로2-65	대로1-4	일반 도로	-	-	-
기정	결정	중로	2	147	15	집산도로	92 (92)	대로3-47	중로2-148	일반 도로	-	군산고2014-141 (2014.12.26)	-
	시행	중로	2	147	15	집산도로	92 (92)	대로3-47	중로2-148	일반 도로	-	-	-
기정	결정	중로	2	148	18.5	집산도로	128 (128)	대로3-6	중로2-143	일반 도로	-	군산고2014-141 (2014.12.26)	-
	시행	중로	2	148	18.5	집산도로	128 (128)	대로3-6	중로2-143	일반 도로	-	-	-
기정	결정	중로	3	74	12	국지도로	49 (49)	중로2-142	문화시설 용지	일반 도로	-	군산고2014-141 (2014.12.26)	-
	시행	중로	3	74	12	국지도로	49 (49)	중로2-142	문화시설 용지	일반 도로	-	-	-
변경	결정	-	-	-	-	-	-	-	-	-	-	-	폐지
	시행	-	-	-	-	-	-	-	-	-	-	-	폐지
기정	결정	중로	3	75	12	국지도로	231 (68)	중로2-142	중로 2-142	일반 도로	-	군산고2014-141 (2014.12.26)	-
	시행	중로	3	75	12	국지도로	231 (68)	중로2-142	중로 2-142	일반 도로	-	-	-
기정	결정	소로	3	773	7	국지도로	40 (40)	주차장90	중로 2-147	일반 도로	-	군산고2014-141 (2014.12.26)	-
	시행	소로	3	773	7	국지도로	40 (40)	주차장90	중로 2-147	일반 도로	-	-	-

나. 녹지(6개소)(변경) : 16,254㎡ → 16,225.5㎡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 고
기정	결정	녹지	완충녹지108	조촌동(대2-4번)	3,867	군산고2014-141 (2014.12.26)	-
	시행	녹지	완충녹지108	조촌동(대2-4번)	3,867	-	-
변경	결정	녹지	완충녹지108	조촌동(대2-4번)	3,846.7	군산고2014-141 (2014.12.26)	-
	시행	녹지	완충녹지108	조촌동(대2-4번)	3,846.7	-	-
기정	결정	녹지	완충녹지113	조촌동(대1-4번)	1,473	군산고2014-141 (2014.12.26)	-
	시행	녹지	완충녹지113	조촌동(대1-4번)	1,473	-	-
변경	결정	녹지	완충녹지113	조촌동(대1-4번)	1,472.7	군산고2014-141 (2014.12.26)	-
	시행	녹지	완충녹지113	조촌동(대1-4번)	1,472.7	-	-
기정	결정	녹지	완충녹지114	구암천변	3,224	군산고2014-141 (2014.12.26)	-
	시행	녹지	완충녹지114	구암천변	3,224	-	-
변경	결정	녹지	완충녹지114	구암천변	3,223.5	군산고2014-141 (2014.12.26)	-
	시행	녹지	완충녹지114	구암천변	3,223.5	-	-
기정	결정	녹지	완충녹지115	조촌동 450-15대	2,390	군산고2014-141 (2014.12.26)	-
	시행	녹지	완충녹지115	조촌동 450-15대	2,390	-	-
변경	결정	녹지	완충녹지115	조촌동 450-15대	2,393.3	군산고2014-141 (2014.12.26)	-
	시행	녹지	완충녹지115	조촌동 450-15대	2,393.3	-	-
기정	결정	녹지	완충녹지116	조촌동(중2-143번)	771	군산고2014-141 (2014.12.26)	-
	시행	녹지	완충녹지116	조촌동(중2-143번)	771	-	-
변경	결정	녹지	완충녹지116	조촌동(중2-143번)	773	군산고2014-141 (2014.12.26)	-
	시행	녹지	완충녹지116	조촌동(중2-143번)	773	-	-
기정	결정	녹지	연결녹지117	조촌동(대3-47번)	4,529	군산고2014-141 (2014.12.26)	-
	시행	녹지	연결녹지117	조촌동(대3-47번)	4,529	-	-
변경	결정	녹지	연결녹지117	조촌동(대3-47번)	4,516.3	군산고2014-141 (2014.12.26)	-
	시행	녹지	연결녹지117	조촌동(대3-47번)	4,516.3	-	-

다. 광 장(1개소)(변경) : 2,246㎡ → 2,238.7㎡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결 정	광 장	광 장32	조촌동474-3	2,246	군 산고2014-141 (2014.12.26)	-
	시 행	광 장	광 장32	조촌동474-3	2,246	-	-
변 경	결 정	광 장	광 장32	조촌동474-3	2,238.7	군 산고2014-141 (2014.12.26)	-
	시 행	광 장	광 장32	조촌동474-3	2,238.7	-	-

4.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변경)

가. 사업시행자 주소(당초) : 군산시 외항로 1245(비응도동), 구암로 50(조촌동)

가. 사업시행자 주소(변경) : 군산시 외항로 1245(비응도동)

나. 사업시행자 성명 : 페이퍼코리아(주) 대표이사 권육상, (주)디오션시티퍼스트
대표이사 권육상, (주)디오션시티투 대표이사 권육상

5. 사업기간(변경) : 학교 통학로 개설을 위한 1단계 사업기간 변경

- (당초) 1차분 : 2015. 08. 21. ~ 2018. 03. 31.

2차분 : 2015. 08. 21. ~ 2018. 11. 16.

3차분 : 2015. 08. 21. ~ 2020. 04. 30.

4차분 : 2015. 08. 21. ~ 2021. 07. 31.

- (변경) 1차분 : 2015. 08. 21. ~ 2018. 03. 31.

2차분 : 2015. 08. 21. ~ 2018. 11. 16.

3차분 : 2015. 08. 21. ~ 2020. 04. 30.

4차분 : **2015. 08. 21. ~ 2022. 03. 31.**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변경없음) : 별도 첨부

7.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실음 생략

8. 관계도서(변경없음) : 실음생략

9. 기타 : 관계도서는 열람장소에 비치하고 있으니 열람기간내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열람장소에 비치된 양식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도시계획과(T.063-454-35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불입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자 조서(변경)

가. 교통시설

(1) 도로

1) 대로 1-4

구분	일련 번호	토 지 소 재 지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토 지 소 유 자		권 리 관 계 인			비고
		동·별	지번	지목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 리 관 계	
기정	1	조촌동	471-14	구	1,807	539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기정	2	조촌동	450-20	대	866	95	코리아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해성2빌딩)				
		조촌동	450-14	대	475	22	코리아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해성2빌딩)				
		조촌동	465-1	대	34	32	코리아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해성2빌딩)				
		조촌동	465-5	구	240	37	군산시					
		조촌동	465-18	구	21	2	페이퍼코리아(주)	전라북도 군산 구암로50(조촌동)				
		조촌동	711-20	도	20	20	페이퍼코리아(주)	전라북도 군산 구암로50(조촌동)				
		조촌동	716-4	구	55	19	페이퍼코리아(주)	전라북도 군산 구암로50(조촌동)				
		조촌동	3953	도	3,710.1	203.1	군산시	전라북도 군산 시청로 17				
기정	3	조촌동	711-9	도	113	14	국토교통부					
변경		조촌동	711-22	도	14	14	군산시	전라북도 군산 시청로 17				
기정	4	조촌동	716-2	구	111	14	국토교통부					
변경		조촌동	716-6	구	14	14	군산시	전라북도 군산 시청로 17				
기정	합 계				3,742	794						
변경					5,545.1	770.1						

2) 대로 2-4

구분	일련 번호	토 지 소 재 지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토 지 소 유 자		권 리 관 계 인			비고
		동·별	지번	지목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 리 관 계	
기정	1	구암동	320-4	장	209	81	코리아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해성2빌딩)				
		구암동	321-8	대	143	33	페이퍼코리아(주)	전라북도 군산 구암로50(조촌동)				
변경		구암동	618	도	116.7	116.7	군산시	전라북도 군산 시청로 17				
기정	2	조촌동	2-6	장	36837	111	코리아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해성2빌딩)				
변경		조촌동	3945	도	1127	1127	군산시	전라북도 군산 시청로 17				
기정	합 계				37,189	225						
변경					229.4	229.4						

3) 대로 3-6

구분	일련 번호	토 지 소 재 지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토 지 소 유 자		권 리 관 계 인			비고
		동·별	지번	지목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 리 관 계	
기정	1	조촌동	2-64	장	19	10	코리아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해성2빌딩)				
		조촌동	2-65	장	12	11	코리아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해성2빌딩)				
		조촌동	41-31	장	379	379	코리아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해성2빌딩)				
		조촌동	41-29	장	124	124	코리아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해성2빌딩)				
		조촌동	447-3	구	126	92	코리아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해성2빌딩)				
		조촌동	465-1	대	34	2	코리아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해성2빌딩)				
		조촌동	479-2	구	907	906	코리아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해성2빌딩)				
		조촌동	479-14	구	15	12	코리아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해성2빌딩)				
		조촌동	479-15	구	4	4	코리아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해성2빌딩)				
		조촌동	479-16	구	18	18	코리아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해성2빌딩)				
		조촌동	479-17	구	18	18	코리아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해성2빌딩)				
		조촌동	479-18	구	15	15	코리아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해성2빌딩)				
		조촌동	479-19	구	11	11	코리아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해성2빌딩)				
		조촌동	479-20	구	2	2	코리아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해성2빌딩)				
		조촌동	479-21	구	35	35	코리아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해성2빌딩)				
		조촌동	479-22	구	2	2	코리아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해성2빌딩)				
		조촌동	479-23	구	11	11	코리아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해성2빌딩)				
		조촌동	564-1	구	62	29	코리아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해성2빌딩)				
		조촌동	568-4	구	51	51	코리아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해성2빌딩)				
		조촌동	2-6	장	36,837	10	코리아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해성2빌딩)				
		조촌동	2-74	장	33	32	코리아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해성2빌딩)				
		조촌동	2-75	장	20	20	코리아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해성2빌딩)				

구분	일련 번호	토 지 소 재 지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토 지 소 유 자		권 리 관 계 인			비고
		동·별	지번	지목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 리 관 계	
		조촌동	439-4	도	1,049	695	코리아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해성2빌딩)				
		조촌동	447-10	구	85	85	페이퍼코리아(주)					
		조촌동	447-9	구	16	6	페이퍼코리아(주)					
		조촌동	450-29	구	199	199	페이퍼코리아(주)					
		조촌동	450-25	구	70	10	페이퍼코리아(주)					
		조촌동	465-5	구	240	57	군산시					
		조촌동	465-18	구	21	19	페이퍼코리아(주)					
		조촌동	472-4	잡	24	12	군산시					
		조촌동	472-10	잡	35	35	페이퍼코리아(주)					
		조촌동	473-2	도	225	63	군산시					
		조촌동	473-6	도	357	357	페이퍼코리아(주)					
		조촌동	473-5	도	188	5	군산시					
		조촌동	474-3	구	75	75	페이퍼코리아(주)					
		조촌동	474-6	구	64	5	페이퍼코리아(주)					
		조촌동	479-3	구	273	97	코리아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해성2빌딩)				
		조촌동	711-21	도	22	22	페이퍼코리아(주)					
		조촌동	716-4	구	55	36	페이퍼코리아(주)					
변경		조촌동	3953	도	3,710.1	3,507	군산시	전라북도 군산 시청로 17				
기정	2	조촌동	711-19	도	73	9	국토교통부					
변경		조촌동	711-23	도	9	9	군산시	전라북도 군산 시청로 17				
기정	3	조촌동	716-5	구	82	10	국토교통부					
변경		조촌동	716-7	구	10	10	군산시	전라북도 군산 시청로 17				
기정		합 계			41,888	3,591						
변경					3,729.1	3,526						

4) 대로 3-47

구분	일련 번호	토 지 소 재 지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토 지 소 유 자		권 리 관 계 인			비고
		동·별	지번	지목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 리 관 계	
기정	1	구암동	320-4	장	209	73	코리아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해성2빌딩)				
변경		구암동	321-8	대	143	110	페이퍼코리아(주)					
		구암동	619	도	177.7	177.7	군산시	전라북도 군산 시청로 17				
기정		조촌동	2-34	장	817	817	코리아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해성2빌딩)				
기정		조촌동	2-77	장	2	2	코리아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해성2빌딩)				
기정		조촌동	2-6	장	36,837	17,422	코리아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해성2빌딩)				
기정	2	조촌동	2-74	장	233	1	코리아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해성2빌딩)				
기정		조촌동	479-3	구	273	134	코리아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해성2빌딩)				
기정		조촌동	479-14	구	15	3	코리아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해성2빌딩)				
변경		조촌동	3946	도	18,333.3	18,333.3	군산시	전라북도 군산 시청로 17				
기정		합 계			38,529	18,562						
변경					18,571.0	18,571.0						

5) 대로 3-48

구분	일련 번호	토 지 소 재 지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토 지 소 유 자		권 리 관 계 인			비고
		동·별	지번	지목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 리 관 계	
기정	1	경암동	60-22	도	1	1	페아파파(주)					
변경		경암동	711	도	13	13	군산시	전라북도 군산 시청로 17				
기정	2	조촌동	664-9	잡	1,531	1,531	페아파파(주)	전라북도 군산시 구암로50(조촌동)				
		조촌동	73-4	도	6	6	페아파파(주)					
		조촌동	73-4	구	33	33	페아파파(주)					
		조촌동	388	도	1,532.7	1,532.7	군산시	전라북도 군산 시청로 17				
기정	3	조촌동	47-10	구	487	487	한양아파트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기정	4	조촌동	2-35	장	2,607	474	코아신택(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해성2빌딩)				
변경		조촌동	2-87	장	2,444	368	군산시	전라북도 군산 시청로 17				
변경	5	조촌동	397	도	1,061	1,061	군산시	전라북도 군산 시청로 17				
기정	6	조촌동	2-6	장	3,687	486	코아신택(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해성2빌딩)				
		조촌동	651-4	대	417	417	코아신택(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해성2빌딩)				
		조촌동	651-13	구	89	89	한양아파트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조촌동	659	대	2,355	1,132	코아신택(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해성2빌딩)				
		조촌동	661-2	구	20	20	페아파파(주)	전라북도 군산시 구암로50(조촌동)				
변경		조촌동	389	도	6,856	6,856	군산시	전라북도 군산 시청로 17				
기정	합 계				70,082	13,486						
변경					33,363.7	13,620.7						

6) 중로 2-142

구분	일련 번호	토 지 소 재 지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토 지 소 유 자		권 리 관 계 인			비고
		동·별	지번	지목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 리 관 계	
기정	1	조촌동	2-33	장	85,561	1,594	코리아신택(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해성2빌딩)				
변경		조촌동	2-33	장	42,177	1,594	코리아신택(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해성2빌딩)				
기정	2	조촌동	2-73	장	5,343	991	코리아신택(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해성2빌딩)				
변경		조촌동	2-101	장	1,820	991	코리아신택(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해성2빌딩)				
기정	합 계				90,904	2,585						
변경					43,997	2,585						

7) 종로 2-143

구분	일련 번호	토 지 소 재 지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토 지 소 유 자		권 리 관 계 인			비고
		동·별	지번	지목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 리 관 계	
기정	1	조촌동	2-6	장	36,837	3,260	코리아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해성2빌딩)				
기정		조촌동	2-76	장	570	170	주식회사하나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을지로2가)				
기정		조촌동	2-10	장	17	17	코리아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해성2빌딩)				
기정		조촌동	450-13	대	1,303	1,303	코리아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해성2빌딩)				
기정		조촌동	450-32	대	309	309	주식회사하나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을지로2가)				
기정		조촌동	450-2	대	1,722	628	코리아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해성2빌딩)				
기정		조촌동	450-31	대	144	144	주식회사하나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을지로2가)				
기정		조촌동	450-20	대	866	1	코리아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해성2빌딩)				
변경		조촌동	3949	도	5,613	5,613	군산시	전라북도 군산 시청로 17				
기정	2	조촌동	471-13	구	445	445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기정	합 계				42,213	6,277						
변경					6,058	6,058						

8) 종로 2-147

구분	일련 번호	토 지 소 재 지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토 지 소 유 자		권 리 관 계 인			비고
		동·별	지번	지목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 리 관 계	
기정	1	조촌동	2-6	장	36,837	1,449	코리아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해성2빌딩)				
변경		조촌동	3951	도	1,448.8	1,448.8	군산시	전라북도 군산 시청로 17				
기정	합 계				36,837	1,449						
변경					1,448.8	1,448.8						

9) 종로 2-148

구분	일련 번호	토 지 소 재 지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토 지 소 유 자		권 리 관 계 인			비고
		동·별	지번	지목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 리 관 계	
기정	1	조촌동	2-6	장	36,837	1,860	코리아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해성2빌딩)				
기정		조촌동	2-76	장	570	400	주식회사하나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을지로2가)				
기정		조촌동	439-4	구	1,049	75	코리아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해성2빌딩)				
변경		조촌동	3950	도	2,364	2,364	군산시	전라북도 군산 시청로 17				
기정	합 계				38,456	2,335						
변경					2,364	2,364						

10) 중로 3-74(폐지)

구분	일련 번호	토 지 소 재 지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토 지 소 유 자		권 리 관 계 인			비고
		동·별	지번	지목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 리 관 계	
폐지	1	조촌동	2-33	장	85,561	602	코리아신타(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해성2빌딩)				
폐지	합 계				85,561	602						

11) 중로 3-75

구분	일련 번호	토 지 소 재 지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토 지 소 유 자		권 리 관 계 인			비고
		동·별	지번	지목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 리 관 계	
기정	1	조촌동	2-33	장	85,561	9	코리아신타(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해성2빌딩)				
변경		조촌동	2-33	장	42,177	9	코리아신타(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해성2빌딩)				
기정	2	조촌동	2-73	장	5,343	829	코리아신타(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해성2빌딩)				
변경		조촌동	2-101	장	1,820	829	코리아신타(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해성2빌딩)				
기정	합 계				57,284	838						
변경					43,997	838						

12) 소로 3-773

구분	일련 번호	토 지 소 재 지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토 지 소 유 자		권 리 관 계 인			비고
		동·별	지번	지목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 리 관 계	
기정	1	조촌동	2-6	장	36,837	294	코리아신타(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해성2빌딩)				
변경		조촌동	3952	도	294.3	294.3	군산시	전라북도 군산 시청로 17				
기정	합 계				136,947	294						
변경					294.3	294.3						

나. 공간시설

(1) 녹지

1) 완충녹지108

구분	일련 번호	토 지 소 재 지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토 지 소 유 자		권 리 관 계 인			비고
		동·별	지번	지목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 리 관 계	
기정	1	구암동	321-14	대	47	47	페이퍼코리아(주)					
기정		구암동	512-30	도	13	13	페이퍼코리아(주)					
기정		구암동	513-1	장	623	623	코리아신타(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해성2빌딩)				
기정		구암동	513-5	대	865	865	코리아신타(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해성2빌딩)				
기정		구암동	516-1	대	266	266	코리아신타(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해성2빌딩)				
기정		구암동	607-2	구	54	54	페이퍼코리아(주)					
기정		구암동	608-2	도	32	32	페이퍼코리아(주)					
변경		구암동	617	공	1,881.5	1,881.5	군산시	전라북도 군산 시청로 17				
기정	2	조촌동	2-12	장	784	784	코리아신타(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해성2빌딩)				
변경		조촌동	3944	공	783.4	783.4	군산시	전라북도 군산 시청로 17				
기정	3	조촌동	649-2	대	358	358	코리아신타(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해성2빌딩)				
기정		조촌동	651-11	구	103	103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기정		조촌동	659	대	2,655	113	코리아신타(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해성2빌딩)				
기정		조촌동	660-10	대	441	333	코리아신타(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해성2빌딩)				
기정		조촌동	660-8	철	67	67	코리아신타(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해성2빌딩)				
기정		조촌동	661-5	철	79	79	코리아신타(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해성2빌딩)				
기정		조촌동	712-1	도	26	26	페이퍼코리아(주)					
기정		조촌동	732-6	구	104	104	페이퍼코리아(주)					
변경		조촌동	3960	공	1,181.8	1,181.8	군산시	전라북도 군산 시청로 17				
기정	합 계				6,517	3,867						
변경					3,846.7	3,846.7						

2) 완충녹지113

구분	일련 번호	토 지 소 재 지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토 지 소 유 자		권 리 관 계 인			비고
		동·별	지번	지목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 리 관 계	
기정	1	조촌동	450-20	대	866	770	코리아신타(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해성2빌딩)				
기정		조촌동	450-14	대	475	147	코리아신타(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해성2빌딩)				
기정		조촌동	711-17	구	14	14	페이퍼코리아(주)					
변경		조촌동	3955	공	930.7	930.7	군산시	전라북도 군산 시청로 17				
기정	2	조촌동	471-15	구	542	542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기정	합 계				1,897	1,473						
변경					1,472.7	1,472.7						

3) 완충녹지114

구분	일련 번호	토 지 소 재 지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토 지 소 유 자		권 리 관 계 인			비고
		동·별	지번	지목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 리 관 계	
기정	1	조촌동	450-27	대	1,006	1,006	군산시					
기정		조촌동	450-16	대	888	452	코리아신타(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해성2빌딩)				
기정		조촌동	471-12	구	111	111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기정		조촌동	659	대	2,655	1,410	코리아신타(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해성2빌딩)				
기정		조촌동	659-1	대	354	245	코리아신타(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해성2빌딩)				
변경		조촌동	3957	공	3,223.5	3,223.5	군산시	전라북도 군산 시청로 17				
기정	합 계				4,660	3,224						
변경					3,223.5	3,223.5						

4) 완충녹지115

구분	일련 번호	토 지 소 재 지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토 지 소 유 자		권 리 관 계 인			비고
		동·별	지번	지목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 리 관 계	
기정	1	조촌동	2-6	장	36,837	516	코리아신타(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해성2빌딩)				
기정		조촌동	450-26	대	344	344	군산시					
기정		조촌동	450-16	대	1,077	436	코리아신타(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해성2빌딩)				
기정		조촌동	450-2	대	1,722	1,094	코리아신타(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해성2빌딩)				
변경		조촌동	3956	공	2,393.3	2,393.3	군산시	전라북도 군산 시청로 17				
기정	합 계				39,980	2,390						
변경					2,393.3	2,393.3						

5) 완충녹지116

구분	일련 번호	토 지 소 재 지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토 지 소 유 자		권 리 관 계 인			비고
		동·별	지번	지목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 리 관 계	
기정	1	조촌동	2-6	장	36,837	570	코리아신타(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해성2빌딩)				
기정		조촌동	2-9	장	201	201	코리아신타(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해성2빌딩)				
변경		조촌동	3948	공	5,289.3	773	군산시	전라북도 군산 시청로 17				
기정	합 계				37,038	771						
변경					5,289.3	773						

6) 연결녹지117

구분	일련 번호	토 지 소 재 지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토 지 소 유 자		권 리 관 계 인			비고
		동·별	지번	지목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 리 관 계	
기정	1	조촌동	2-6	장	36,837	4,529	코리아신타(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해성2빌딩)				
변경		조촌동	3948	공	5,289.3	4,516.3	군산시	전라북도 군산 시청로 17				
기정	합 계				36,837	4,529						
변경					5,289.3	4,516.3						

(2) 광장

1) 광장32

구분	일련 번호	토 지 소 재 지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토 지 소 유 자		권 리 관 계 인			비고
		동·별	지번	지목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 리 관 계	
기정	1	조촌동	2-6	장	36,837	495	코리아신타(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해성2빌딩)				
기정		조촌동	439-4	구	1,049	34	코리아신타(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해성2빌딩)				
기정		조촌동	447-2	전	23	23	페이퍼코리아(주)					
기정		조촌동	447-3	구	126	34	코리아신타(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해성2빌딩)				
기정		조촌동	447-9	구	16	10	페이퍼코리아(주)					
기정		조촌동	450-14	대	475	306	코리아신타(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해성2빌딩)				
기정		조촌동	450-19	대	308	308	코리아신타(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해성2빌딩)				

구분	일련 번호	토 지 소 재 지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토 지 소 유 자		권 리 관 계 인			비고
		동·별	지번	지목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 리 관 계	
기정		조촌동	450-22	대	133	133	코리아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해성2빌딩)				
기정		조촌동	450-25	구	70	60	페이퍼코리아(주)					
기정		조촌동	450-5	구	76	76	페이퍼코리아(주)					
기정		조촌동	450-6	대	159	159	코리아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해성2빌딩)				
기정		조촌동	472-9	잡	30	30	페이퍼코리아(주)					
기정		조촌동	472-7	구	23	23	페이퍼코리아(주)					
기정		조촌동	472-8	잡	40	40	페이퍼코리아(주)					
기정		조촌동	473-5	도	188	183	페이퍼코리아(주)					
기정		조촌동	474-5	대	175	175	코리아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해성2빌딩)				
기정		조촌동	474-6	구	64	59	페이퍼코리아(주)					
기정		조촌동	711-18	도	58	58	페이퍼코리아(주)					
기정		조촌동	716-3	구	40	40	페이퍼코리아(주)					
변경		조촌동	3954	공	2,238.7	2,238.7	군산시	전라북도 군산 시청로 17				
기정		합 계			39,890	2,246						
변경					2,238.7	2,238.7						

군산시 공고 제2021-1377호

군산 페이퍼코리아 공장부지 지구단위계획구역 2단계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전 열람공고

군산시 고시 제2018-69(2018.06.01.)호로 인가된 “군산시 조촌동 2-26번지 일원 군산 페이퍼코리아 공장부지 지구단위계획구역 2단계 도시계획시설(도로, 주차장, 녹지, 공공공지)사업”에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 변경인가 신청이 있어 변경인가 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 산 시 장

2021년 7월 9일

※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5일간 / 열람장소 : 군산시청 도시계획과

1. 사업시행지의 위치(변경없음) : 군산시 조촌동 2-26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가. 종 류 : 군산 도시계획시설(도로, 주차장, 녹지, 공공공지) 사업
 - 나. 명 칭 : 군산 페이퍼코리아 공장부지 지구단위계획구역 2단계 도시계획시설
(도로, 주차장, 녹지, 공공공지) 조성공사
3. 사업의 면적 및 규모(변경) : 당초 65,404m² ⇒ 변경 65,379.5m²
 - 가. 도 로(19개 노선) : 당초 47,877m² ⇒ 47,851.8m²

구 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 별	번 호	폭원 (m)								
기 정	결정	대로	2	4	30~33	보조 간선 도로	7,790 (475)	경암동 3호광장	여방리 10호광장	일반 도로	6광장	건고228 (’86.5.23)	
	시행	대로	2	4	30~33	보조 간선 도로	7,790 (475)	경암동 3호광장	여방리 10호광장	일반 도로	6광장	-	
기 정	결정	대로	3	48	25~31	보조 간선 도로	809 (326)	중로2-65	대로1-4 (조촌로)	일반 도로	-	군산고141 (’14.12.26)	

	시행	대로	3	48	25~31	보조 간선 도로	809 (326)	중로2-65	대로1-4 (조촌로)	일반 도로	-	-	
변경	결정	중로	1	119	23	집산 도로	142 (142)	대로3-6	중로2-143	일반 도로	-	군산고141 (‘14.12.26)	면적 변경
	시행	중로	1	119	23	집산 도로	142 (142)	대로3-6	중로2-143	일반 도로	-	-	
기정	결정	중로	1	120	21~27	집산 도로	526 (526)	중로2-143	대로2-4	일반 도로	-	군산고141 (‘14.12.26)	
	시행	중로	1	120	21~27	집산 도로	526 (526)	중로2-143	대로2-4	일반 도로	-		
기정	결정	중로	2	142	15	집산 도로	290 (120)	중로1-120	대로3-47	일반 도로	-	군산고141 (‘14.12.26)	
	시행	중로	2	142	15	집산 도로	290 (120)	중로1-120	대로3-47	일반 도로	-	-	
기정	결정	중로	2	143	15~21.5	집산 도로	846 (535)	중로2-65	대로1-4	일반 도로	-	군산고141 (‘14.12.26)	
	시행	중로	2	143	15~21.5	집산 도로	846 (535)	중로2-65	대로1-4	일반 도로	-	-	
기정	결정	중로	2	144	15	집산 도로	22 (22)	중로3-76	중로2-143	일반 도로	-	군산고141 (‘14.12.26)	
	시행	중로	2	144	15	집산 도로	22 (22)	중로3-76	중로2-143	일반 도로	-	-	

※ ()는 금회 실시계획인가 (2단계) 연장임

구 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 별	번 호	폭원 (m)								
기 정	결정	중로	2	145	15	집산 도로	79 (79)	중로1-119	중로3-76	일반 도로	-	군산고141 (‘14.12.26)	
	시행	중로	2	145	15	집산 도로	79 (79)	중로1-119	중로3-76	일반 도로	-	-	
기 정	결정	중로	2	146	15	집산 도로	25 (25)	중로3-76	대로3-47	일반 도로	-	군산고141 (‘14.12.26)	
	시행	중로	2	146	15	집산 도로	25 (25)	중로3-76	대로3-47	일반 도로	-	-	
기 정	결정	중로	3	74	12	국지 도로	49 (4)	중로2-142	문화시설 용지	일반 도로	-	군산고141 (‘14.12.26)	
	시행	중로	3	74	12	국지 도로	49 (4)	중로2-142	문화시설 용지	일반 도로	-	-	
기 정	결정	중로	3	75	12	국지 도로	231 (163)	중로2-142	중로2-142	일반 도로	-	군산고141 (‘14.12.26)	
	시행	중로	3	75	12	국지 도로	231 (163)	중로2-142	중로2-142	일반 도로	-	-	
기 정	결정	중로	3	76	12	국지 도로	597 (597)	중로2-145	중로2-145	일반 도로	-	군산고141 (‘14.12.26)	
	시행	중로	3	76	12	국지 도로	597 (597)	중로2-145	중로2-145	일반 도로	-	-	
기 정	결정	소로	3	774	6	특수 도로	22 (22)	중로3-76	중로2-143	보행자 전용 도로	-	군산고141 (‘14.12.26)	
	시행	소로	3	774	6	특수 도로	22 (22)	중로3-76	중로2-143	보행자 전용 도로	-	-	
기 정	결정	소로	3	775	6	특수 도로	22 (22)	중로3-76	중로2-143	보행자 전용 도로	-	군산고141 (‘14.12.26)	
	시행	소로	3	775	6	특수 도로	22 (22)	중로3-76	중로2-143	보행자 전용 도로	-	-	
기 정	결정	소로	3	776	6	특수 도로	29 (29)	공공공지33	중로3-76	보행자 전용 도로	-	군산고141 (‘14.12.26)	
	시행	소로	3	776	6	특수 도로	29 (29)	공공공지33	중로3-76	보행자 전용 도로	-	-	

※ ()는 금회 실시계획인가 (2단계) 연장임

구 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결정	소로	3	777	6	특수 도로	29 (29)	중로3-76	공공공지33	보행자 전용 도로	-	군산고141 (‘14.12.26)	
	시행	소로	3	777	6	특수 도로	29 (29)	중로3-76	공공공지33	보행자 전용 도로	-	-	
기정	결정	소로	3	778	6	특수 도로	19 (19)	대로3-6	중로3-76	보행자 전용 도로	-	군산고141 (‘14.12.26)	
	시행	소로	3	778	6	특수 도로	19 (19)	대로3-6	중로3-76	보행자 전용 도로	-	-	
기정	결정	소로	3	779	6	특수 도로	19 (19)	대로3-6	중로3-76	보행자 전용 도로	-	군산고141 (‘14.12.26)	
	시행	소로	3	779	6	특수 도로	19 (19)	대로3-6	중로3-76	보행자 전용 도로	-	-	
기정	결정	소로	3	780	6	특수 도로	19 (19)	대로3-6	중로3-76	보행자 전용 도로	-	군산고141 (‘14.12.26)	
	시행	소로	3	780	6	특수 도로	19 (19)	대로3-6	중로3-76	보행자 전용 도로	-	-	

※ ()는 금회 실시계획인가 (2단계) 연장임

나. 주차장(1개소)(변경) : 2,012㎡ → **2012.3㎡**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	주차장	주차장89	조촌동 2-66	2,012	증 0.3	2,012.3	군산고2014-141 (2014.12.26)	
시행	주차장	주차장89	조촌동 2-66	2,012	증 0.3	2,012.3	-	

다. 녹 지(4개소)(변경없음) : 12,482m²(도로 중복결정 142m²)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m ²)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	녹지	완충녹지109	조촌동(대2-4번)	2,595	-	2,595	군산고2014-141 (2014.12.26)	
시행	녹지	완충녹지109	조촌동(대2-4번)	2,595	-	2,595	-	
결정	녹지	완충녹지110	조촌동(중2-65번)	3,971	-	3,971	군산고2014-141 (2014.12.26)	
시행	녹지	완충녹지110	조촌동(중2-65번)	3,971	-	3,971	-	
결정	녹지	완충녹지111	조촌동(중2-65번)	1,878	-	1,878	군산고2014-141 (2014.12.26)	
시행	녹지	완충녹지111	조촌동(중2-65번)	1,878	-	1,878	-	
결정	녹지	완충녹지112	조촌동(대3-6번)	4,038	-	4,038 (142)	군산고2014-141 (2014.12.26)	중복 결정
시행	녹지	완충녹지112	조촌동(대3-6번)	4,038	-	4,038 (142)	-	

※ ()는 중복결정 면적임

라. 공공공지(1개소)(변경) : 3,033m² → 3,033.4m²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m ²)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	공공공지	공공공지33	조촌동2-53	3,033	증 0.4	3,033.4	군산고2014-141 (2014.12.26)	
시행	공공공지	공공공지33	조촌동2-53	3,033	증 0.4	3,033.4	-	

4.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변경)

가. 사업시행자 주소

(당초)

- 페이퍼코리아(주) : 전라북도 군산시 외항로 1245(비응도동)
- (주)디오션시티쓰리 : 전라북도 군산시 구암로 50(조촌동)

(변경)

- 전라북도 군산시 외항로 1245(비응도동)

나. 사업시행자 성명

(당초) 페이퍼코리아(주), (주)디오션시티쓰리

(변경) 페이퍼코리아(주), (주)디오션시티쓰리, (주)디오션시티쓰리

5. 사업기간(변경)

(당초)

- 1차분 : 인가 고시일로부터 ~ 2019. 08. 31.
- 2차분 : 인가 고시일로부터 ~ 2020. 04. 30.
- 3차분 : 인가 고시일로부터 ~ 2021. 07. 31.

(변경)

- 1차분 : 인가 고시일로부터 ~ 2019. 08. 31.
- 2차분 : 인가 고시일로부터 ~ 2020. 04. 30.
- 3차분 : 인가 고시일로부터 ~ 2022. 03. 31.
- 4차분 : 인가 고시일로부터 ~ 2022. 12. 31.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별도 첨부)

7.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실음 생략)

8. 관계도서 : 실음 생략

□ 불입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자 조서

가. 교통시설

(1) 도로(변경)

1) 대로 2-4

구분	일련 번호	토 지 소 재 지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토 지 소 유 자		권 리 관 계 인			비고
		동·별	지번	지목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 리 관 계	
기정	1	조촌동	2-87	장	23,414	415	페이퍼코리아(주)	전라북도 군산시 외항로1245(비응도동)				
변경		조촌동	2-87	장	23,414	415	군산시	전라북도 군산 시청로17				
기정	합 계				23,414	415						

2) 대로 3-48

구분	일련 번호	토 지 소 재 지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토 지 소 유 자		권 리 관 계 인			비고
		동·별	지번	지목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 리 관 계	
기정	1	조촌동	2-87	장	24,275	8,646	페이퍼코리아(주)	전라북도 군산시 외항로1245(비응도동)				
변경		조촌동	2-87	장	24,275	8,646	군산시	전라북도 군산 시청로17				
기정	2	조촌동	2-29	장	625	6	코리아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 혜성2빌딩)				
변경		조촌동	2-29	장	625	6	군산시	전라북도 군산 시청로17				
기정	3	조촌동	2-30	장	1,863	10	코리아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 혜성2빌딩)				
변경		조촌동	2-30	장	1,863	10	군산시	전라북도 군산 시청로17				
기정	합 계				26,763	8,662						

3) 중로 1-119

구분	일련 번호	토 지 소 재 지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토 지 소 유 자		권 리 관 계 인			비고
		동·별	지번	지목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 리 관 계	
기정	1	조촌동	2-35	장	12,705	4	코리아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 혜성2빌딩)				
기정	2	조촌동	41-23	장	8,163	3,994	주택도시 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문현동,부산국제금융센터)				
기정	3	조촌동	41-30	장	93	93	주택도시 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문현동,부산국제금융센터)				
변경	4	조촌동	3964	도	20,062.8	4,072.8	군산시	전라북도 군산 시청로17				
변경	5	조촌동	41-34	장	1,592	2	군산시	전라북도 군산 시청로17				
기정	합 계				20,961	4,091						
변경					21,654.8	4,074.8						

4) 중로 1-120

기정	일련 번호	토 지 소 재 지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토 지 소 유 자		권 리 관 계 인			비 고
		동·별	지번	지목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 리 관 계	
기정	1	조촌동	2-87	장	23,414	10,595	페이퍼코리아(주)	전라북도 군산시 외항로1245(비응도동)				
변경	1	조촌동	2-87	장	23,414	10,595	군산시	전라북도 군산 시청로17				
기정	2	조촌동	41-23	장	8,163	1,290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문현동,부산국제금융센터)				
변경		조촌동	3964	도	20,062.8	680	군산시	전라북도 군산 시청로17				
신규	3	조촌동	41-33	장	610	610	군산시	전라북도 군산 시청로17				
기정	4	조촌동	2	장	56,356	45	코리아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 혜성2빌딩)				
변경		조촌동	2-103	장	45	45	군산시	전라북도 군산 시청로17				
기정	5	조촌동	2-28	장	27,839	45	코리아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 혜성2빌딩)				
변경		조촌동	2-104	장	45	45	군산시	전라북도 군산 시청로17				
기정	합 계				115,772	11,975						
변경					44,176.8	11,975						

5) 중로 2-142

구분	일련 번호	토 지 소 재 지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토 지 소 유 자		권 리 관 계 인			비고
		동·별	지번	지목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 리 관 계	
기정	1	조촌동	2-33	장	85,561	1,822	코리아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 혜성2빌딩)	한국산업은행	서울영등포구 여의도동 16-3	근저당	
									(주)우리은행	서울 중구 회현동1가 203		
									한국수출입은행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8(여의도동)(전주 지점)		
변경		조촌동	2-33	장	42,177	1,822	코리아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 혜성2빌딩)	한국산업은행	서울영등포구 여의도동 16-3	근저당	
									(주)우리은행	서울 중구 회현동1가 203		
									한국수출입은행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8(여의도동)(전주 지점)		
기정	합 계				85,561	1,822						
변경					42,177	1,822						

6) 종로 2-143

구분	일련 번호	토 지 소 재 지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토 지 소 유 자		권 리 관 계 인			비고
		동·별	지번	지목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 리 관 계	
기정	1	조촌동	2-26	장	2,276	1,975	주택도시 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문현동,부산국제금융센터)				
변경		조촌동	2-26	장	1,975	1,975	군산시	전라북도 군산 시청로17				
기정		조촌동	2-35	장	12,705	3,975	코리아신 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 혜성2빌딩)				
기정	2	조촌동	41-23	장	8,163	2,726	주택도시 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문현동,부산국제금융센터)				
변경		조촌동	3964	도	20,062.8	5,111	군산시	전라북도 군산 시청로17				
신규	3	조촌동	41-34	장	1,592	1,590	군산시	전라북도 군산 시청로17				
기정	4	조촌동	41-16	장	29	29	주택도시 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문현동,부산국제금융센터)				
변경		조촌동	41-16	장	29	29	군산시	전라북도 군산 시청로17				
기정	5	조촌동	2-30	장	1,863	8	코리아신 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 혜성2빌딩)				
변경		조촌동	2-30	장	1,378	8	군산시	전라북도 군산 시청로17				
기정	합 계				25,036	8,713						
변경					25,036.8	8,713						

7) 종로 2-144

구분	일련 번호	토 지 소 재 지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토 지 소 유 자		권 리 관 계 인			비고
		동·별	지번	지목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 리 관 계	
기정	1	조촌동	2-35	장	12,705	366	코리아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 혜성2빌딩)				
변경		조촌동	3964	도	20,062.8	366	군산시	전라북도 군산 시청로17				
기정	합 계				12,705	366						
변경					20,062.8	366						

8) 종로 2-145

구분	일련 번호	토 지 소 재 지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토 지 소 유 자		권 리 관 계 인			비고
		동·별	지번	지목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 리 관 계	
기정		조촌동	2-35	장	12,705	208	코리아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 혜성2빌딩)				
기정	1	조촌동	41-23	장	8,163	153	주택도시보증공 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문현동,부산국제금융센터)				
기정		조촌동	41-32	장	901	901	코리아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 혜성2빌딩)				
변경		조촌동	3964	도	20,062.8	1,262	군산시	전라북도 군산 시청로17				
기정	합 계				21,769	1,262						
변경					20,062.8	1,262						

9) 종로 2-146

구분	일련 번호	토 지 소 재 지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토 지 소 유 자		권 리 관 계 인			비고
		동·별	지번	지목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 리 관 계	
기정	1	조촌동	2-35	장	12,705	425	코리아신타(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 혜성2빌딩)				
변경		조촌동	3964	도	20,062.8	425	군산시	전라북도 군산 시청로17				
기정	합 계				12,705	425						
변경					20,062.8	425						

10) 종로 3-74(폐지)

구분	일련 번호	토 지 소 재 지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토 지 소 유 자		권 리 관 계 인			비고
		동·별	지번	지목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 리 관 계	
폐지	1	조촌동	2-33	장	85,561	9	코리아신타(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 혜성2빌딩)	한국산업은행	서울영등포구 여의도동 16-3	근저당	
									(주)우리은행	서울 중구 회현동1가 203		
									한국수출입은행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8(여의도동)(전주지점)		
기정	합 계				85,561	9						

11) 종로 3-75

구분	일련 번호	토 지 소 재 지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토 지 소 유 자		권 리 관 계 인			비고
		동·별	지번	지목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 리 관 계	
기정	1	조촌동	2-33	장	85,561	1,991	코리아신타 (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 혜성2빌딩)	한국산업 은행	서울영등포구 여의도동 16-3	근저당	
									(주)우리 은행	서울 중구 회현동1가 203		
									한국수출 입은행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8(여의도동)(전주 지점)		
변경		조촌동	2-33	도	42,177	1,991	코리아신타 (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 혜성2빌딩)	한국산업 은행	서울영등포구 여의도동 16-3	근저당	
									(주)우리 은행	서울 중구 회현동1가 203		
									한국수출 입은행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8(여의도동)(전주 지점)		
기정	합 계				85,561	1,991						
변경					42,177	1,991						

12) 중로 3-76

구분	일련 번호	토 지 소 재 지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토 지 소 유 자		권 리 관 계 인			비고
		동·별	지번	지목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 리 관 계	
기정	1	조촌동	2-35	장	12,705	7,194	코리아신타(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 혜성2빌딩)				
변경		조촌동	3964	도	20,062.8	7,194	군산시	전라북도 군산 시청로17				
기정	합 계				12,705	7,194						
변경					20,062.8	7,194						

13) 소로 3-774

구분	일련 번호	토 지 소 재 지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토 지 소 유 자		권 리 관 계 인			비고
		동·별	지번	지목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 리 관 계	
기정	1	조촌동	2-35	장	12,705	132	코리아신타(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 혜성2빌딩)				
변경		조촌동	3964	도	20,062.8	132	군산시	전라북도 군산 시청로17				
기정	합 계				12,705	132						
변경					20,062.8	132						

14) 소로 3-775

구분	일련 번호	토 지 소 재 지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토 지 소 유 자		권 리 관 계 인			비고
		동·별	지번	지목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 리 관 계	
기정	1	조촌동	2-35	장	12,705	132	코리아신타(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 혜성2빌딩)				
변경		조촌동	3964	도	20,062.8	132	군산시	전라북도 군산 시청로17				
기정	합 계				12,705	132						
변경					20,062.8	132						

15) 소로 3-776

구분	일련 번호	토 지 소 재 지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토 지 소 유 자		권 리 관 계 인			비고
		동·별	지번	지목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 리 관 계	
기정	1	조촌동	2-48	장	171	171	코리아신타(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 혜성2빌딩)				
변경		조촌동	3964	도	20,062.8	171	군산시	전라북도 군산 시청로17				
기정	합 계				171	171						
변경					20,062.8	171						

16) 소로 3-777

구분	일련 번호	토 지 소 재 지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토 지 소 유 자		권 리 관 계 인			비고
		동·별	지번	지목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 리 관 계	
기정	1	조촌동	2-58	장	171	171	코리아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 혜성2빌딩)				
변경		조촌동	3964	도	20,062.8	171	군산시	전라북도 군산 시청로17				
기정	합 계				171	171						
변경					20,062.8	171						

17) 소로 3-778

구분	일련 번호	토 지 소 재 지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토 지 소 유 자		권 리 관 계 인			비고
		동·별	지번	지목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 리 관 계	
기정	1	조촌동	2-35	장	12,705	89	코리아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 혜성2빌딩)				
기정		조촌동	479-12	구	28	28	코리아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 혜성2빌딩)				
변경		조촌동	3964	도	20,062.8	117	군산시	전라북도 군산 시청로17				
기정	합 계				12,733	117						
변경					20,062.8	117						

18) 소로 3-779

구분	일련 번호	토 지 소 재 지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토 지 소 유 자		권 리 관 계 인			비고
		동·별	지번	지목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 리 관 계	
기정	1	조촌동	2-35	장	12,705	89	코리아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 혜성2빌딩)				
기정		조촌동	479-10	구	26	26	코리아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 혜성2빌딩)				
변경		조촌동	3964	도	20,062.8	115	군산시	전라북도 군산 시청로17				
기정	합 계				12,731	115						
변경					20,062.8	115						

19) 소로 3-780

구분	일련 번호	토 지 소 재 지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토 지 소 유 자		권 리 관 계 인			비고
		동·별	지번	지목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 리 관 계	
기정	1	조촌동	2-35	장	12,705	91	코리아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 혜성2빌딩)				
기정		조촌동	479-5	구	23	23	코리아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 혜성2빌딩)				
변경		조촌동	3964	도	20,062.8	114	군산시	전라북도 군산 시청로17				
기정	합 계				12,728	114						
변경					20,062.8	114						

(2) 주차장

1) 주차장 89

구분	일련 번호	토 지 소 재 지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토 지 소 유 자		권 리 관 계 인			비고
		동·별	지번	지목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 리 관 계	
기정	1	조촌동	2-66	장	1,544	1,544	코리아신타(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 혜성2빌딩)	한국산업은행 (주)우리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서울영등포구 여의도동 16-3 서울 중구 회현동1가 20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8(여의도동)(전주지점)	근저당	
기정		조촌동	479-11	구	468	468	코리아신타(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 혜성2빌딩)	한국산업은행 (주)우리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서울영등포구 여의도동 16-3 서울 중구 회현동1가 20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8(여의도동)(전주지점)	근저당	
변경		조촌동	3966	차	2,012.3	2,012.3	군산시	전라북도 군산시청로17				
기정 변경		합 계			2,012	2,012						
					2,012.3	2,012.3						

나. 공간시설(변경)

(1) 녹지(변경)

1) 완충녹지109

구분	일련 번호	토 지 소 재 지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토 지 소 유 자		권 리 관 계 인			비고
		동·별	지번	지목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 리 관 계	
기정	1	구암동	320-28	장	162	162	코리아신타(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 혜성2빌딩)				
기정	2	구암동	321-18	대	28	28	군산시					
변경		구암동	321-18	대	28	28	페이퍼코리아(주)	전라북도 군산시 외항로1245(비응도동)				
기정	3	구암동	321-20	대	55	55	군산시					
변경		구암동	321-20	대	55	55	페이퍼코리아(주)	전라북도 군산시 외항로1245(비응도동)				
기정	4	조촌동	2-24	장	2,350	2,350	코리아신타(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 혜성2빌딩)				
기정	합 계				2,595	2,595						

2) 완충녹지110

구분	일련 번호	토 지 소 재 지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토 지 소 유 자		권 리 관 계 인			비 고
		동·별	지번	지목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 리 관 계	
기정	1	구암동	274-12	장	2,474	2,345	코리아신 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 혜성2빌딩)				
변경		구암동	274-12	장	2,345	2,345	군산시	전라북도 군산 시청로17				
기정	2	구암동	276-4	대	22	22	코리아신 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 혜성2빌딩)				
변경		구암동	276-4	대	22	22	군산시	전라북도 군산 시청로17				
기정	3	구암동	276-23	대	15	14	코리아신 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 혜성2빌딩)				
변경		구암동	276-23	대	14	14	군산시	전라북도 군산 시청로17				
기정	4	조촌동	2-27	장	842	842	코리아신 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 혜성2빌딩)				
변경		조촌동	2-27	장	842	842	군산시	전라북도 군산 시청로17				
기정	5	조촌동	2-29	장	625	564	코리아신 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 혜성2빌딩)				
변경		조촌동	2-29	장	570	564	군산시	전라북도 군산 시청로17				
기정	6	구암동	274-15	장	121	121	코리아신 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 혜성2빌딩)	한국투자 증권(주)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88	근저당	
									유엔아이 대부유한 회사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116 4~6층		
									한국산업 은행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6-3		
									(주)우리 은행	서울시 중구 회현동1가 203		
									한국수출 입은행	서울시 영등포 은행로 38		
변경		구암동	274-15	장	121	121	군산시	전라북도 군산 시청로17				
기정	7	구암동	276-27	대	1	1	코리아신 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 혜성2빌딩)	한국투자 증권(주)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88	근저당	
									유엔아이 대부유한 회사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116 4~6층		

구분	일련 번호	토 지 소 재 지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토 지 소 유 자		권 리 관 계 인			비 고
		동·별	지번	지목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 리 관 계	
									한국산업 은행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6-3		
									(주)우리 은행	서울시 중구 회현동1가 203		
									한국수출 입은행	서울시 영등포 은행로 38		
변경		구암동	276-27	대	1	1	군산시	전라북도 군산 시청로17				
기정	8	조촌동	2-100	장	62	62	코리아신 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 혜성2빌딩)	한국투자 증권(주)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88	근저당	
									유엔아이 대부유한 회사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116 4~6층		
									한국산업 은행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6-3		
									(주)우리 은행	서울시 중구 회현동1가 203		
									한국수출 입은행	서울시 영등포 은행로 38		
변경		조촌동	2-100	장	62	62	군산시	전라북도 군산 시청로17				
기정		합 계			4,162	3,971						
변경					3,977	3,971						

3) 완충녹지111

구분	일련 번호	토 지 소 재 지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토 지 소 유 자		권 리 관 계 인			비 고
		동·별	지번	지목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 리 관 계	
기정	1	조촌동	2-30	장	1,863	1,360	코리아신 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 혜성2빌딩)				
변경		조촌동	2-30	장	1,378	1,360	군산시	전라북도 군산 시청로17				
기정	2	조촌동	2-88	장	518	518	코리아신 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 혜성2빌딩)	한국투자 증권(주)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88	근저당	
									유엔아이 대부유한 회사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116 4~6층		
									한국산업 은행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6-3		
									(주)우리 은행	서울시 중구 회현동1가 203		
									한국수출 입은행	서울시 영등포 은행로 38		
변경		조촌동	2-88	장	518	518	군산시	전라북도 군산 시청로17				
기정		합 계			2,381	1,878						
변경					1,896	1,878						

4) 완충녹지112

구분	일련 번호	토 지 소 재 지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토 지 소 유 자		권 리 관 계 인			비고
		동·별	지번	지목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 리 관 계	
기정	1	조촌동	36-12	구	68	68 (20)	군산시					
변경		조촌동	36-12	구	48	48	군산시	전라북도 군산 시청로17				
신규	2	조촌동	36-14	구	20	20	군산시	전라북도 군산 시청로17				
기정	3	조촌동	50-5	구	178	178 (71)	군산시					
변경		조촌동	50-5	구	107	107	군산시	전라북도 군산 시청로17				
신규	4	조촌동	50-7	구	71	71	군산시	전라북도 군산 시청로17				
기정	5	조촌동	55-2	구	56	56 (19)	주택도시보 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문현동,부산국제금융센터)				
구분		조촌동	55-2	구	37	37	군산시	전라북도 군산 시청로17				
신규	6	조촌동	55-3	구	19	19	군산시	전라북도 군산 시청로17				
기정	7	조촌동	2-32	장	624	624 (27)	주택도시보 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문현동,부산국제금융센터)				
변경		조촌동	2-32	장	597	597	군산시	전라북도 군산 시청로17				
변경	8	조촌동	2-92	장	27	27	군산시	전라북도 군산 시청로17				
기정	9	조촌동	41-25	장	457	457	주택도시보 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문현동,부산국제금융센터)				
변경		조촌동	41-25	장	457	457	군산시					
기정	10	조촌동	41-28	장	2,240	2,240	주택도시보 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문현동,부산국제금융센터)				
변경		조촌동	41-28	장	2,240	2,240	군산시	전라북도 군산 시청로17				
기정	11	조촌동	41-18	장	2	2	주택도시보 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문현동,부산국제금융센터)				
변경		조촌동	41-18	장	2	2	군산시	전라북도 군산 시청로17				
기정	12	조촌동	41-19	장	345	345	주택도시보 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문현동,부산국제금융센터)				
변경		조촌동	41-19	장	345	345	군산시	전라북도 군산 시청로17				
기정	13	조촌동	41-22	장	57	57	주택도시보 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문현동,부산국제금융센터)				
변경		조촌동	41-22	장	57	57	군산시	전라북도 군산 시청로17				
기정	14	조촌동	57-1	구	4	4 (3)	유신복	군산시 조촌동 66				
변경		조촌동	57-1	구	1	1	군산시	전라북도 군산 시청로17				
신규	15	조촌동	57-3	구	3	3	군산시	전라북도 군산 시청로17				
기정	16	조촌동	704-5	도	7	7 (2)	국토교통부					
변경		조촌동	704-5	도	5	5	군산시	전라북도 군산 시청로17				
신규	17	조촌동	704-8	도	2	2	국토교통부					
기정	합 계				4,038	4,038 (142)						

※()는 중복결정 면적임

(2) 공공공지(변경)

1) 공공공지 33

구분	일련 번호	토 지 소 재 지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토 지 소 유 자		권 리 관 계 인			비 고
		동·별	지번	지목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 리 관 계	
기정	1	조촌동	2-53	장	3,033	3,033	코리아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 혜성2빌딩)				
변경		조촌동	3965	도	3,033.4	3,033.4	군산시	전라북도 군산 시청로17				
기정	합 계				3,033	3,033						
변경					3,033.4	3,033.4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등에 관한 사항

I. 군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①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표 시번호	구역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경	변경후		
변경	48	페이퍼코리아 공장부지 지구단위계획구역	군산시 조촌동 2번지 일대	597,581.7	-	597,581.7	군산고141 (14.12.26)	-

②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조서

1.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부분

1)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구 분		면적(㎡)			구성비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597,581.7	-	597,581.7	100.0	-
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5,536.0	-	5,536.0	0.9	-
	제3종일반주거지역	348,403.0	-	348,403.0	58.3	-
	준주거지역	84,857.0	-	84,857.0	14.2	-
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105,577.7	-	105,577.7	17.7	-
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53,208.0	-	53,208.0	8.9	-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교통시설

- (1) 도로 : 변경없음
- (2) 주차장 : 변경없음

나. 공간시설

- (1) 광장 : 변경없음
- (2) 공공공지 : 변경없음
- (3) 녹지 : 변경없음
- (4) 공원 : 변경없음

다. 공공·문화체육시설 : 변경없음

- 2.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부분 : 변경없음
- 3.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 실음 생략

II. 군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서 및 지형도면승인 고시도면 : 실음생략
※ 군산시 도시계획과(063-454-3532)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함

익산시 공고 제2021 - 1784호

익산 도시계획시설(영등시민공원)사업 공사완료 공고

익산 도시계획시설(영등시민공원)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사완료 공고합니다.

익 산 시 장
2021년 7월 9일

1. 사업시행지 : 익산시 영등동 814(영등시민공원 내)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가. 종 류 : 도시계획시설(영등시민공원)사업
 - 나. 명 칭 : 영등도서관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 가. 시행면적 : A=2,910m²(건축면적 163.19m², 연면적 383.20m²)
 - 나. 사 업 비 : 2,000백만원
4.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가. 성 명 : 익산시장
 - 나. 주 소 : 전라북도 익산시 인북로32길 1
5. 사업기간
 - 가. 실시계획인가일 : 2020.11.06.
 - 나. 시행기간 : 2020.11.06. ~ 2021.03.25.
6. 관련도서 : 실음생략. 끝.

김제시 고시 제2021-81호

금구 도시계획시설 유원지(11지구:원탑 레스팅 앤 아트) 중로2-1호선, 중로3-1호선 조성사업 사업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김제 도시관리계획 금구 도시계획시설 유원지(11지구:원탑 레스팅 앤 아트) 중로2-1호선, 중로3-1호선 조성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사업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이에 따른 관계도서는 김제시청 도시재생과(063-540-3346)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김 제 시 장
2021년 7월 9일

1. 사업시행지의 위치(변경)

가. 지정 : 김제시 금구면 대화리 산114-1번지 일원

나. 변경 : 김제시 금구면 대화리 산97-1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김제 도시계획시설(공간시설:유원지)

나. 명 칭 : 금구 도시계획시설 유원지(11지구:원탑 레스팅 앤 아트), 중로2-1호선, 중로3-1호선 조성사업

3. 사업면적 및 규모 : 지정 56,442㎡, 변경 18,260㎡(합 38,182㎡)

가. 중로2류1호 : 지정 327m, 변경 67m(합 260m)

나. 중로3류1호 : 192m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유)원탑종합건설 대표이사 이재선

나. 주 소 : 전주시 덕진구 서천로 100(송천동2가)

5. 사업시행기간 : 2012. 5. 11. ~ 2022. 12. 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 [붙임]

7. 관계도서(도면) : 게재생략

■ 붙임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조서

연 번	소재지	지번			지 목	면 적(m ²)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 권리자		
		산	본번	부번		공부상	기 정	변 경	성 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내용
1	금		321	0	유	1,319	803	0	김화자	200			
2	구		322	0	답	212	107	0	김화자	200			
3	면		323	0	천	352	352	0	김한근	200			
4			324	0	전	145	145	0	국(재정경제부)				
5	대		325	0	전	893	893	0	최애숙	익산시 신동 164-22			
6	화		326	0	답	2,833	2,833	0	이재선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1가	주식회사 전북은행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지상권
7	리		327	0	전	615	615	0	이재선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1가	주식회사 전북은행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지상권
8			328	5	유	924	905	0	이재선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1가	주식회사 전북은행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지상권
9			329	1	전	139	80	0	유한회사 원탑종합건설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시천로 100 (송천동2가)			
10			341	0	유	3,268	3,268	0	유한회사 원탑종합건설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시천로 100 (송천동2가)	주식회사 전북은행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근저당권 지상권
11			341	1	전	3,065	3,067	1,473	유한회사 원탑종합건설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시천로 100 (송천동2가)	주식회사 전북은행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근저당권 지상권
12			343	0	유	902	902	198	유한회사 원탑종합건설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시천로 100 (송천동2가)	주식회사 전북은행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근저당권 지상권
13			344	2	유	1,630	204	94	국(농수산부)				
14			346	0	유	347	110	0	국(농수산부)				
15			348	0	유	1,603	118	0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487			
16			597	0	유	1,061	29	29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487			
17			599	0	유	79	47	47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487			
18			647	0	도	16,592	5,280	1,904	국(건설부)				
19			650	0	구	377	67	0	국(농수산부)				
20			661	1	답	2,557	3	0	김제시				
21	산	113	1	임	임	1,655	888	0	전주최씨도사 공파마전종중	301			
22	산	114	1	임	임	19,406	19,042	0	유한회사 원탑종합건설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시천로 100 (송천동2가)	주식회사 하나은행	서울시 중구 을지로	근저당권
23	산	115	0	임	임	1,785	1,785	0	이재선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1가			
24	산	116	0	임	임	198	198	0	김제시				
25	산	117	0	임	임	397	186	0	김제시				
26	산	96	0	임	임	2,651	2,643	2,643	유한회사보원건설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시천로 100 (송천동2가)			
27	산	96	1	임	임	4,562	3,385	3,385	유한회사 원탑종합건설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시천로 100 (송천동2가)			
28	산	97	1	임	임	7,704	7,399	7,399	유한회사 원탑종합건설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시천로 100 (송천동2가)	주식회사 하나은행	서울시 중구	근저당권
29	산 일반	96 603	2 1	임 과	임 과	324 287	10	10	김용진	김제시 금구면 대화1길			등록전환
30	산	98	1	임	임	10,703	35	35	하인호	서울 서초구 서초동			
31	산	170	0	도	도	1,125	1,043	1,043	국(건설부)				
소계						88,585 88,548	56,442	18,260					

완주군 고시 제2021-67호

완주 군계획시설(체육시설, 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 고시

완주 군계획시설(체육시설, 도로) 결정(변경)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고시합니다.

이에 따른 관계도서는 완주군청 도시개발과(063-290-284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완 주 군 수

2021년 7월 9일

1. 완주 군계획시설(체육시설, 도로) 결정(변경)조서

가. 군계획시설(체육시설)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4	체 육 시 설	운주 골프장 (9홀)	완주군 운주면 산북리 65-2번지 일원	322,847	-	322,847	완주군 고시 제2008-390호 (2008.08.18)	

나. 군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2	2	8	국지 도로	1,297	운주면 산북리 140-6	운주면 산북리 68-1	일반 도로	-	완주군 고시 제2008-390호 (2008.08.18)	
변경	소로	2	2	8	국지 도로	1,161	운주면 산북리 140-6	운주면 산북리 65-20	일반 도로	-		

다. 도로 변경사유서

변경 전 도로명	변경 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소로 2-2호	소로 2-2호	- 선형 및 연장 변경 - L=1,297m → 1,161m 감) 136m	도로의 연장을 축소하고 군도와 접속하는 가속 차로를 설치하여 교통흐름 개선

2. 완주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도 : 게재생략

전라북도 부안소방서 공고 제2021-4호

소방관련법 위반 과태료 납부 독촉 통지 공시 송달

소방기본법 제19조 제1항 위반으로 받은 과태료를 체납하여 과태료 납부 독촉 통지를 등기우편으로 송부하려였으나,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부 안 소 방 서 장

2021년 7월 9일

1. 대 상 자

가. 성 명 : 김승헌(생년월일 : 831204-1*****)

나. 주 소 : 전주시 덕진구 한배미3길 20 보석빌라 202호(인후동1가)

2. 위반내용 : 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거짓으로 신고함.

3. 위반법규 : 소방기본법 제19조 제1항

4. 부과금액 : 과태료 금2,084,000원(금이백팔만사천원)

5. 부과연월일 : 2021. 7. 8.

6. 납부기한 : 2021. 8. 9.

7. 납부방법 : 부안소방서 세외수입통장(전북은행 1013-01-3523139)

8. 고지서 재교부 및 문의사항 : 부안소방서 방호구조과(☎ 063-580-1243)

도보이용안내

도보 이용 안내

- ♣ 도보는 매주 금요일자로 발행됩니다.
- ♣ 도보의 법적 우선효력은 종이도보에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전자도보는 <http://www.jeonbuk.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라북도 홈페이지 접속

- 인기검색어 → 전북도보
- 자치법규 → 전북도보
- 도정정보 → 도정자료 → 전북도보

도보게재 의뢰 안내

♣ 근거법규 : 전북도보발행규정 제11조 및 도보게재위탁계약서 제3조

♣ 원고 접수 마감 : 매주 화요일

♣ 도보게재 의뢰 방법

1. 게재의뢰 공문(시행문) 1부 : 문서사송 혹은 FAX(063-280-2299)

⇒ 개별법령별 도보게재 근거 법규를 명시

- 예시문: ...법, 시행령, 시행규칙 제○조제○항근거

2. 게재문안(공문 첨부물) 1부

○도청 실, 과, 사업소, 시·군의 경우 전자문서시스템으로 송부하시고

○기타 도보위탁게재 계약기관은 USB메모리로 제출하거나

E-mail(jbdobo@korea.kr)로 보내주셔야 전라북도 홈페이지

(<http://www.jeonbuk.go.kr>)에 게재될 수 있습니다.